

원산지증명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3자 보증제도 도입방안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

2012. 9.



국제원산지정보원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

연구진

〈연구주관〉 국제원산지정보원

〈연구책임자〉

진 병 진 (선임연구원)

〈연구진〉

임 병 호 (연구원)

김 덕 연 (연구원)

정 의 현 (연구원)

목 차

| | |
|---|----|
| 제1장 서론 | 1 |
|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 1 |
| 제2절 연구의 구성 및 방법 | 5 |
| | |
| 제2장 현행 원산지증명제도 관련 법률 검토 | 7 |
| 제1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7 |
| 1. 법률상의 원산지증명제도 관련 조항 | 7 |
| 2. 시행령상의 원산지증명제도 관련 조항 | 8 |
| 3. 시행규칙상의 원산지증명제도 관련 조항 | 13 |
| 1)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 13 |
| 2)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의무 | 16 |
| 3)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 17 |
| 4) 원산지증빙서류의 발급자 및 발급단계 | 19 |
| 5) 협정별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 20 |
| 4. 사무처리 고시상의 원산지증명제도 관련 조항 | 22 |
| 5. 관세청 지침상의 원산지증명제도 관련 조항 | 28 |
| 제2절 관세법 | 31 |
| 1. 법률상의 원산지증명제도 관련 조항 | 31 |
| 2. 시행령상의 원산지증명제도 관련 조항 | 32 |
| 3. 시행규칙상의 원산지증명제도 관련 조항 | 34 |
| 제3절 대외무역법 | 35 |
| 1. 법률상의 원산지증명제도 관련 조항 | 35 |
| 2. 시행령상의 원산지증명제도 관련 조항 | 35 |
| 제4절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 36 |
| 제5절 수출물품 원산지증명 발급규정 | 37 |
| | |
| 제3장 현행 원산지증명제도 운영실태 조사 | 40 |
| 제1절 설문조사 내용 | 41 |
| 1. 원산지확인서 발급기업 대상 설문 | 41 |

| | |
|--------------------------------|----|
| 2. 원산지증명서 발급기업 대상 설문 | 46 |
| 제2절 설문결과 | 51 |
| 1. 원산지확인서 발급기업 설문결과 | 51 |
| 2. 원산지증명서 발급기업 설문결과 | 54 |
| 3. 설문대상별 공통문항 설문결과 비교 | 56 |
| 제3절 원산지증명서 유통저해요인 및 해결방안 | 59 |
| 1. 유통저해요인 검토 | 59 |
| 2. 유통저해요인 해결방안 | 59 |
| 1) 원산지확인서 발급제도의 개선 | 60 |
| 2) FTA원산지증명 수출보험제도의 도입 | 61 |

제4장 수출위험 분산 및 수출지원제도 검토

| | |
|--------------------------|----|
| 제1절 수출위험의 개념 및 유형 | 63 |
| 1. 수출위험의 개념 | 63 |
| 2. 수출위험의 유형 | 63 |
| 1) 정치적 비상위험 | 64 |
| 2) 신용위험 | 64 |
| 3) 환위험 | 64 |
| 4) 운송위험 | 65 |
| 5) FTA특혜원산지증명서 환위험 | 65 |
| 제2절 수출지원제도의 개념적 정의 | 65 |
| 제3절 수출지원제도 현황 | 66 |
| 1. 우리나라의 수출지원제도 | 66 |
| 1) 정부기관 | 66 |
| 2) 수출유관기관 | 68 |
| 3) 금융기관 | 70 |
| 2. 주요국의 수출지원제도 | 72 |
| 1) 일본 | 72 |
| 2) 미국 | 74 |
| 3) 캐나다 | 76 |
| 4) 영국 | 77 |
| 5) 독일 | 79 |
| 6) 중국 | 81 |

| | |
|--------------------------|----|
| 7) 대만 | 82 |
| 3. 주요국 수출지원제도의 시사점 | 83 |
| 제4절 수출보험제도 검토 | 84 |
| 1. 수출보험제도의 의의 및 기능 | 84 |
| 2. 주요국의 수출보험제도 | 86 |
| 1) 우리나라의 수출보험제도 | 86 |
| 2) 미국의 수출보험제도 | 91 |
| 3) 유럽의 수출보험제도 | 93 |
| 4) 아시아 주요국의 수출보험제도 | 97 |

제5장 원산지증명제도 활성화 방안 101

| | |
|--|-----|
| 제1절 원산지(포괄)확인서 확인(공인인증)제도 도입 | 102 |
| 1. 원산지(포괄)확인서 확인(공인인증)제도 운영체계 개념 | 102 |
| 1) 현행 원산지증명서 발급과정 | 103 |
| 2) 확인(공인인증)제도 도입 후 원산지증명서 발급과정 | 104 |
| 2. 원산지(포괄)확인서 공인인증기관 설립 방안 | 105 |
| 1) 공인인증제도 관련 법제 검토 | 105 |
| 2) 공인인증제도 관련 정부기관 운영사례 검토 | 106 |
| 3) 원산지확인서 공인인증제도 도입방안 | 107 |
| 4) 원산지확인서 공인인증제도 활성화 방안 | 107 |
| 3. 원산지(포괄)확인서 공인인증기관 설립의 이점 | 108 |
| 1) FTA정착단계 조기 진입 가능 | 108 |
| 2) 행정력 경감 및 경제적 이익 발생 가능 | 108 |
| 제2절 원산지증명서 위험 제3자 보증제도 도입 | 109 |
| 1. 원산지증명서 위험 제3자 보증제도의 개념 | 109 |
| 1) 원산지증명서 위험의 범위 | 109 |
| 2) 원산지증명서 위험에 대한 제3자 보증의 보증범위 | 109 |
| 2. 원산지증명서 위험에 대한 제3자 보증제도 운영방안 | 110 |
| 1) 보증주체 | 110 |
| 2) 보증기금 충당 | 113 |
| 3) 보증제도 운영 | 115 |
| 3. 유사 보증상품 검토 | 116 |
| 1) 신뢰성보험의 기대효과 | 116 |

| | |
|--|------------|
| 2) 신뢰정보협의 주요내용 | 117 |
| 3) 민간 손보사 PL보험과의 비교 | 117 |
| 4) 이용방법 및 절차 | 119 |
| 4. 원산지증명서 위험에 대한 제3자 보증제도의 WTO협정상 보조금 규정 위 반여부 검토 | 121 |
| 5. 보증보험 운영상의 문제 검토 | 122 |
| 1) 보증의뢰인의 입장 | 122 |
| 2) 보증기관의 입장 | 124 |
| 3) 수익자의 입장 | 124 |
| 제3절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124 |
| 1. 원산지확인서 발급건수와 연계한 인센티브 제공 | 125 |
| 1) AEO등 세관법규준수도 가점 부여 | 125 |
| 2) 중소기업 지원자금 신청시 인센티브 부여 | 126 |
| 3) 관세조사 완화 | 126 |
| 4) 기업지원제도 우선 활용혜택 부여 | 127 |
| 2. 원산지확인서 발급 우수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제공 | 127 |
| 1) 현행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세제상의 인센티브 강화 | 127 |
| 2) 원산지확인서 발급 물품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 | 128 |
| 제4절 원산지확인서 발급절차 개선 | 143 |
| 1. 원산지확인서 발급 장려규정 신설 | 143 |
| 2. 원산지확인서 전자적 유통망 구축 및 유통저해요서 차단방안 마련 | 144 |
| 3. 원산지확인서 발급요청기업의 협력업체 원산지관리 지원체계 구축 | 144 |
|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 145 |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3년여에 걸쳐 진행된 협상 끝에 2004년 한-칠레 FTA를 발효시킨 이후 우리나라는 동시다발적 협상을 통해 적극적으로 FTA추진정책을 견지해온 결과, 2012년 5월 말 기준으로 8개 협정 45개 국가와의 FTA가 발효되었다.¹⁾

여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는 중국을 비롯해 멕시코, 호주, 캐나다 등과 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일본, 이스라엘, 러시아 등의 국가와는 FTA체결을 위한 여건을 조성 중에 있는데, 이들 국가들과 성공적으로 FTA가 체결되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 교역에서 FTA체결국과의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85%에 육박하게 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적극적이고도 공세적인 FTA추진정책은 우리나라 수출기업에게 신시장의 확보와 기존 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라는 기회요인을 제공하였고, 이를 잘 활용하여 FTA체약국과의 교역이 증대되게 됨으로써 경제적으로 상당한 긍정적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

하지만 FTA는 기업에게 기회만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 또한 부여하고 있다. FTA를 활용하여 교역을 진행하는 기업들은 특혜관세 활용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전과 다른 생산 및 경영과정 상의 변화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는 FTA가 기본적으로 특혜관세의 적용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비체약국 기업에 비해 상대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효과를 제공함으로써 신규 거래선을 창출하거나 기존의 거래선을 유지해 나가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특혜관세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체약국내 생산물품(원산지물품)이라는 증명을 하여야 하는 의무가 동시에 부여되는 특성에 기인한다.

즉, FTA의 발효가 모든 기업에게 기회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FTA

1) 그 결과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EU와 미국 등 거대 선진 경제권과 동시에 FTA를 체결한 국가가 됨으로써 FTA허브국가로 도약하는 전기가 마련되었다.

를 활용하기 위한 준비와 노력을 경주하는 기업에게만 기회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FTA활용을 위한 경영 및 생산과정상의 변화 노력 중 수출기업들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분야는 역내산 물품임을 증명하기 위한 원산지관리이다.

이는 원산지관리가 최종수출자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원부자재 단계부터 최종 수출상품 제조완료 단계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일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의 상품생산 패턴이 1개국 내에서 1개 기업에 의해서만 이루어지지 않고 교통 및 통신의 발달과 더불어 인건비 및 입지여건 등 다양한 사유에 의해 형성된 글로벌 분업체계에 따라 다양한 국가와 기업이 생산과정에 개입되어 있어 FTA활용을 위한 원산지관리가 더욱 복잡하게 되었고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 분업체계 하에서 제품의 생산 및 수출에 이르는 과정은 일반적으로 ‘원부자재 공급업체 ⇒ 제조·가공업체 ⇒ 완제품 생산업체(최종 수출자)’로 단순화하여 살펴볼 수 있는데, FTA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체 프로세스(process)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에서의 원산지관리는 『관세법』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관세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데, 동 법들은 생산제품의 원산지관리를 명확하고 엄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제조 및 유통단계에 걸쳐 거래자 간에 제공해야 하는 원산지증빙서류들과 이 서류들의 관리방법들을 규정하고 있다.²⁾

이들 원산지증빙서류의 발급 및 관리가 명확하게 이루어져 FTA활용기업들이 오류 없이 FTA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거래단계 전반에 걸쳐 원산지증빙서류가 원활히 유통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원산지증빙서류 자체의 신뢰성 또한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2) 『관세법』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서 원산지관리를 위해 제조 및 유통단계에서 제공·관리되어야 하는 서류로는 원산지(포괄)확인서, 원산지소명서, 국내제조(포괄)확인서, 원산지증명서 등이 있다.

이중 원산지증빙서류의 거래단계별 발급 및 관리와 관련된 문제는 법률로 규정하고 이를 기업들이 준수하도록 하는 정책당국의 노력을 통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나, 각 단계별 원산지증빙서류의 신뢰성 문제는 법적·제도적 장치 이외에 기업의 사실에 근거한 충실한 서류제공 노력과 제공받은 서류를 근거로 한 상위 서류의 발급 및 관리 노력 등 거래의 전 단계에 걸쳐 관련된 모든 기업들 간에³⁾ 신의성실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원산지증빙서류 유통과정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크게 2가지로 대별될 수 있는데, 이중 한 가지는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기업에 해당하는 원부자재 공급기업 및 하위 제조·가공업체와 관련된 문제이며 나머지 하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업인 최종 수출자와 관련된 문제로 볼 수 있다.⁴⁾

먼저,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기업과 관련된 문제는 다시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첫째,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대상 기업이 서류의 발급에 소극적⁵⁾이라는 것이며 둘째,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자의에 따라 발급한다 하더라도 제공된 서류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⁶⁾ 점이다.

설문조사 및 인터뷰 등을 통해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에 소극적인 이유를 파악해 본 결과 자사에 별다른 혜택이 없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비용을 투입하여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해야 할 필요를 못 느끼고 있고,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 이후 이에 대한 내용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출기업이 추가적인 소명자료를 요구함

3) 원산지관리에 직접 관여하는 당사자는 ①수입자, ②수출자 또는 생산자, ③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④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 ⑤당해 물품의 거래·유통·운송·보관 및 통관을 대행하거나 취급한 자 등이나 이들 중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단계별 원산지관리 당사자는 수입자를 제외한 나머지로 볼 수 있다.

4) 이들 문제점들에 대한 자세한 원인과 실태는 본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실시될 설문조사를 통해 명확히 파악해 볼 계획이며, 여기에서는 현재까지 인터뷰 등을 통해 수집된 업계 및 관련 기관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5) 실제로 원부자재 및 중간 제조 단계에 관여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공급기업과 이를 근거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최종 수출기업 간의 서류교부에 있어 명확한 협조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업계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6) 원산지(포괄)확인서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발급 기업이 원산지관리에 대한 명확한 관리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서류의 발급요건을 정확히 충족하지 못하거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거래기업의 요청에 따라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하기 때문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이다. 이 경우 동 원산지(포괄)확인서를 근거로 작성된 최종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서 또한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어 수출기업이 FTA를 활용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에 따라 제조공정 및 원부자재 투입내역 등 기업의 비밀이 유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발급된 서류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이들이 일부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소재 및 중간재 공급 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중소기업인 관계로 별도의 원산지관리 시스템 또는 원산지관리전담자를 갖추고 있지 못해 정확한 서류의 발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발급서류의 정확성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구매기업의 요청에 따라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최종 수출자인 원산지증명서 발급기업과 관련된 문제도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기업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제공받기 쉽지 않으며, 어렵사리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제공받았다 하더라도 동 서류에 대한 신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FTA활용과정상 동 서류를 근거로 최종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밖에 없는 수출기업의 입장에서는 FTA를 활용하기 위해 정확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제공받는 것이 필수적이나 이처럼 기본적인 요건이 정확히 지켜지지 않음으로써 FTA의 활용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의도하지 않은 원산지증명서의 오류로 수입자가 특혜관세 취소 등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수출자에 대한 신뢰성 상실로 거래관계 단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FTA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거래선의 유지 및 거래관계 심화를 통한 거래량 증대가 가능하여야 하나, 수출자가 의도하지 않은 원산지증명서 오류 등으로 수입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수입자는 동 수출자와 거래관계를 유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데 이 경우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의 오류로 인해 수입자가 피해를 입게 되었고 또 원산지증명서의 오류가 수출자의 고의가 아닌 것이 확인될 경우 수입자가 입은 금전적 손실(특혜관세 취소분)을 제도적으로 보전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거래관계 단절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아래 두 가지 영역에 대한 연구를 통해 원산지증명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원산지(포괄)확인서의 발급 및 유통절차 개선에 대한 사항이다.

이는 주로 법적·제도적 탐구를 통해 원산지(포괄)확인서의 발급과 유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의 마련에 중점을 두어 진행할 계획이다.

둘째, 원산지증빙서류의 보증 및 공인인증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이다.

이는 다시 원산지(포괄)확인서에 대한 공인인증과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보증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예정인데, 먼저 원산지(포괄)확인서에 대해서는 그 내용에 대한 공인기관의 인증절차 도입의 필요성과 인증의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고찰해 볼 것이다. 아울러 원산지증명서 보증의 경우에는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의 고의적이지 않은 오류로 입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제도적 지원방안의 도입 필요성과 운영방안을 살펴 볼 것이다.

제2절 연구의 구성 및 방법

위에서 제시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 및 범위와 그 구성 및 방법들을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현행 원산지증명제도의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제도와 관련된 현행 법률체계를 살펴보고, 실제 현업에서 적용되고 있는 원산지증명제도의 운영현황을 파악해 볼 것이다.

이어서 제3장에서는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기업과 동 확인서를 근거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 수출하는 최종 수출자를 대상으로⁷⁾ 원산지증명제도의 문제점과 개

7) FTA관세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3(원산지확인서) ①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이하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등”이라 한다)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원산지확인서”라 한다)를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동일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장기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 등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원산지포괄확인서(원산지확인서 작성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최초의 원산지확인서를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는 거슬 말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등으로부터 원산지확인서 또는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제공 받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는 이를 기초로 제6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제8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다.

선방안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를 확인해 볼 것이다.

제4장에서는 원산지증명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방안을 고찰해 볼 것인데, 이는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가 제공된 원산지(포괄)확인서의 오류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과 동 확인서를 근거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FTA체약국으로 수출하는 최종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의 오류로 인해 겪을 수 있는 문제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 해당하는 제5장에서는 본 보고서의 전체 내용을 요약해보고 그 시사점을 살펴본다.

본 보고서의 작성을 위한 연구의 방법은 주로 문헌조사와 현행 원산지증명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확인하기 위해 FTA활용 수출기업에 납품하는 국내단계에서의 거래기업 및 최종 수출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및 인터뷰, FTA활용도 제고를 위해 기업지원을 주업무로 하고 있는 지역별 FTA지원센터 담당자와 인터뷰와 보증 및 신용평가기관과의 공동연구 진행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문헌조사의 경우 현행 원산지증명제도의 법률적 검토에 주력하고 설문조사 및 인터뷰 등을 통해 파악된 문제점과 연구의 결과로 도출된 개선방안을 수용하기 위한 법률 개정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원산지확인서 및 원산지포괄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2장 현행 원산지증명제도 관련 법률 검토

제1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1. 법률상의 원산지증명제도 관련 조항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원산지증빙서류"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작성자, 기재사항, 유효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서류를 말한다.

제11조(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 통보) ①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계약상대국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목적으로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제출한 후 해당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사실을 세관장(해당 물품에 대한 수출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받은 계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그 사실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입자는 계약상대국의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한 사람이나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그 오류로 인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과부족(過不足)이 있을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세액정정·세액보정신청,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액정정, 세액보정, 수정신고 또는 경정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을 준용한다.

제12조(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 및 제출) ① 수입자·수출자 및 생산자는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협정에서 정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관한 심사를 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수입자
 2. 수출자·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 ③ 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20일 이상의 기간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① 협정관세의 적용에 대한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서 제9조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자(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와 그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의문사항을 미리 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협정에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사전심사의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기재한 서류(이하 "사전심사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사전심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수입자가 사전심사서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 등을 신청하는 경우 수입신고된 물품의 내용이 사전심사서의 내용과 같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전심사서의 내용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④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서의 내용변경 통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사전심사의 절차·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 시행령상의 원산지증명제도 관련 조항

제2조(원산지증빙서류) 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는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서류로서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원산지증명서"라 한다)와 그 밖에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정보 등(이하 "원산지확인서류"라 한다)를 말한다.

②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각 호에서 정한 방식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1.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산지국가의 세관 그 밖의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할 것
2.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이하 이 조에서 "원산지자율증명"이라 한다)하여 작성·서명할 것(당해 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에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원산지를 기재하는 것을 포함한다)

③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 및 기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해 물품의 수출자·품명·수량·원산지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것
2. 영문으로 작성될 것
3.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이 비치되어 발급내역이 관리되고, 원산지증명서에 서명할 자가 지정되어 있으며, 그 서명할 자가 서명하여 발급할 것
4. 삭제

④ 각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1.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2.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칠레와의 협정"이라 한다): 발급일로부터 2년
3.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페루와의 협정"이라 한다): 발급일부터 1년. 다만,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물품이 비당사국 관세당국의 관할 하에 일시적으로 보관된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
4.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미합중국과의 협정"이라 한다): 발급일부터 4년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자가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능력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수출자를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⑥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원산지

증명서 발급신청서는 제외한다)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자율증명을 할 수 있다.

⑦체약상대국별 원산지증명서의 인정범위 및 세부기준, 제2항제1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신청·발급절차 및 관세청장에 대한 통보절차, 제2항제2호에 따른 원산지자율증명의 방법 및 절차,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의 기재사항·작성방법 및 보관기간, 제5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원산지증빙서류에 관하여 협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원산지증빙서류 수정통보 방법)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제출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법 제11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당해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오류사항을 수정하여 통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수정통보서에 수정된 원산지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수출자·생산자 및 체약상대국의 수입자
2. 수출신고번호 및 수출신고일자
3.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번호 및 발급일자
4.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 및 수량
5. 오류내용 및 정정사항

제13조(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 ①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수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 가.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 나. 수입신고필증
 - 다.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 라. 지식재산권거래 관련 계약서
 - 마.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 바. 수입물품의 국제운송 관련 서류
 - 사. 사전심사서 사본 및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사전심사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한다)
2. 수출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 가.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 나. 수출신고필증

- 다.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수출자의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 라.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 마.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 바. 원가계산서·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 사.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대장
 - 아. 생산자[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이하 "재료생산자"라 한다)를 포함한다]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 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수출자에게 제공한 서류
3. 생산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 가. 수출자 또는 계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당해 물품의 원산지의 증명을 위하여 작성·제공한 서류
 - 나. 수출자와의 물품공급계약서
 - 다. 제2호 다목 및 마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따른 서류
 - 라. 재료생산자가 해당 재료의 원산지 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생산자에게 제공한 서류
- ②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자 :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5년
 2. 수출자 :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5년
 3. 생산자 :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한 날부터 5년
- ③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서류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이크로필름·광디스크 등 자료전달매체를 이용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제19조(원산지 등에 관한 사전심사) ①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당해 물품 및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에 관한 사항
2. 당해 물품 및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품목분류·가격 또는 원가결정에 관한 사항
3. 당해 물품의 생산·가공 또는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의 산정에 관한 사항
4.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의 환급·감면에 관한 사항
5. 해당 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6. 제4조에 따른 수량별 차등협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협정관세의 적용 또는 관세면제에 대한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 기획재정

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기재된 사전심사신청서

가. 신청인·수입자 및 수출자(수출자와 생산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는 생산자를 포함하되, 생산자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품목번호 및 가격

다.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별 품명·품목번호·가격 및 원산지

라. 당해 물품의 제조공정(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마. 사전심사를 원하는 구체적인 내용

바.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2. 거래계약서·원가계산서·원재료내역서·공정명세서 등 신청내용에 대한 심사에 필요한 서류

③관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미비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등의 신청사항을 심사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심사의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관세청장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당해 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에 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3. 사전심사의 신청내용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소송제기 등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⑤법 제1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사전심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을 말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정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전심사 후 수입신고 전에 협정 또는 관계법령의 개정이나 사전심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 또는 상황이 변경되어 사전심사의 내용이 변경된 사정을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2. 신청인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전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사전심사에 중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

3. 사전심사의 신청내용과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소송제기 등을 받은 권한 있는 기관 또는 법원의 최종결정 또는 판결이 당해 사전심사의 내용과 다르게 된 경우

제19조의2(원산지 등에 관한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사전심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청서에 이의제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의를 제기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사전심사서를 받은 날짜와 사전심사의 내용
3. 해당 물품의 품명 및 품목번호
4. 이의제기의 요지와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

3. 시행규칙상의 원산지증명제도 관련 조항

1)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제3조(싱가포르와의 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등) ① 「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싱가포르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한다.

② 제1항 및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싱가포르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 싱가포르 관세당국
2.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 세관,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기업체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상공회의소·대한상공회의소(이하 "증명서발급기관"이라 한다)

제3조의2(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등) ①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의 상품

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는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한다.

② 제1항 및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브루나이 다루살람, 캄보디아왕국, 인도네시아공화국,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 말레이시아, 미얀마연방, 필리핀공화국, 싱가포르공화국, 태국왕국 및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말하며, 이하 "아세안회원국"이라 한다)을 원산지로 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브루나이 다루살람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브루나이 외교통상부
2. 캄보디아왕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캄보디아 상무부
3. 인도네시아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인도네시아 통상부
4.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라오스 통상산업부
5. 말레이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6. 미얀마연방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미얀마 상무부
7. 필리핀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필리핀 세관
8. 싱가포르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싱가포르 세관
9. 태국왕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태국 상무부
10.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베트남 통상부
11.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을 제외한 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

제3조의3(인도와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등) ①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인도와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한다.

② 제1항 및 인도와와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인도수출검사위원회
2.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

제4조(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등) ①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동 협정의 일부를 구성하는 「대

한민국과 아이슬란드공화국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과 노르웨이왕국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과 스위스연방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을 포함하며, 이하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서명한 것으로 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중 「대한민국과 스위스연방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 부속서 I에 따라 스위스연방을 원산지로 하는 치즈(영 별표 2 제2호 가목 품목번호 0406.90.1000, 0406.90.2000, 0406.90.3000, 0406.90.4000, 0406.90.9000 및 같은 목의 비고에 따른 기타 치즈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스위스치즈"라 한다)에 대하여는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한다.

③제2항 및 「대한민국과 스위스연방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 부속서 I에 따라 스위스치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스위스연방농업국이 인증한 기관으로 한다.

제4조의2(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등)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칠레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서명한 것으로 한다.

제4조의3(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등) ①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서명한 것으로 한다.

1.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중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이하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라 한다) 제17조 및 영 제2조제5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
2. 총가격이 6천유로[유로화 외의 영 제3조제7항에 따른 유럽연합당사자(이하 "유럽연합당사자"라 한다)의 자국통화로 작성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게시하는 금액을 말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의 수출자. 이 경우 물품의 총가격은 단일의 운송서류(운송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송품장을 말한다)에 의하여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물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관세청장은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25조에 따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매년 10월 15일까지 대한민국에 통보하는 제1항제2호의 6천유로에 상당하는 유럽연합당사자의 자국통화로 환산된 금액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지체 없이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게시한 금액은 게시한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제4조의4(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등) ①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페루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발급된 것
2.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서명한 것

가. 페루와의 협정 부속서 4가 규칙 5 및 영 제2조제5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

나. 탁송화물의 총가격이 2천미합중국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의 수출자

② 제1항제1호 및 페루와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페루 통상본부
2.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

제4조의5(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등)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미합중국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한 것으로 한다.

2)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의무

제5조(증명서발급기관의 의무 등) ① 증명서발급기관은 증명서발급기관이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한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증명서발급기관의 명칭·주소·전화번호 및 모사전송번호
2.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담당하는 자의 소속·직위·성명 및 서명 견본
3. 원산지증명서에 날인하는 증명서발급기관의 인장(印章)의 견본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내용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협정에서 정한 다른 권한 있는 당국이 있는 때에는 그 당국을 말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증명서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1. 발급번호 및 발급일자
2.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자
3. 수출신고의 번호 및 수리일자
4. 품명·품목번호(「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분류표상의 6단위의 품목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수량·금액 및 원산지
5. 수출자, 생산자 또는 공급자
6. 수입자 및 수입국명
7. 당해 물품에 적용된 협정의 명칭 및 원산지결정기준

④증명서발급기관은 제3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 서류 원본 또는 사본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증명서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내역을 매 분기별로 다음 분기가 시작하는 달의 10일까지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증명서발급기관은 신청자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제12조에 따른 원산지결정의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반려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그 통보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다른 증명서발급기관에 알려야 한다.

1. 신청자 및 수출자
2. 품명·품목번호·금액
3. 수출신고번호(알고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수입국명
5. 속임수·부정신청 또는 발급 반려 요지

⑦ 관세청장은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의 부록 1 제5조에 따라 아세안회원국 관세당국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내역(발급번호, 발급일자, 수출자, 생산자 및 품명을 말한다)을 해당 물품이 수출된 아세안회원국의 관세당국에 제공할 수 있다.

⑧ 증명서발급기관은 기획재정부장관, 관세청장 또는 증명서발급기관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과 관련된 교육(품목분류, 물품가격의 산정 및 이 규칙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포함한다)을 받은 소속 직원을 우선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3)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제6조(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①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제7조의2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수출신고의 수리필증 사본(증명서발급기관이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또는 이에 갈음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이 경우 수출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후에 제출할 수 있다.
 - 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국외반출신고서 사본
 - 나.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226조에 따른 보세운송신고서 사본
 - 다. 우편물·택송품 및 별송품의 경우에는 영수증·선하증권 사본 또는 그 밖에 계약 상대국으로 수출하였거나 수출할 것임을 나타내는 서류
2.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3. 제6조의3에 따른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
4.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원산지소명서(이하 "원산지소명서"라 한다). 다만,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원산지소명서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5.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확인서류 및 제6조의4에 따른 국내제조확인서(증명서발급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해당 서류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수출자의 과실·착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지 못한 자는 수출물품의 선적일부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유서(수출물품의 선적일부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선하증권 사본 또는 수출물품의 선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의 주소·거소·공장 또는 사업장 등

을 방문하여 원산지의 적정여부를 확인(이하 "현지확인"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제7조의2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그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1. 국내 생산시설이 없는 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최초로 신청한 경우
2. 해당 물품을 직접 생산하지 아니하는 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최초로 신청한 경우
3. 원산지증명서 신청 오류의 빈도, 협정·법·영 및 규칙의 준수도, 생산공장의 유무, 제조공정 및 물품의 생산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현지확인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한 경우
4.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5. 계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의 조사를 요청받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신청한 경우

6. 그 밖에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원산지를 확인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증명서발급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2조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공휴일·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다) 이내
2. 제1호 외의 경우: 3일(공휴일·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다) 이내

⑤ 증명서발급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제4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증명서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분실·도난·훼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원산지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발급 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재발급신청서 및 재발급 신청사유서를 당초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 및 발급(재발급신청 및 재발급을 포함한다)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4) 원산지증명서류의 발급자 및 발급단계

제6조의3(원산지확인서) ①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이하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등"이라 한다)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한 서

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원산지확인서"라 한다)를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동일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장기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등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원산지포괄확인서(원산지확인서 작성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최초의 원산지확인서를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등으로부터 원산지확인서 또는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제공 받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는 이를 기초로 제6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제8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산지확인서 및 원산지포괄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자율증명절차) ①수출자는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경우로서 그 물품의 생산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확인서 또는 원산지소명서를 근거로 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의 작성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1. 작성번호 및 작성일자
2. 수출신고의 번호 및 수리일자
3. 품명·품목번호·수량·금액 및 원산지
4. 생산자 또는 공급자
5. 수입자 및 수입국명
6. 당해 물품에 적용된 협정의 명칭 및 원산지결정기준

제8조의2(협정에 따른 원산지자율증명절차) ①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작성·서명에 관하여 협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협정에 따라 상업송장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서면확인서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5) 협정별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제9조(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싱가포르 관세당국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 별지 제6호서식
2. 우리나라 증명서발급기관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 별지 제6호의2서식

제9조의2(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등) ①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 별표 1에 규정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해당 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
 2. 스위스연방농업국이 인증한 기관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 별지 제6호의4서식
- ②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I 제16조에 따른 인증수출자로 본다.

제9조의3(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6호의5서식과 같다.

제9조의4(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6호의6서식과 같다.

제9조의5(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6호의7서식과 같다.

제9조의6(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등) ①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별표 2에 규정된 사항이 기재되고, 품명·규격 등 해당 물품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상세 정보가 포함된 상업송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로 한다.

- ②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부속서 2-가에 따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또는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별표 9 제5호에 규정된 물품에 대하여 같은 호에 따른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Derogation - Annex II(a) of Protocol"이라는 영어문구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의7(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등)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서식 및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6호의8서식
2. 제4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 별표 3에 규정된 사항이 기재되고, 품명·규격 등 해당 물품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상세 정보가 포함된 상업송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제9조의8(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등)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한다.

1. 별지 제6호의9서식에 따라 작성된 서류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서류
 - 가. 작성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 나. 수입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작성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다. 수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생산자와 다른 경우에만 해당한다)
 - 라. 생산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작성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마.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 및 품명
 - 바. 해당 물품이 원산지물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 사. 원산지포괄증명 유효기간(원산지포괄증명 대상 물품인 경우만 해당한다)
 - 아. 작성일자

4. 사무처리 고시상의 원산지증명제도 관련 조항

제1-0-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증명서발급기관”이라 함은 협정 및 법령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산지국가의 수출물품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을 말한다.
3. “원산지확인서”라 함은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가 제조한 수출물품이 협정과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산지물품임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원산지증명서의 작성 등을 위하여 생산자가 작성·서명하여 수출자에게 제공하는 서류를 말한다.

제2-1-3조(원산지증명서의 구분 및 기준) ①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는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와 자율증명 원산지증명서로 구분한다.

- ② 싱가포르와의 협정?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및 인도와의 협정은 기관발급 원산지 증명서를 적용한다.
- ③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및 칠레와의 협정은 자율증명 원산지증명서를 적용한다.
- ④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수출신고 기준으로 발급 또는 작성·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원산지증명서에 수출신고서의 각 품목번호별로 구분하여 작성·발급할 수 있으며 수출물품을 분할 또는 동시 포장하여 적재하는 경우에는 선하증권 또는 항공운송장별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또는 작성·서명할 수 있다.

제2-2-1조(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①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체약상대국 관세당국(협정에서 정한 다른 권한 있는 당국이 있는 때에는 그 당국을 말한다)에 통보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하 “증명서발급기관”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 ② 증명서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 발급담당자 및 발급기관의 인장 등을 지정하고 규칙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증명서발급기관이 발급담당자 또는 발급기관의 인장 등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발급기관의 추가지정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증명서발급기관은 발급업무를 시작하는 날 30일 이전까지 발급기관 추가지정 요청과 함께 발급담당자 및 발급기관의 인장 등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발급기관이 폐지되는 경우에는 폐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⑤ 관세청장은 증명서발급기관으로부터 규칙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보 받은 때에는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협정에서 정한 다른 권한 있는 당국이 있는 때에는 그 당국을 말한다)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증명서 발급기관 중 세관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인장을,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공회의소”라 한다.)는 대한상공회의소장이 지정한 인장을 원산지증명서 발급용 인장으로 사용한다.

제2-2-2조(원산지증명서 신청자) ① 싱가포르와의 협정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이하 본 절에서 “신청자”라 한다)는 수출자(수출자로부터 권한을 서면으로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 ②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이하 본 절에서 “신청자”라 한다)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생산자 또는 수출자로부터 권한을 서면

으로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③ 인도와의 협정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이하 본 절에서 “신청자”라 한다)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생산자 또는 수출자로부터 권한을 서면으로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④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는 신청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발급할 수 있다.

제2-2-3조(신청서류에 대한 책임)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신청한 서류에 흠결이 있을 때에는 신청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2-2-4조(원산지증명서 발급대상)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제2-2-4조의2(증명서발급 담당직원의 교육이수) 규칙 제5조 제8항에 따라 증명서발급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교육(설명회 또는 토론회를 포함한다)을 매년 4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의 증명서발급담당자는 연간 20시간 이상으로 한다.

1. 필수교육 : FTA 원산지 규정
2. 선택교육 :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분류, 물품가격의 산정, 회계이론

제2-2-5조(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①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② 신청자는 수출물품의 완료되기 전(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신청은 수출물품의 선적시 또는 선적일부터 근무일수 7일 이내)까지 규칙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서류를 증명서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원산지인증수출자로부터 공급받은 원재료 또는 제품을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자에 대하여는 원산지 증명서 발급신청서 및 원산지확인서를 제외한 그 밖의 서류의 제출과 원산지의 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규칙 제6조제1항 제5호의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확인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는 물품은 세번변경 관련 입증서류(예: 원료구입명세서, 자재명세서(BOM), 생산공정명세서, 사용자매뉴얼, 홍보책자 등)
2.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물품은 비원산지재료, 원산지재료 및 수출물품의 가격 관련 입증서류(예: 자재명세서(BOM), 원료구입명세서, 원료수불부, 원가산출내역

서 등)

3. 규칙 제6조의3에 따른 수출용원재료원산지확인서
 4. 기타 해당 물품의 생산자·생산장소·생산공정 등 원산지의 확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서류
- ④ <삭제>

제2-2-6조(신청서류 심사 및 보정요구) ① 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원산지증명서 신청자가 신청자격이 있는지 여부
2.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일이 선적일부터 1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
3. 계약상대국의 협정관세 적용품목인지 여부
4. 계약상대국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5.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가 기재요령과 일치하는지 여부
6.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 구비 여부

② 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정을 요구하는 경우 그 기간은 5일 이상 10일 이내로 한다.

제2-2-7조(현지확인) ①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현지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그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현지확인 이유 및 법적 근거
2. 현지확인 기간 및 방문자
3. 확인대상 내용
4. 확인 거부시 처리내용

② 신청자는 증명서발급기관이 통지한 현지확인 기간에 현지확인을 받기 곤란한 때에는 연기를 받고자 하는 기간과 사유를 증명서발급기관에게 통보하고 현지확인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10조(원산지증명서 발급) ① 증명서발급기관은 수출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 1회 발급을 원칙으로 한다.

② 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증명서발급기관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원본 1부와 부분 2부(인도와의 협정은 3부)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원본 1부와 부분 1부(인도와의 협정은 4부)를 교부하고 증명서발급기관이 부분 1부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증명서발급기관은 신청자가 계약상대국 수입자의 요청에 따

라 원산지증명서를 추가로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서 등을 통하여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원산지증명서를 추가로 발급할 수 있다.

제2-2-12조(원산지증명서 재발급) ① 규칙 제6조제6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재발급신청사유서와 원산지증명서 제4부분(인도와의 협정만 해당)을 첨부하여 당초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증명서발급기관은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2-10조에 따라 신청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증명서발급기관이 제2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별표4의 재발급 스탬프를 날인하여 발급한다.

1. 규칙 별지 제6호의2 서식의 경우에는 15번 항목(Certification)에 날인
2. 규칙 별지 제6호의5 서식의 경우에는 12번 항목(Certification)에 날인
3. 규칙 별지 제6호의6 서식의 경우에는 6번 항목(Remarks)에 날인

제2-2-12조의2(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① 제2-2-10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수출신고 수리필증의 정정, 원산지증명서의 오탈자, 수량, 품목번호 등의 착오, 누락, 또는 기재오류 등을 이유로 원산지증명서를 정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증명서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서
2. 원산지증명서 원본
3. 정정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증명서발급기관은 정정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정정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다.

제2-2-12조의3(원산지증명서 선적후 발급) 증명서발급기관이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선적 후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별표5의 선적후 발급 스탬프를 날인하여 발급한다.

1. 규칙 별지 제6호의2 서식의 경우에는 15번 항목(Certification) 또는 규칙 별지 제6호의5 서식의 12번 항목(Certification)에 날인
2. 규칙 별지 제6호의6 서식의 경우에는 6번 항목(Remarks)에 날인

제2-2-13조(전자문서 방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① 원산지증명서를 전자문서 방식으로

로 발급받고자 하는 자(수출신고한 관세사가 대리 가능)는 관할세관장으로부터 전자 민원 사용승인을 받아 전자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관세청 통관포탈시스템에 접속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의 내역을 입력하여 민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민원신청내역과 구비서류를 확인 후 이상이 없는 경우 3일 이내(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10일 이내) 승인 등록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명발급 승인을 받은 신청인은 통관포탈시스템에 접속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다.

④ 전산시스템 정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2항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원산지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세관장은 그 내역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발급한다.

제2-2-14조(원산지증명서 발급내역 보고) ① 규칙 제5조제5항에 따라 증명서발급기관이 관세청장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내역을 통보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 사본
 2. 업체별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오류건에 대한 반려 실적
 3. 업체별 허위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건에 대한 범칙조사 또는 범칙조사의뢰 실적
- ② 관세청장은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의 실적을 관세청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의 실적은 조사처분 결과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3절 원산지 자율증명 절차

제2-3-1조(원산지증명서 작성·서명자 등) ① 수출자는 영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라 서명권자를 지정·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출자가 서명권자를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에 새로운 서명권자의 서명·부서명·직책·성명·지정일자 및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종전의 서명권자에 대하여는 서명 권한 해제일자 및 사유를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제2-3-2조(원산지확인서 등 작성) ①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작성을 위해 생산자에게 규칙 제6조제1항제3호의 원산지확인서(이하 “원산지확인서”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원산지소명서(이하 “원산지소명서”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생산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1. 협정의 명칭 및 수출예정국가

2. 수출 품목의 품목분류번호 및 해당 원산지결정기준

② 생산자는 자신이 생산한 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원산지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 또는 원산지소명서(규칙 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수출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칠레와의 협정에 따라 수출자와 생산자가 동일하지 않는 경우 수출자는 생산자가 작성·제출한 원산지통보서(별지 제4호의2 서식)에 근거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다. 단, 휴·폐업 등의 사유로 생산자로부터 원산지통보서를 제출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생산자의 서면진술서(별지 제4호의3 서식) 또는 생산자·생산장소·생산공정 및 거래계약서 등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나 사실에 근거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3-3조(원산지증명서 작성·서명) ① 수출자는 수출물품의 원산지가 확인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기재요령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작성·서명한 후 계약상대국 수입자의 요구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를 작성·서명한 후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서명 내역을 별지 제5호 서식의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재료생산자)가 원산지확인서(수출용원재료원산지확인서)를 작성·제공한 경우 제2항 규정을 준용한다.

5. 관세청 지침상의 원산지증명제도 관련 조항⁸⁾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출자”라 함은 물품을 수출신고 하는 자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의 책임이 있고 협정에서 정한 자료보관의 의무를 지며 원산지 검증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2. “최종제품 생산자”라 함은 수출자에게 수출물품을 공급하고 원산지소명서 또는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는 자를 말한다.

3. “원재료 공급자”라 함은 최종제품 생산자 또는 다른 원재료 공급자에게 원재료를 공급하고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는 자를 말한다.

4. “생산자”라 함은 최종제품 생산자 또는 원재료 공급자를 말한다.

8)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 활용촉진을 위한 통합지침(2011.05.04.), 관세청 FTA집행기획관실

5. “원산지소명서”라 함은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의 기초자료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을 말한다.
6. “원산지확인서”라 함은 수출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구성하는 원재료의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생산자가 발급하며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 서식을 말한다.
7. “원산지증빙서류”라 함은 재료명세서,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 등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8. “관세사”라 함은 관세사법에 의한 관세사·관세법인을 말한다.
9. “협정활용률”이라 함은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다.

$$\text{협정활용률} = \frac{\text{특혜관세를 적용받는 수출금액}}{\text{특혜관세 대상품목의 수출금액}} \times 100$$

제3조(생산자 관련사항) ① 생산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해야 한다.

1. 생산물품에 대한 재료명세서 작성과 생산물품 및 원재료에 대한 품목분류
2. 원재료를 공급한 다른 원재료공급자로부터 받은 원산지확인서. 다만, 원재료를 공급받은 자가 원산지소명서 등 원산지확인서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에 대하여 원재료를 공급하는 자로부터 제출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3. 생산공정도. 다만, 생산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한 생산공정도에 한한다.

② 생산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세관장 또는 관세사에게 조력을 요청할 수 있다.

1. 생산물품과 재료명세서에 있는 원재료의 품목분류에 대한 정보
2. 원재료공급자로부터 받은 원산지확인서 항목의 적정성
3.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원산지 등에 관한 사전심사 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그 신청절차
4. 원산지 증빙서류 보관 방법 및 절차

③ 생산자는 다른 생산자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은 경우에 해당 생산자에게 원산지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생산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원산지확인서 등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생산자가 그 서류의 정확성을 세관장으로부터 확인받고자 하는 때에는 원산지 증빙서류 확인신청서(이하“확인신청서”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고 확인대상 서류와 그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 ⑤ 생산자가 생산물품에 대한 원산지, 품목분류, 원재료의 원산지 등에 관하여 판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 ⑥ 생산자가 제5항에 따라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부터 생산물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 기준의 충족요부에 대한 사전심사서(이하“원산지 사전심사서”라 한다)를 발급 받은 경우 그 사전심사서는 원산지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원산지확인서로 사용할 수 있다.
- ⑦ 최종제품생산자는 수출자가 원산지소명서의 제출을 요청하는 때에는 그 서류를 작성하여 수출자에게 제출한다. 다만, 영업비밀 보호 등의 사유로 수출자에게 원산지소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으며 세관장은 원산지소명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그 정확성 여부를 수출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원산지소명서의 내용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⑧ 생산자는 다른 생산자가 원산지확인서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자 상호연락처 및 발급하지 않은 사유 등을 관할세관에 신고할 수 있다.
- ⑨ 생산자는 원산지확인서 등 원산지 증빙서류를 협정에 정하는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수출자 관련사항) ① 수출자 관련사항은 제3조 제1항에서 제5항까지, 제8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 ② 수출자는 생산자로부터 발급받은 원산지확인서 등을 참고하여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소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③ 수출자가 원산지 사전심사서를 발급 받고 그 사전심사서에 근거하여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서와 원산지 사전심사서 외에 다른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관세사 조력사항) ① 관세사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력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서 제5호까지의 사항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서면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1. 재료명세서에 있는 원재료에 대한 품목분류
2. 생산자 또는 수출자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하여 원산지확인서 작성 대행
3. 생산자로부터 요청받은 확인신청서 작성 대행
4.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원산지 증빙서류 보관 대행

5. 수출자로부터 요청받은 업체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연장) 신청서(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연장)신청서(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 서식) 작성 대행

②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원산지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관세사가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라 원산지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관세사는 협정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사는 원산지 증빙서류를 마이크로필름, 광학 디스크 등 전산매체에 보관할 수 있다.

제9조(확인신청서 처리 방법 등) ① 세관장이 제3조제4항에 따른 확인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확인신청서와 확인받고자 하는 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고 그 내용이 특례법령에서 정한 작성양식, 원산지 결정기준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에 별표 제1호의「확인필」을 날인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물품의 원산지 확인과 관련된 생산자에게 원산지확인서 등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3조제8항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원산지확인서 발급 신고센터」를 자체 실정에 맞게 운영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운영일지(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절 관세법

1. 법률상의 원산지증명제도 관련 조항

제232조의2(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 ① 이 법, 조약, 협정 등에 따라 관세를 양허받을 수 있는 물품의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나 그 밖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 기관은 그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하여금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로 한정한다)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기간은 20일 이상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로 한다.

1.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2.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233조의2(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① 관세청장은 이 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조약·협정 등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확인·결정 또는 검증 등의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석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수집·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시행령상의 원산지증명제도 관련 조항

제236조의5(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업무의 위탁) ① 법 제233조의2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관리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원산지 조사 업무 중 물품의 생산 공정 분석, 거래형태 분석, 품목분류 및 부가가치 계산 등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조약·협정에 따른 원산지 사전심사를 위한 예비 조사에 관한 사항
4. 제236조의2에 따른 사전확인 업무의 예비 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품목분류·원산지 기준 등 원산지정보 수집·분석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전산설비를 갖춘 법인 또는 단체의 장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 대한 지휘·감독의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236조의6(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 등) ① 법 제232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로서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3년 이내

의 자료를 말한다.

1.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목의 자료
 - 가. 수출자에게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하여 제공한 서류
 - 나. 수출자와의 물품공급계약서
 - 다.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생산자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 라.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명 서류
 - 마. 원가계산서·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 바.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대장
 - 사.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가 그 재료의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여 생산자에게 제공한 서류
 - 아.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수출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목의 자료
 - 가.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물품을 수입하는 국가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 나. 수출신고필증
 - 다.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 라.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 마. 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서류(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3.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목의 자료
 - 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 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 다. 그 밖에 발급기관이 보관 중인 자료로서 원산지 확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료
- ② 법 제232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수출물품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를 말한다.

제236조의8(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등에 관한 조사 절차 등) ① 법 제233조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는 서면조사만으로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

다.

② 세관장은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사의 연기신청, 조사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법 제114조제2항 및 제115조를 준용한다.

④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조사대상자는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신청서에 이의제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이의를 제기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통지서를 받은 날짜 및 조사결정의 내용
3.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용도·수출자·생산자 및 수입자
4. 이의제기의 요지와 내용

⑤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세관장은 제4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내용이나 절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서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⑦ 제6항 본문에 따른 보정기간은 제5항에 따른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시행규칙상의 원산지증명제도 관련 조항

제77조(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제출기간) 법 제23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다만,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를 제출하기 곤란할 때에는 그 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3절 대외무역법

1. 법률상의 원산지증명제도 관련 조항

제37조(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 ①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이행하기 위하여 또는 교역상대국 무역거래자의 요청으로 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준·발급절차, 유효기간, 수수료와 그 밖에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시행령상의 원산지증명제도 관련 조항

제66조(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준 등) ①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준은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이나 협정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또는 상대 수입국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준으로 한다.

②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수출물품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구매자·공급자에 관한 서류
2. 수출 물품의 가격·수량 등에 관한 서류
3. 그 밖에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확인하여 발급 여부를 결정한 후 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이나 협정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그 유효기간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으로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절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7조(원산지증명서의 발행) ①수출물품 중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한한다.(개정 2008.12.9)

1. 남북교역물품(북한으로 반출되는 것)
2. GSP특혜를 받기 위하여 노르웨이, 캐나다, 뉴질랜드 등으로 수출되는 물품
3. APTA 협정국으로 수출되는 물품
4. GSTP 협정국으로 수출되는 물품
5. GATT TNDC 협정국으로 수출되는 물품
6. FTA 협정 국가로 수출되는 물품
7. 기타 우리나라산 물품이 특혜관세를 공여받는 경우

②세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수출자(수출신고한 관세사가 대리 가능)는 관할세관장으로부터 전자민원 사용승인을 받고 전자공인인증서를 구입한 후 관세청홈페이지 통관포탈시스템에 접속하여 특혜원산지증명서(별지 제1-2호 서식부터 제1-6호 서식) 및 수출신고번호 등 원산지증명발행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의 내역을 입력한 후 민원신청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9)

③세관장은 민원신청내역과 구비서류(필요시에 한함)가 당해 협정 또는 특혜공여국의 원산지결정기준(별표2)에 일치하는 지 여부와 수수료 납부사항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즉시 승인 등록하여야 한다.

④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명발급 승인을 받은 신청인은 통관포탈시스템에 접속하여 원산지증명서(수출자용, 수입자용)를 출력할 수 있다. 다만, 분실 등 사정이 있는 경우 1년 이내에 한하여 재발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재발급” 또는 “Reissue” 등의 표현으로 재발급된 원산지증명서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⑤전산시스템 정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2항의 구비서류를 첨부 원산지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세관장이 그 내역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증명서를 직접 발급한다.

⑥세관장은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출자의 제조여부 등을 확인하게 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인사이동 등으로 인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담당 공무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발급기관등록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세청을 경유 특혜 공여국에 등록한 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⑧기타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북교류협력법, FTA이행특례법, 대외무

역법 제37조 및 수출물품원산지증명 발급규정(지식경제부고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8.12.9.)

제5절 수출물품 원산지증명 발급규정

제1-2조 (종류) 이 규정에 따라 발급하는 원산지 증명서는 “일반수출물품원산지증명서”와 “관세양허대상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일반특혜 관세(GSP), GATT개발도상국간 관세양허협정,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GSTP)에 관한 협정 및 자유무역협정(FTA)등에 의한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로 구분된다.

제1-3조(용어의 정의) ① “원산지증명서”라 함은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 사육, 제조 또는 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한다.

제1-5조(신청자)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자는 물품을 수출하는 자로 하며 신청자 자격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단 제2장의 일반수출물품원산지증명서의 발급에 한하여 발급기관장은 신청자에게 일정한 서명등록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및 서명권자) ① 일반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대한상공회의소로 하되, 세부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관세양허대상 수출물품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대한상공회의소 및 세관장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및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자단 마산 및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관할구역안의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을 발급기관으로 한다.

③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장은 원산지증명서 서명권자를 지정하고 지정된 서명권자는 지식경제부를 경유하여 각 국가의 세관당국에 서명등록을 해야 하며, 서명권자 변경시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특별히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도로 발급기관 및 서명권자를 지정(소속 기관장의 요청에 따라)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서명토록 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서명권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직인을 날인한 후 서명권자의 서명에 의하여 발급한다.

⑥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는 대외적으로는 지식경제부장관이 발급한 효력을 가지나 대내적으로는 서명권자 소속기관장의 권한과 책임에 의하여 발

급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원산지증명서 발급요령) ①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다.

1. 원산지증명서가 소정의 양식에 의거 누락 없이 작성되었으며, 기재사항이 신청자가 제출한 기타서류와 일치하는지 여부
 2.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품목이 각 장의 대상품목에 포함되며, 각 국이 규정한 원산지기준에 합당하는지 여부
- ② 원산지증명서를 사후적으로 발급시는 발급기관사용란(FOR OFFICIAL USE)에 소급발급스탬프(ISSUED RETROACTIVELY 혹은 ISSUED RETROSPECTIVELY(구주 국가))를 적색으로 날인 발급한다.
- ③ 원산지증명서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재발급시는 발급기관사용란(FOR OFFICIAL USE)에 재발급스탬프(DUPLICATED)를 적색으로 날인하고 발급한다.
- ④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부(日付)는 발급기관의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가 완료된 일자로 한다. 다만, 재발급시의 일부는 최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일자로 한다.
- ⑤발급 신청한 원산지증명에 착오 또는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삭제하고 정정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발급기관의 정정 인을 날인한다.

제1-9조(보존기간)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및 신청자는 발급된 수출물품원산지증명서의 부분을 일반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의 경우는 2년, 관세양허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는 3년,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관세양허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경우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단, 발급기관이 컴퓨터 전산망을 통한 원산지증명서 자동화발급방법으로 발급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부분을 전자문서 등으로 보관할 수 있다.

제1-11조(원산지증명서 교부방법) 원산지증명서 교부방법에는 관련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하여 발급받는 서면교부방법과 컴퓨터전산망을 통한 자동화발급방법이 있다.

제1-12조(원산지증명서 자동화발급에 대한 특례) 발급기관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업체는 인터넷웹사이트 또는 전용네트워크(EDI 방식)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단, 전자무역문서를 이용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른다.

1. 자동화발급 신청업체가 원산지증명서의 데이터를 전자문서로 발급기관에 전송하면 발급기관은 업체에서 전송한 데이터를 심사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승인하여

전자문서로 업체에 재전송한다.

2. 자동화발급 신청업체는 동 업무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선정하고 발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발급기관은 자동화발급방법으로 발급된 문서에 대해 근거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발급자의 실사인을 요구하는 경우와 신청업체와 수출업체가 상이한 경우는 이 규정에 의해 발급신청을 할 수 없다.
4. 자동화발급방법 중 인터넷 웹방식 신청업체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인증서 발급기관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야만 원산지증명 신청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
5. 자동화발급방법 중 전용네트워크(EDI) 방식은 일반수출물품원산지 증명서에 한한다.

제7장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한 관세양허 수출품의 원산지증명

제7-1조 (원산지증명발급대상품목)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수출물품에 대하여 대한민국정부와 상대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 이라 한다.)에서 양허한 품목에 한한다.

제7-4조 (원산지증명서 기재요령 및 규격) 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수출물품에 대하여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서식과 기재요령은 협정에서 정한 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7-5조 (원산지증명서 발행 및 보관) 협정에 의한 원산지 증명서는 수입자에게 송부할 원본 1부와 부분 2부를 발행하되 부분 1부는 발급기관에서 부분 1부는 신청자는 각각 보관한다.

제3장 현행 원산지증명제도 운영실태 조사

현행 원산지증명제도의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마련을 위해 원산지확인서 발급기업(공급자 및 최종제품 생산자)과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업(최종 수출자)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설문조사 실시

원산지표시 관련 설문조사의 개요

① 설문대상

- 원산지확인서 발급기업 : 250개사
- 원산지증명서 발급기업 : 255개사

② 설문대상별 질의내용

- 공통사항
 - 기업개요
 - FTA에 대한 관심도 및 원산지관리 수행여부
- 원산지확인서 발급기업
 - 원산지확인서 발급과 관련한 애로
 - 원산지확인서 발급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및 제도적 개선방안
 - 원산지확인서 내용의 공인기관 확인(공인인증)제도 도입 필요성
 - 원산지증명서 오류로 인한 손해보전 제도(제3자 보증)의 도입 필요성
- 원산지증명서 발급기업
 -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애로
 - 제공받은 원산지확인서 관련 사항
 - 원산지확인서 발급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및 제도적 개선방안
 - 원산지확인서 내용의 공인기관 확인(공인인증)제도 도입 필요성
 - 원산지증명서 오류로 인한 손해보전 제도(제3자 보증)의 도입 필요성

③ 설문방법

- 전화설문 및 방문설문 병행
 - 전화설문 : 전문업체 위탁
 - 방문설문 : 직접 방문

제1절 설문조사 내용

1. 원산지확인서 발급기업 대상 설문

원산지증명절차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원산지확인서 발급기업)

안녕하십니까?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는 원산지증명 능력 향상을 통한 수출기업의 FTA활용도 제고를 지원하고자 “원산지증명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도입 마련”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 원산지증명제도의 문제점 파악과 원산지증명제도의 효율화를 위한 의견을 수집하고자 하오니 잠시만 시간을 내시어 설문조사에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13조~제14조에 의해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고 귀사에 피해가 가는 일이 없으며,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리오니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12. 05.

| | |
|-----------------------|--|
| 연구수행기관 및 연구진행자 | 연구기관 : 국제원산지정보원 연구진행 : 진 병 진 선임연구원 (☎ 031-600-0742) |
|-----------------------|--|

| | | |
|------------|--------------------|---|
| 응답자 | 성 명 | 업 체 명 |
| | 전화번호 | 이 메 일 |
| | 기 업 체 소 재 지 | 01. 서울 <input type="checkbox"/> 02. 부산 <input type="checkbox"/> 03. 대구 <input type="checkbox"/> 04. 인천 <input type="checkbox"/> 05. 광주 <input type="checkbox"/> 06. 대전 <input type="checkbox"/> 07. 울산 <input type="checkbox"/> 08. 경기 <input type="checkbox"/> 09. 강원 <input type="checkbox"/> 10. 충북 <input type="checkbox"/> 11. 충남 <input type="checkbox"/> 12. 전북 <input type="checkbox"/> 13. 전남 <input type="checkbox"/> 14. 경북 <input type="checkbox"/> 15. 경남 <input type="checkbox"/> 16. 제주 <input type="checkbox"/> |

A. 기업개요

1. 귀사의 업종은 무엇입니까?
 ① 전기·전자 ② 기계·정밀기기 ③ 섬유 및 의류 ④ 철강 및 금속 ⑤ 화학공업
 ⑥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⑦ 식음료 ⑧ 농축수산물 ⑨ 목재·가구
 ⑩ 기타(업종기재 :)

2. 귀사의 전체 종업원 수는 몇 명입니까?
 ① 10명 이하 ② 11~30명 ③ 31~60명 ④ 61~100명 ⑤ 101~300명 ⑥ 300명 이상

B. FTA 관심도 관련

1. 현재 귀사의 FTA 관심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번호 | 항 목 | 전 혀 않 | 혀 지 않 | 보 통 | 그 러 함 | 매 우 함 |
|-----|----------------------------------|-------------|-------------|--------|-------------|-------------|
| 1-1 | 현재 우리나라와 발효된 FTA협정을 알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2 | 공급하는 물품의 품목분류를 정확히 알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3 | 공급하는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4 | 원산지관리의 필요성을 알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5 | 원산지(포괄)확인서에 대하여 알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6 | 원산지소명서에 대하여 알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7 |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에 대하여 알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8 | 각 협회나 유관기관에서 개최하는 설명회 및 교육에 참여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2. 위의 질문 항목(1-1~1-8)들에 대해 귀사가 대체적으로 알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된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FTA 활용 정보 획득의 어려움 ② 정부 또는 관련기관들의 홍보 부족
 ③ 기업의 관심부족 ④ 전문인력 부족 ⑤ 기타()

3. 귀사는 원산지관리를 수행하고 계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4. 귀사는 원산지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① 생산(수출) 품목이 FTA 특혜받을 실익이 없음
 ② 원산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과다
 ③ 전문인력의 부족 ④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기가 힘들 ⑤ 기타()

5. 귀사는 원산지관리전담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계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6. 현재 귀사의 FTA 활용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번호 | 항 목 | 전혀 그렇 지 않 | 혀 그 렇 지 않 | 보 통 | 그 러 함 | 매 우 그 러 함 |
|-----|-----------------------------------|--------------------|-----------------------|--------|-------------|-----------------------|
| 6-1 | 원산지충족 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6-2 | 원산지증명에 관한 증빙서류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6-3 | 공급시 구매자의 FTA활용지원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6-4 | FTA활용기업과의 거래가 귀사의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6-5 | FTA를 직접 활용할 의향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7. 원산지관리를 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원산지결정기준 이해부족 ② 원산지 입증자료의 방대함
 ③ 원산지정보 관리·확인의 어려움 ④ 기밀유출우려
 ⑤ 원산지관리 전담자의 부재 ⑥ 원산지관리에 따른 비용부담 ⑦ 기타()

C. 원산지확인서 관련 문항

1. 귀사가 현재 원산지확인서를 제공하고 있는 수출기업이 활용 중인 FTA협정을 아는 대로 체크 해 주세요? (복수응답 가능)

- ① 한-칠레 FTA ② 한-싱가포르 FTA ③ 한-EFTA FTA ④ 한-아세안 FTA
 ⑤ 한-인도 FTA ⑥ 한-EU FTA ⑦ 한-페루 FTA ⑧ 한-미 FTA

2. 원산지확인서 발급과 관련하여 귀사가 느끼는 점을 솔직히 답해 주십시오.

| 번호 | 항 목 | 전혀 그렇 지 않 | 혀 그 렇 지 않 | 보 통 | 그 러 함 | 매 우 그 러 함 |
|-----|----------------------------|--------------------|-----------------------|--------|-------------|-----------------------|
| 2-1 | 원산지확인서 항목 중 불필요한 항목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2 | 원산지확인서 작성내용에 대한 확신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3 | 원산지확인서 내용에 대한 소명에 부담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4 |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해 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원산지확인서 항목 중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이 있으시면 기재해 주세요.

3.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인센티브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해 발급건수 1건당 1만원 연 간 30만원 한도 내에서 부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① 예 ② 아니오

4. 현행 원산지확인서 제도의 개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솔직히 답변해 주세요.

| 번호 | 항 목 | 전 혀 그 렇 지 않 | 현 황 지 음 | 그 렇 지 음 | 보 통 | 그 러 함 | 매 그 러 함 | 우 함 |
|-----|--|----------------------------|------------------|------------------|--------|-------------|------------------|--------|
| 4-1 | 원산지확인서의 전자적 유통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4-2 | 원산지확인서의 발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행 인센티브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4-3 | 원산지확인서에 대한 관세사의 가장 대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 ② | ③ | ④ | ⑤ | | |

5. 원산지확인서의 발급 활성화를 위해 도입되었으면 하는 인센티브제도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현행 제도로 충분하다
- ② 원산지확인서 발급물품에 대한 부가세영세율 적용
- ③ 원산지확인서 발급건수와 연계하여 AEO 등 세관 법규준수도 가점 적용
- ④ 원산지확인서 발급건수와 연계하여 중소기업 지원자금 신청시 인센티브 부여
- ⑤ 기타()

6. 원산지확인서 발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적 보완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원산지확인서 전자문서 표준 마련
- ② 원산지확인서 발급 건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 제공
- ③ 원산지확인서 발급 관련 컨설팅(교육) 제공
- ④ 원산지확인서 발급 강제화
- ⑤ 기타()

7. FTA를 활용하는 수출기업 납품 시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발급을 꺼리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원산지확인서 작성방법을 몰라서
- ②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따른 직접적인 혜택이 없어서
- ③ 원산지관리에 따른 비용 부담
- ④ 가격정보 등 경영상의 정보 노출이 우려되어서
- ⑤ 원가 등 정보를 관리하지 않아서
- ⑥ 원산지검증으로 인한 피해 우려
- ⑦ 기타()

8. 귀사가 FTA활용기업에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원산지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FTA활용기업 납품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0~5%
- ② 6~10%
- ③ 11~15%
- ④ 15~20%
- ⑤ 잘 모르겠음

9. 귀사의 FTA활용기업에 대한 전체 매출중 원산지확인서 발급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0~20%
- ② 21~40%
- ③ 41~60%
- ④ 61~80%
- ⑤ 81~100%

10. 원산지확인서 내용에 대한 공인기관의 확인(공인인증)*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산지확인서 내용에 대한 공인기관의 확인(공인인증)**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발급한 원산지확인서 내용의 정확성을 발급한 자 또는 공급받는 자의 요청에 따라 공인기관이 확인(공인인증)해 주는 제도

| 번호 | 항 목 | 전 그 렇 지 않 음 | 허 그 렇 지 않 음 | 보 통 | 그 러 함 | 매 그 러 함 | 우 함 |
|------|---|----------------------------|----------------------------|--------|-------------|------------------|--------|
| 10-1 | 귀사는 원산지확인서 발급시 어려움이 없습니까 | ① | ② | ③ | ④ | ⑤ | |
| 10-2 | 원산지확인서 내용에 대한 공인기관의 확인(공인인증)을 통해 오류발생을 최소화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 ② | ③ | ④ | ⑤ | |
| 10-3 | 귀사가 작성한 원산지확인서 내용에 대한 적정성을 공인기관이 확인(공인인증)해 줄 경우 활용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 ② | ③ | ④ | ⑤ | |
| 10-4 | 원산지확인서 내용에 대한 확인(공인인증)을 받을 경우 수의자가 일부 또는 전부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 ② | ③ | ④ | ⑤ | |
| 10-5 | 원산지확인서 내용에 대한 확인(공인인증)은 국가 또는 국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수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 ② | ③ | ④ | ⑤ | |

11. 귀사가 발급한 원산지확인서의 오류로 인해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서가 잘못 발행된 경우가 있으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12. 귀사가 작성한 원산지확인서의 오류로 인해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서가 잘못 발행되어 수입자가 관세특혜 취소 등의 피해를 입게 될 경우 이를 금전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제3자 보증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3자 보증제도**
수출자가 제공한 원산지증명서의 오류로 발생한 수입자의 특혜관세취소 등 금전적 손실을 보증보험 등을 통해 보전해 줄 수 있도록 하여 거래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번호 | 항 목 | 전 그 렇 지 않 음 | 허 그 렇 지 않 음 | 보 통 | 그 러 함 | 매 그 러 함 | 우 함 |
|------|--|----------------------------|----------------------------|--------|-------------|------------------|--------|
| 11-1 | 원산지확인서 오류 등으로 인해 원산지검증시 특혜관세 취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 ② | ③ | ④ | ⑤ | |
| 11-2 | 원산지확인서 오류 등으로 특혜관세 취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출자가 귀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 ② | ③ | ④ | ⑤ | |
| 11-3 | 귀사는 원산지확인서 오류 등으로 인해 수입자가 입게 되는 금전적 손해배상을 위한 제3자 보증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 ② | ③ | ④ | ⑤ | |
| 11-4 | 귀사는 원산지확인서 오류 등으로 인한 수입자의 금전적 손해배상을 위한 제3자 보증제도가 시행되면 활용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 ② | ③ | ④ | ⑤ | |
| 11-5 | 제3자 보증제도의 보증주체는 국가 또는 국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수행하여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3. 기타 건의사항(원산지 확인서, 원산지증명서, 인증수출자제도 및 기타 FTA와 관련된 건의 사항 기재)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사용 가능)

2. 원산지증명서 발급기업 대상 설문

원산지증명절차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원산지증명서 발급기업)

안녕하십니까?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는 원산지증명 능력 향상을 통한 수출기업의 FTA활용도 제고를 지원하고자 “원산지증명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도입 마련”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 원산지증명제도의 문제점 파악과 원산지증명제도의 효율화를 위한 의견을 수집하고자 하오니 잠시만 시간을 내시어 설문조사에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13조~제14조에 의해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고 귀사에 피해가 가는 일이 없으며,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리오니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12. 05.

| | |
|-----------------------|--|
| 연구수행기관 및 연구진행자 | 연구기관 : 국제원산지정보원 연구진행 : 진 병 진 선임연구원 (☎ 031-600-0742) |
|-----------------------|--|

| | | | | |
|------------|--------------------|---|--------------|--|
| 응답자 | 성 명 | | 업 체 명 | |
| | 전화번호 | | 이 메 일 | |
| | 기 업 체 소 재 지 | 01. 서울□ 02. 부산□ 03. 대구□ 04. 인천□ 05. 광주□ 06. 대전□ 07. 울산□ 08. 경기□ 09. 강원□ 10. 충북□ 11. 충남□ 12. 전북□ 13. 전남□ 14. 경북□ 15. 경남□ 16. 제주□ | | |

A. 기업개요

1. 귀사의 업종은 무엇입니까?
 ① 전기·전자 ② 기계·정밀기기 ③ 섬유 및 의류 ④ 철강 및 금속 ⑤ 화학공업
 ⑥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⑦ 식음료 ⑧ 농축수산물 ⑨ 목재·가구
 ⑩ 기타(업종기재 :)

2. 귀사의 전체 종업원 수는 몇 명입니까?
 ① 10명 이하 ② 11~30명 ③ 31~60명 ④ 61~100명 ⑤ 101~300명 ⑥ 300명 이상

3. 귀사는 현재 FTA를 활용한 수출을 하거나, FTA 활용기업과 거래하고 계십니까?
 ① 예 (설문계속) ② 아니오 (설문중단)
4. 귀사가 발급하는 원산지증빙서류는 무엇입니까?
 ① 원산지(포괄)확인서 ② 원산지증명서

B. FTA 관심도 관련

1. 현재 귀사의 FTA 관심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번호 | 항 목 | 전 그 렇 지 않 | 허 그 렇 지 않 | 보 통 | 그 러 함 | 매 우 그 러 함 |
|-----|----------------------------------|-----------------------|-----------------------|--------|-------------|-----------------------|
| 1-1 | 현재 우리나라와 발효된 FTA협정을 알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2 | 공급하는 물품의 품목분류를 정확히 알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3 | 공급하는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4 | 원산지관리의 필요성을 알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5 | 원산지(포괄)확인서에 대하여 알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6 | 원산지소명서에 대하여 알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7 |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에 대하여 알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8 | 각 협회나 유관기관에서 개최하는 설명회 및 교육에 참여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2. 위의 질문 항목(1-1~1-8)들에 대해 귀사가 대체적으로 알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된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FTA 활용 정보 획득의 어려움 ② 정부 또는 관련기관들의 홍보 부족
 ③ 기업의 관심부족 ④ 전문인력 부족
 ⑤ 기타()

3. 귀사는 원산지관리를 수행하고 계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4. 귀사는 원산지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① 생산(수출) 품목이 FTA 특혜받을 실익이 없음
 ② 원산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과다
 ③ 전문인력의 부족 ④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기가 힘들 ⑤ 기타()

5. 귀사는 원산지관리전담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계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6. 현재 귀사의 FTA 활용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번호 | 항 목 | 전 그 렇 지 않 | 허 그 렇 지 않 | 보 통 | 그 러 함 | 매 우 그 러 함 |
|-----|-----------------------------------|-----------------------|-----------------------|--------|-------------|-----------------------|
| 6-1 | 원산지충족 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6-2 | 원산지증명에 관한 증빙서류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6-3 | 공급시 구매자의 FTA활용지원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6-4 | FTA활용기업과의 거래가 귀사의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6-5 | FTA를 직접 활용할 의향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7. 원산지관리를 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원산지결정기준 이해부족 ② 원산지 입증자료의 방대함
 ③ 원산지정보 관리·확인 어려움 ④ 기밀유출우려
 ⑤ 원산지관리 전담자의 부재 ⑥ 원산지관리에 따른 비용부담 ⑦ 기타()

C. 원산지증명서 관련 문항

1. 귀사가 현재 원산지확인서를 제공하고 있는 수출기업이 활용 중인 FTA협정을 아는 대로 체크해 주세요? (복수응답 가능)

- ① 한-칠레 FTA ② 한-싱가포르 FTA ③ 한-EFTA FTA ④ 한-아세안 FTA
 ⑤ 한-인도 FTA ⑥ 한-EU FTA ⑦ 한-페루 FTA ⑧ 한-미 FTA

2. 귀사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점을 솔직히 답해 주십시오.

| 번호 | 항 목 | 전 그 렇 지 않 | 허 그 렇 지 않 | 보 통 | 그 러 함 | 매 우 그 러 함 |
|-----|---------------------------------|-----------------------|-----------------------|--------|-------------|-----------------------|
| 2-1 | 원산지증명서 항목 중 불필요한 항목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2 | 원산지증명서 한국산으로 판정 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3 | 제공받은 원산지확인서 내용이 신뢰가 가지 않는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4 | 협력업체로부터 원산지확인서를 제공받는데 어려움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5 | 원산지소명서 및 기타 소명 자료 준비에 대한 부담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원산지증명서 항목 중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이 있으시면 기재해 주세요.

3. FTA 협정국에 대한 수출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해외 바이어 미요청 ② FTA특혜품목 여부를 모름 ③ 원산지결정기준 이해부족
 ④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⑤ 혜택미미 ⑥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상의 어려움
 ⑦ 원산지관리 비용부담 ⑧ 기타()

4. 귀사가 FTA활용을 위해 원산지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FTA활용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0~5% ② 6~10% ③ 11~15% ④ 15~20% ⑤ 잘 모르겠음

5. 귀사의 전체 수출중 원산지증명서 발급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0~20% ② 21~40% ③ 41~60% ④ 61~80% ⑤ 81~100%

6. 협력업체로부터 제공받는 원산지확인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솔직히 답변해 주세요.

| 번호 | 항 목 | 전 그 렇 지 않 | 허 그 렇 지 않 | 보 통 | 그 러 함 | 매 우 그 러 함 |
|-----|----------------------------------|-----------------------|-----------------------|--------|-------------|-----------------------|
| 6-1 | 제공받은 원산지확인서에 대한 신뢰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 ① | ② | ③ | ④ | ⑤ |
| 6-2 | 협력업체는 원산지관리를 명확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 ② | ③ | ④ | ⑤ |
| 6-3 | 협력업체는 원산지확인서 발급을 꺼린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 ② | ③ | ④ | ⑤ |
| 6-4 | 제공받은 원산지확인서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 ② | ③ | ④ | ⑤ |

7. 협력업체가 원산지확인서 제공을 꺼리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비용 등의 이유로 원산지관리를 하고 있지 않아서
 ②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어서
 ③ 원산지확인서 내용에 대한 증명에 부담을 느껴서
 ④ 가격정보 등 경영상의 정보 노출이 우려되어서
 ⑤ 원산지확인서 발급이 강제적이 아니어서
 ⑥ 원산지확인서 발급기업에 직접적인 혜택이 없어서 ⑦ 기타()

8.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인센티브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해 발급건수 1건당 1만원 연간 30만원 한도 내에서 부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① 예 ② 아니오

9. 현행 원산지확인서 제도의 개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솔직히 답변해 주세요.

| 번호 | 항 목 | 전 그 렇 지 않 | 허 그 렇 지 않 | 보 통 | 그 러 함 | 매 우 그 러 함 |
|-----|--|-----------------------|-----------------------|--------|-------------|-----------------------|
| 1-1 | 원산지확인서의 전자적 유통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2 | 원산지확인서의 발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행 인센티브의 확대개선이 필요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0. 원산지확인서의 발급 활성화를 위해 도입되었으면 하는 인센티브제도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현행 제도로 충분하다 ② 원산지확인서 발급물품에 대한 부가세영세율 적용
 ③ 원산지확인서 발급건수와 연계하여 AEO 등 세관 법규준수도 가점 적용
 ④ 원산지확인서 발급건수와 연계하여 중소기업 지원자금 신청시 인센티브 부여
 ⑤ 기타()

11. 귀사가 제공받은 원산지확인서를 근거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때 느끼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① 원산지확인서 내용에 대한 불신 ② 원산지확인서 내용검증에 대한 협력업체의 비협조
 ③ 협력업체의 원산지관리체계에 대한 불신 ④ 어려움 없음 ⑤ 기타()

12. 원산지확인서 발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적 보완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원산지확인서 전자문서 표준 마련
- ② 원산지확인서 발급 건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 제공
- ③ 원산지확인서 발급 관련 컨설팅(교육) 제공 ④ 원산지확인서 발급 강제화
- ⑤ 기타()

13. 귀사가 원산지확인서 발급기업에 제공하고 있는 인센티브는 무엇입니까?

- ① 원산지관리 관련 교육 제공 ② 원산지관리 전산시스템 지원
- ③ 원산지확인서 발급분에 대한 구매가격 인상 ④ 기타()

14. 원산지확인서 내용에 대한 공인기관의 확인(공인인증)*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산지확인서 내용에 대한 공인기관의 확인(공인인증)**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발급한 원산지확인서 내용의 정확성을 발급한 자 또는 공급받는 자의 요청에 따라 공인기관이 확인(공인인증)해 주는 제도

| 번호 | 항 목 | 전혀 그렇지 않음 | 허 그렇지 않음 | 보통 | 그러함 | 매우 그러함 |
|------|---|-----------------|----------------|----|-----|-----------|
| 14-1 | 귀사는 제공받은 원산지확인서가 정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 ② | ③ | ④ | ⑤ |
| 14-2 | 원산지확인서 내용에 대한 공인기관의 확인(공인인증)을 통해 오류발생을 최소화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 ② | ③ | ④ | ⑤ |
| 14-3 | 귀사가 제공받은 원산지확인서 내용에 대한 적정성을 공인기관이 확인(공인인증)해 줄 경우 활용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 ② | ③ | ④ | ⑤ |
| 14-4 | 원산지확인서 내용에 대한 확인(공인인증)을 받을 경우 수익자가 일부 또는 전부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 ② | ③ | ④ | ⑤ |
| 14-5 | 원산지확인서 내용에 대한 확인(공인인증)은 국가 또는 국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수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 ② | ③ | ④ | ⑤ |

15. 귀사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의 오류로 인해 수입업체가 관세특혜 취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금전적 보상책 마련을 위한 **제3자 보증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3자 보증제도**

수출자가 제공한 원산지증명서의 오류로 발생한 수입자의 특혜관세취소 등 금전적 손실을 보증보험 등을 통해 보전해 줄 수 있도록 하여 거래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번호 | 항 목 | 전 그 렇 지 않 | 혀 지 음 | 그 렇 지 않 | 보 통 | 그 러 함 | 매 우 그 러 함 |
|------|--|-----------------------|-------------|------------------|--------|-------------|-----------------------|
| 15-1 | 귀사가 제공받은 원산지확인서 오류 등으로 인해 원산지검증시 특혜관세 취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 ② | ③ | ④ | ⑤ | |
| 15-2 | 귀사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오류로 인해 수입자가 특혜관세 취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 ② | ③ | ④ | ⑤ | |
| 15-2 | 귀사는 원산지증명서 오류 등으로 인한 수입자의 금전적 손해배상을 위한 제3자 보증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 ② | ③ | ④ | ⑤ | |
| 15-3 | 귀사는 원산지증명서 오류 등으로 인한 수입자의 금전적 손해배상을 위한 제3자 보증제도가 시행되면 활용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 ② | ③ | ④ | ⑤ | |
| 15-4 | 제3자 보증제도의 보증주체는 국가 또는 국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수행하여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6. 기타 건의사항(원산지 확인서, 원산지증명서, 인증수출자제도 및 기타 FTA와 관련된 건의사항 기재)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사용 가능)

제2절 설문결과

1. 원산지확인서 발급기업 설문결과(250개사)

1) 원산지관리 수행여부

| 예 | 아니오 |
|-----------|----------|
| 169(67.6) | 81(32.4) |

2)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여부

| 예 | 아니오 |
|----------|-----------|
| 95(38.0) | 155(62.0) |

3) 원산지확인서 미발급 사유

| 작성방법을 몰라서 | 직접적인 혜택이 없어서 | 비용부담 | 경영정보 노출 우려 |
|-------------------|--------------|---------|------------|
| 78(31.2) | 87(34.8) | 22(8.8) | 21(8.4) |
| 원가 등 정보관리를 하지 않아서 | 원산지검증 피해 우려 | 기타 | 잘 발급하고 있음 |
| 8(3.2) | 5(2.0) | 7(2.8) | 22(8.8) |

4) 발급하는 원산지확인서 내용에 대한 확신이 있다

| 매우 그러함 | 그러함 | 보통 | 그렇지 않음 | 전혀 그렇지 않음 |
|--------|----------|-----------|----------|-----------|
| 4(1.6) | 40(16.0) | 136(54.4) | 50(20.0) | 20(8.0) |

5) 발급하는 원산지확인서 내용에 대한 소명에 부담이 있다

| 매우 그러함 | 그러함 | 보통 | 그렇지 않음 | 전혀 그렇지 않음 |
|---------|----------|-----------|---------|-----------|
| 20(8.0) | 85(34.0) | 115(46.0) | 23(9.2) | 7(2.8) |

6)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해 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 매우 그러함 | 그러함 | 보통 | 그렇지 않음 | 전혀 그렇지 않음 |
|--------|---------|-----------|-----------|-----------|
| 3(1.2) | 11(4.4) | 103(41.2) | 100(40.0) | 33(13.2) |

7)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는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인지여부

| 예 | 아니오 |
|----------|-----------|
| 29(11.6) | 221(88.4) |

8) 원산지확인서에 대한 관세사 등의 기장대행 필요성

| 매우 그러함 | 그러함 | 보통 | 그렇지 않음 | 전혀 그렇지 않음 |
|---------|-----------|----------|----------|-----------|
| 22(8.8) | 101(40.4) | 99(39.6) | 27(10.8) | 1(0.4) |

9) 원산지확인서 공인인증제도 도입 필요성

| 매우 그러함 | 그러함 | 보통 | 그렇지 않음 | 전혀 그렇지 않음 |
|----------|----------|----------|----------|-----------|
| 27(10.8) | 95(38.0) | 96(38.4) | 30(12.0) | 2(0.8) |

10) 원산지확인서 공인인증제도 이용 여부

| 매우 그러함 | 그러함 | 보통 | 그렇지 않음 | 전혀 그렇지 않음 |
|---------|----------|-----------|----------|-----------|
| 21(8.4) | 84(33.6) | 112(44.8) | 28(11.2) | 5(2.0) |

11) 원산지확인서 공인인증제도 이용시 이용료 부담의지

| 매우 그러함 | 그러함 | 보통 | 그렇지 않음 | 전혀 그렇지 않음 |
|---------|----------|-----------|----------|-----------|
| 10(4.0) | 50(20.0) | 104(41.6) | 69(27.6) | 17(6.8) |

12) 원산지확인서 공인인증제도의 공공기관 수행 필요성

| 매우 그러함 | 그러함 | 보통 | 그렇지 않음 | 전혀 그렇지 않음 |
|----------|----------|-----------|----------|-----------|
| 25(10.0) | 88(35.2) | 103(41.2) | 27(10.8) | 7(2.8) |

13) 원산지확인서 오류로 인한 수출자 손실 발생시 구상권 청구 가능성

| 매우 그러함 | 그러함 | 보통 | 그렇지 않음 | 전혀 그렇지 않음 |
|----------|-----------|----------|---------|-----------|
| 25(10.0) | 115(46.0) | 88(35.2) | 17(6.8) | 5(2.0) |

14) C/O오류를 대비한 제3자 보증제도 도입 필요성

| 매우 그러함 | 그러함 | 보통 | 그렇지 않음 | 전혀 그렇지 않음 |
|---------|-----------|-----------|--------|-----------|
| 24(9.6) | 109(43.6) | 106(42.4) | 8(3.2) | 3(1.2) |

15) C/O오류를 대비한 제3자 보증제도 도입시 이용 여부

| 매우 그러함 | 그러함 | 보통 | 그렇지 않음 | 전혀 그렇지 않음 |
|---------|----------|-----------|---------|-----------|
| 17(6.8) | 88(35.2) | 128(51.2) | 13(5.2) | 4(1.6) |

16) C/O오류를 대비한 제3자 보증제도의 공공기관 수행 필요성

| 매우 그러함 | 그러함 | 보통 | 그렇지 않음 | 전혀 그렇지 않음 |
|----------|-----------|----------|---------|-----------|
| 27(10.8) | 113(45.2) | 93(37.2) | 12(4.8) | 5(2.0) |

2. 원산지증명서 발급기업 설문결과(255개사)

1) 원산지관리 수행여부

| 예 | 아니오 |
|-----------|----------|
| 221(86.7) | 34(13.3) |

2)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여부

| 예 | 아니오 |
|-----------|-----------|
| 144(56.5) | 111(43.5) |

3) 원산지증명서 미발급 사유

| 바이어미요청 | 특혜여부모름 | 원산지결정기준 이해부족 |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
|-----------|-----------------|-----------------|----------------|
| 102(40.0) | 15(5.9) | 14(5.5) | 13(5.1) |
| 혜택미미 | C/O발급절차의 어려움 | 기타 | 발급하고 있다 |
| 10(3.9) | 8(3.1) | 6(2.4) | 87(34.1) |

4) 협력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원산지확인서에 대한 신뢰도

| 매우 그러함 | 그러함 | 보통 | 그렇지 않음 | 전혀 그렇지 않음 |
|---------|----------|-----------|---------|-----------|
| 16(6.3) | 68(26.7) | 154(60.4) | 16(6.3) | 1(0.4) |

5) 협력업체의 원산지관리체계 명확도

| 매우 그러함 | 그러함 | 보통 | 그렇지 않음 | 전혀 그렇지 않음 |
|--------|----------|-----------|----------|-----------|
| 9(3.5) | 50(10.6) | 128(50.2) | 59(23.1) | 9(3.5) |

6) 협력업체의 원산지확인서 발급 비협조 정도

| 매우 그러함 | 그러함 | 보통 | 그렇지 않음 | 전혀 그렇지 않음 |
|---------|----------|-----------|----------|-----------|
| 19(7.5) | 64(25.1) | 102(40.0) | 60(23.5) | 10(3.9) |

7) 협력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원산지확인서에 대한 검증 필요성

| 매우 그러함 | 그러함 | 보통 | 그렇지 않음 | 전혀 그렇지 않음 |
|---------|----------|-----------|----------|-----------|
| 18(7.1) | 66(25.9) | 107(42.0) | 52(20.4) | 12(4.7) |

8)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는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인지여부

| 예 | 아니오 |
|----------|-----------|
| 26(10.2) | 229(89.8) |

9) 협력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원산지확인서를 근거로 C/O 발급시 어려움

| 내용에 대한 불신 | 내용검증에 대한 비협조 | 원산지관리에 대한 불신 | 어려움 없음 | 기타 |
|-----------|--------------|--------------|----------|---------|
| 23(9.0) | 104(40.8) | 23(9.0) | 90(35.3) | 15(5.9) |

10) 원산지확인서 공인인증제도 도입 필요성

| 매우 그러함 | 그러함 | 보통 | 그렇지 않음 | 전혀 그렇지 않음 |
|---------|-----------|-----------|----------|-----------|
| 19(7.5) | 103(40.4) | 102(40.0) | 26(10.2) | 5(2.0) |

11) 원산지확인서 공인인증제도 이용 여부

| 매우 그러함 | 그러함 | 보통 | 그렇지 않음 | 전혀 그렇지 않음 |
|---------|-----------|-----------|---------|-----------|
| 18(7.1) | 107(42.0) | 103(40.4) | 20(7.8) | 7(2.7) |

12) 원산지확인서 공인인증제도 이용시 이용료 부담의지

| 매우 그러함 | 그러함 | 보통 | 그렇지 않음 | 전혀 그렇지 않음 |
|--------|----------|-----------|----------|-----------|
| 3(1.2) | 30(11.8) | 122(47.8) | 79(31.0) | 21(8.2) |

13) 원산지확인서 공인인증제도의 공공기관 수행 필요성

| 매우 그러함 | 그러함 | 보통 | 그렇지 않음 | 전혀 그렇지 않음 |
|----------|-----------|----------|---------|-----------|
| 28(11.0) | 113(44.3) | 90(45.3) | 16(6.3) | 8(3.1) |

14) C/O오류로 인한 특혜관세취소시 수입자의 구상권 청구 가능성

| 매우 그러함 | 그러함 | 보통 | 그렇지 않음 | 전혀 그렇지 않음 |
|---------|----------|----------|----------|-----------|
| 19(7.5) | 95(37.3) | 92(36.1) | 43(16.9) | 6(2.4) |

15) C/O오류를 대비한 제3자 보증제도 도입 필요성

| 매우 그러함 | 그러함 | 보통 | 그렇지 않음 | 전혀 그렇지 않음 |
|---------|-----------|----------|----------|-----------|
| 25(9.8) | 104(40.8) | 89(34.9) | 31(12.2) | 6(2.4) |

16) C/O오류를 대비한 제3자 보증제도 도입시 이용 여부

| 매우 그러함 | 그러함 | 보통 | 그렇지 않음 | 전혀 그렇지 않음 |
|---------|----------|-----------|----------|-----------|
| 22(8.6) | 86(33.7) | 113(44.3) | 27(10.6) | 7(2.7) |

17) C/O오류를 대비한 제3자 보증제도의 공공기관 수행 필요성

| 매우 그러함 | 그러함 | 보통 | 그렇지 않음 | 전혀 그렇지 않음 |
|----------|-----------|----------|---------|-----------|
| 27(10.6) | 121(47.5) | 85(33.3) | 17(6.7) | 5(2.0) |

3. 설문대상별 공통문항 설문결과 비교

1) 원산지관리 수행여부

| 구 분 | 예 | 아니오 |
|---------|-----------|----------|
| 증명서발급기업 | 221(86.7) | 34(13.3) |
| 확인서발급기업 | 169(67.6) | 81(32.4) |

2)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여부

| 구 분 | 예 | 아니오 |
|---------|-----------|-----------|
| 증명서발급기업 | 144(56.5) | 111(43.5) |
| 확인서발급기업 | 95(38.0) | 155(62.0) |

3)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는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인지여부

| 구 분 | 예 | 아니오 |
|---------|----------|-----------|
| 증명서발급기업 | 26(10.2) | 229(89.8) |
| 확인서발급기업 | 29(11.6) | 221(88.4) |

4) 원산지확인서 공인인증제도 도입 필요성

| 구 분 | 매우 그러함 | 그러함 | 보통 | 그렇지 않음 | 전혀 그렇지 않음 |
|---------|--------------|--------------|---------------|---------------|-----------------|
| | 증명서발급기업 | 19 (7.5) | 103 (40.4) | 102 (40.0) | 26 (10.2) |
| 확인서발급기업 | 27 (10.8) | 95 (38.0) | 96 (38.4) | 30 (12.0) | 2 (0.8) |

5) 원산지확인서 공인인증제도 이용 여부

| 구 분 | 매우 그러함 | 그러함 | 보통 | 그렇지 않음 | 전혀 그렇지 않음 |
|---------|-------------|--------------|---------------|---------------|-----------------|
| | 증명서발급기업 | 18 (7.1) | 107 (42.0) | 103 (40.4) | 20 (7.8) |
| 확인서발급기업 | 21 (8.4) | 84 (33.6) | 112 (44.8) | 28 (11.2) | 5 (2.0) |

6) 원산지확인서 공인인증제도 이용시 이용료 부담의지

| 구 분 | 매우 그러함 | 그러함 | 보통 | 그렇지 않음 | 전혀 그렇지 않음 |
|---------|-------------|--------------|---------------|---------------|-----------------|
| | 증명서발급기업 | 3 (1.2) | 30 (11.8) | 112 (47.8) | 79 (31.0) |
| 확인서발급기업 | 10 (4.0) | 50 (20.0) | 104 (41.6) | 69 (27.6) | 17 (6.8) |

7) 원산지확인서 공인인증제도의 공공기관 수행 필요성

| 구 분 | 매우 그러함 | 그러함 | 보통 | 그렇지 않음 | 전혀 그렇지 않음 |
|---------|--------------|---------------|---------------|--------------|--------------|
| 증명서발급기업 | 28 (11.0) | 113 (44.3) | 90 (45.3) | 16 (6.3) | 8 (3.1) |
| 확인서발급기업 | 25 (10.0) | 88 (35.2) | 103 (41.2) | 27 (10.8) | 7 (2.8) |

8) C/O오류를 대비한 제3자 보증제도 도입 필요성

| 구 분 | 매우 그러함 | 그러함 | 보통 | 그렇지 않음 | 전혀 그렇지 않음 |
|---------|-------------|---------------|---------------|--------------|--------------|
| 증명서발급기업 | 25 (9.8) | 104 (40.8) | 89 (34.9) | 31 (12.2) | 6 (2.4) |
| 확인서발급기업 | 24 (9.6) | 109 (43.6) | 106 (42.4) | 8 (3.2) | 3 (1.2) |

9) C/O오류를 대비한 제3자 보증제도 도입시 이용 여부

| 구 분 | 매우 그러함 | 그러함 | 보통 | 그렇지 않음 | 전혀 그렇지 않음 |
|---------|-------------|--------------|---------------|--------------|--------------|
| 증명서발급기업 | 22 (8.6) | 86 (33.7) | 113 (44.3) | 27 (10.6) | 7 (2.7) |
| 확인서발급기업 | 17 (6.8) | 88 (35.2) | 128 (51.2) | 13 (5.2) | 4 (1.6) |

10. C/O오류를 대비한 제3자 보증제도의 공공기관 수행 필요성

| 구 분 | 매우 그러함 | 그러함 | 보통 | 그렇지 않음 | 전혀 그렇지 않음 |
|---------|--------------|---------------|--------------|-------------|--------------|
| 증명서발급기업 | 27 (10.6) | 121 (47.5) | 85 (33.3) | 17 (6.7) | 5 (2.0) |
| 확인서발급기업 | 27 (10.8) | 113 (45.2) | 93 (37.2) | 12 (4.8) | 5 (2.0) |

제3절 원산지증명서 유통저해요인 및 해결방안

1. 유통저해요인 검토⁹⁾

FTA를 체결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상품무역의 경우 FTA를 이용한 수출의 확대가 가장 큰 관심사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수출에서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이 용이해야 하고, 수입국에서의 특혜관세 적용이후 검증과 관련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이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보면 먼저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소소한 문제점들이 적지 않으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원산지확인서 발급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의 해소다. 국내에서 조달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물품을 생산·수출한 자가 원활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자율발급하려면 원자재 공급자로부터 원산지확인서를 제출받아 이를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에 관해서는 어떤 규정도 두지 않고¹⁰⁾ 다만 정확하지 아니한 원산지증빙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만 두고 있다. 그러나 원재료 공급자가 굳이 원산지확인서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충분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출자(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데 애로가 발생하고, 수출에서 FTA 활용에서도 제약요소로 작용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한편, 수출물품에 대한 수입국 관세당국의 심사(검증)에서 특혜가 배제될 경우 적용된 특혜관세 부분의 추징 등과 관련해 수입자와 수출자간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수출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원산지증명의 오류를 이유로 한 ‘특혜배제’라는 위험발생에 따른 피해를 제도적으로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법적·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지원은 크게 미흡한 상태다.

2. 유통저해요인 해결방안¹¹⁾

9) 정재완, “FTA 이행관리에서 제기되는 문제점과 그 보완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관세학회 학술발표회 발표논문, 2012년 8월, p.12

10)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8조)상 약간의 세제상 혜택 부여만이 규정되어 있다.

11) 정재완, “FTA 이행관리에서 제기되는 문제점과 그 보완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관세학회 학술발표회 발표논문, 2012년 8월, pp.15~17.

1) 원산지확인서 발급제도의 개선

수출에서 FTA 활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원산지증명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이다.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는 수출자가 직접 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와 국내에서 조달하는 경우로 구분되는데, 대기업은 약 12%, 중소기업은 약 8% 내외의 원재료를 국내에서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¹²⁾ 국산원재료를 사용한 물품을 수출한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물품의 공급자로부터 원산지확인서의 입수가 필수적이다.

한편, 물품 수출자가 관세환급을 받으려면 원재료 공급자로부터 양도세액증명서¹³⁾를 받아야 하는데, 이 시스템은 원산지증명서 발급과정보다 다소 복잡하지만 유사한 절차로 진행된다. 양자의 공통점은 수출용원재료 공급자가 일정한 증빙서류를 물품 구매자(생산/수출자)에게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고, 차이점은 양도세액증명서는 물품의 구매자가 먼저 수출용원재료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인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물품공급자에게 제공해 주어야 하며, 양도세액증명서에 표시된 양도세액을 물품공급자에게 지급함이 원칙¹⁴⁾이지만 원산지확인서는 구매자가 어떤 증빙서류를 물품공급자에게 제공해 주지 않아도 되고, 원산지 확인서에 대한 어떠한 금전적 대가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양도세액의 환급이라는 유인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태를 보면 양도세액증명서가 수출용원재료의 공급자와 구매자간 교부가 원활하지 않아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적지 않은 바(정재완 ; 2011.5.), 원산지확인서의 경우는 이와같은 유인책이 없는 반면 원재료 공급업체에게는 원가공개, 제조기법 유출, 원산지검증시의 사후책임 등 부담이 주어지므로 원산지확인서 제공을 기피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와 관련해 원산지확인서 제공을 법령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된 바 있으나¹⁵⁾ 의무화하더라도 행정관청이 일일이 확인하여 규율할 수는 없는 문제가 있다.

현재 FTA 원산지증명과 관련한 원산지확인서 발급자에게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30만원을 한도로 부가가치세를 세액공제 하고 있지만¹⁶⁾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

12) 정재완, 적정한 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행정 개선방안(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p.50

13) 양도세액증명서에는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분할증명서가 있다.

14) 이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며, 양도세액을 물품대금에 포함하거나, 별도 지급할 수도 있다.

15) 관세청, 'FTA 관세행정 종합대책'(2010.7.), p.16 참조.

16)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8(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이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재화를 공급하고, 그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 및 FTA관세법령에 따른 원산지확인서를 그 수출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2013년 12월 31일까지 발급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확인서 발급 건수에 따라 30만원을 한도로 부가가치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대상 원산지확인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른 공급가액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출재화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 한정된다.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양도세액과 원재료 원산지확인에 필요한 증명을 세관이 통합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런 시스템이 마련될 경우 관세환급과 원산지 확인업무가 대폭 간소화되고 나아가 수출하고도 환급을 못 받거나, 수출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가 없어 FTA 상대국에서 특혜관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크게 줄어 수출물품의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 FTA 원산지증명 수출보험제도의 도입

FTA를 활용한 수출의 경우 협정상대국에서 관세상 특혜를 받아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각국이 FTA를 확대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도 가격경쟁력 확보를 통한 수출증대를 위해서다. 그러나 수출에서 FTA 협정관세가 적용되지만 수입국 관세당국의 사후 원산지검증에서 여러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이 부인되면 그로 인한 책임이 원산지증명서를 제공한 수출자에게 귀착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무역계약에서도 수입자측의 요구에 따라 원산지증명으로 발생하는 피해의 책임을 수출자가 진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수입국 관세당국이 원산지검증과 관련해 협정관세 적용을 부인하게 되는 요인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를 수출업체가 전적으로 책임지기는 부담스러운 점이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수출보험 개발을 통해 수출자의 원산지증명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것이 수출에서의 FTA 활용도 제고에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수출보험은 한국무역보험공사¹⁷⁾가 중장기수출보험 등 13개의 보험제도, 2개의 보증제도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¹⁸⁾ 수입자의 계약 파기, 파산, 대금지급지연 또는 거절 등의 신용위험¹⁹⁾과 수입국에서의 전쟁, 내란 또는 환거래 제한 등의 비상위험²⁰⁾ 등으로 수출자 또는 수출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다. 원산지증명과 관련해 발생하는 위험을 수출보험으로 다룰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수출보험과 성격이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다소의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보여지나, 위험발생의 원인

17)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우리나라 '수출·수입보험제도'를 전담·운영하는 무자본 특수법인인 정부출연기관으로 무역보험법 제37조에 근거하여 1992년도에 설립되었다. 무역보험 지원실적을 보면 2008년 130조원, 2009년 165조원, 2010년 187조원, 2011년 192조원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인다.

18) <http://www.ksure.or.kr/trade/export/Export01.jsp> 참조. 2012.8.6.방문.

19) 수입자에 관련된 위험으로 수입자 또는 L/C 개설은행의 파산, 지급불능, 지급거절, 지급지체 등으로 인한 수출대금 미회수위험을 말한다.

20) 수입국에 관련된 위험으로 전쟁, 내란, 혁명, 환거래제한 또는 모라토리움 선언 등으로 수출불능 또는 수출대금 회수불능위험을 말한다.

이나 보험의 효과, 무역현황과 FTA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FTA 원산지증명과 관련된 수출보험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만일 이와같은 수출보험이 있을 경우 수출자는 안심하고 수출물품에 대한 FTA 적극적인 활용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제4장 수출위험 분산 및 수출지원제도 검토

제1절 수출위험의 개념 및 유형

1. 수출위험의 개념

일반적으로 국제상거래는 한 기업이 국경을 넘어서 시장구조, 언어, 풍습, 매매습관, 법체계, 국가주권, 통화제도, 정부규제, 경제정책 등의 기업환경이 서로 상이한 국가에 거주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특정상품을 인도하고 이에 대한 상품대금을 지급받는 매매행위라 할 수 있다.²¹⁾

국제상거래는 기본적으로 상거래라는 측면에서는 국내거래와 차이가 없으나, 무역계약의 체결에서부터 물품의 인도와 대금결제까지 국내거래에 비하여 거리가 멀고, 거래당사자들 간에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은 위험성을 내포한다.²²⁾

국내기업이 수출기업으로 변신하게 되면 국내경영환경과는 이질적인 수출환경에 직면하게 되고 이에 따라 국내거래에서는 발생하지 않은 새로운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기업이 수출활동을 전개함에 따라 새로 조성되는 위험이 바로 수출위험이다.

수출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출위험은 수입국의 환경변화와 수입기업의 재무상태의 악화로 인해 수출미수금이 발생할 수 있고, 이때 수출기업이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됨을 의미하며,²³⁾ 이외에도 이국간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수출위험이 존재한다.

특히, 최근 FTA가 활성화됨으로써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발급하거나 수취하게 되는 원산지증명서 오류로 인해 특혜관세 적용 취소 또는 수입자에 대한 특혜관세 보상 위험이 새로운 형태의 수출위험으로 대두되고 있다.

2. 수출위험의 유형

수출위험은 수출기업이 수출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의 일부분이며, 수

21) 이희숙, “한국 수출기업의 결제리스크 관리에 관한 실증연구”, 동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년, p.6.

22) A.G.Guest, et al., *Benjamin's Sale of Goods*, 4th ed., Sweet&Maxwell, 1992, p.917.

23) 구종순, “한국기업의 수출위험관리에 관한 실증적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년, pp.70~71.

출활동에서 발생하는 다른 위험과 중복될 수 있다. 또한 수출위험은 수출환경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정치적 비상위험, 신용위험, 환위험, 운송위험으로 구성되는 개별 위험을 집합한 복합적 위험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수출거래가 FTA활용 거래로 이루어질 경우 상기의 전통적 수출위험에 더해 FTA특혜원산지증명서 위험도 포함되게 된다.

1) 정치적 비상위험(political risk)

수출입거래에서의 비상이험이란 수입국에서 수입금지 또는 제한조치, 외국에서의 전쟁, 내란, 혁명, 폭동, 파업과 같은 비상사태 등 수출입계약 당사자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수출이 불가능하거나 수출대금의 회수가 불가능해지거나 또는 해당국의 송금제한 조치로 인해 수출한 물품대금의 회수가 불가능해짐으로써 수출자, 수출품 생산업자 또는 이들에게 용자를 해준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손실의 위험을 말한다.²⁴⁾

2) 신용위험(credit risk)

무역결제위험 중에서 신용위험(credit risk)은 수입상 또는 지급인의 신용상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수출상이 입는 경제적 손실의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며, 수출상이 직면하는 가장 대표적인 위험이다.²⁵⁾

구체적으로는 수출계약체결, 신용장도래, 운송, 매입 및 선적서류송부, 대금회수, 클레임처리의 수출과정 등 수출대금회수 단계에서 수입기업의 일방적 사유에 기인하여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리스크를 말한다. 신용위험은 수출대금회수불능, 수출대금지급거절 등으로 구성되며 기회비용의 발생, 수출대금상실과 같은 손실을 발생시킨다.²⁶⁾

3) 환위험(exchange risk)

환위험은 환 노출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의미한다.²⁷⁾ 환위험을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예기치 못했던 환율의 변동으로 인해 현재 가치로 표시되는 기업의

24) 송채헌 외 3인, 『무역보험론』, 삼영사, 2009년, p.58.

25) 박세훈, “수출대금결제에서 신용위험의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년, p.38.

26) 김용호,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신용리스크 관리성과 측정에 관한 연구”, 『수출보험』 통권 70호, 한국무역보험공사, 1995년 3월, p.16.

27) 이흥로, “한국 중소기업 수출기업의 수출위험관리에 관한 실증연구”, 한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년, p.16.

미래 기대현금흐름에 변동을 초래하게 되는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²⁸⁾

환위험은 그 성격에 따라 거래적 환위험, 경제적 환위험 및 환산 환위험으로 구분될 수 있다.²⁹⁾ 거래적 환위험(transaction exchange risk)은 외환거래에서 거래시점과 결제시점의 사이에 환율의 변동으로 인해 환차손이 발생할 가능성을 말한다. 경제적 환위험(economic exchange risk)은 환율변동의 총영향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파악한 것으로, 예상하지 못한 환율변동으로 인해 현가로 표시된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을 의미한다. 환산 환위험은 외화표시 자산, 부채 등의 환산 시나 해외기업의 재무제표를 본사의 재무제표와 통합하기 위해 내국통화로 환산하는 경우 일어나는 환율변동위험을 말한다.

4) 운송위험(transportation risk)

운송위험은 상품이 수출지를 떠나 수입업자에게 인도되는 동안의 위험을 말한다. 적화보험에서 일반적으로 부보되는 위험으로 운송하는 수단에 따라 해상위험과 항공위험, 육상위험, 창고위험 등으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무역에서의 해상운송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들 운송방식의 일체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해상운송을 사용한다.³⁰⁾

5) FTA특혜원산지증명서 위험

수출입거래가 FTA를 활용하여 이루어질 경우 필수적으로 원산지증명서가 동반되게 되는데, 제공되거나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가 오류로 밝혀질 경우 특혜관세가 취소되게 된다.

이때 수입자의 경우 관세의 납부로 인한 금전적 부담이 발생하게 되며 수출자는 수입자와의 거래관계 단절 또는 특혜관세 취소액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제2절 수출지원제도의 개념적 정의

수출지원제도의 개념적 정의를 살펴보면 수출지원제도는 마케팅 능력이 부족하고

28) 이희숙, “한국 수출기업의 결제리스크 관리에 관한 실증연구”, 동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년, p.12.

29) 구종순, “수출위험관리에 관한 연구”, 『경영논집』 제5권 제1호, 충남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1989년 6월, p.148.

30) 송채현 외 3인, 『무역보험론』, 삼영사, 2009년, p.61.

수출전문 영업 인력이 부족하여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고서도 해외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기관이나 무역유관기관에서 시행하는 제도를 말한다.³¹⁾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수출의 활성화가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여기며 기업들의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수출지원제도를 실행해 왔다. 이런 수출지원제도를 통해 우리나라도 수출 중심의 경제체제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이 시기의 수출지원제도는 대기업을 우선순위로 지원했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그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현대 사회로 접어들면서 중소기업의 역할이 강화되고 그 위상 또한 높아져서 요즘은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지원제도가 많이 만들어졌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제도는 수출활동지원제도와 해외시장 개발제도로 구성되고, 수출지원제도의 의도에 따라 수출기본업무에 대한 설명회, 세미나 등의 정보적 지식(informational knowledge)지원과 해외박람회 참가 및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등의 경험적 지식(experiential knowledge) 지원 등으로 구별되기도 한다.³²⁾

또한 수출지원제도는 내수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과 관련된 제도, 기존 중소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한 지원제도, 그리고 국내외 수출인프라지원 등으로도 구별될 수 있다. 또한 지원지역 기준에 의하면 국내 지원제도와 현지 지원제도로 구별되며, 지원자원의 특성에 따라 인적지원제도와 물적 지원제도 등으로 구별해 볼 수 있다.³³⁾

제3절 수출지원제도 현황

1. 우리나라의 수출지원제도

1) 정부기관

31) 김은영,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의 활용 및 수출성과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년, pp.19~72.

32) M.Kotabe, Czinkota M.R(1992), “State Government Promotion of Manufacturing Exports : A Gap Analysi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Vol.23. No.4, pp.637~659.

33) 김인호, “지역중소제조기업 수출지원정책의 효과에 관한 연구”, 『1998년 지역경제진흥 연구보고서』, 안양시, 1998년, p.126.

①중소기업청(SMBA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사업** : 창업초기 및 내수위주 중소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수출 초기단계부터 지원하여 자체 수출역량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수출실무교육, 디자인 개발지원, 해외시장 정보제공 및 홍보지원 수출마케팅 지원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 **중소기업 무역축진단 파견사업** : 전문 업종을 중심으로 해외 유명 박람회, 전시회 참가 및 해외시장개척단을 구성, 파견하여 구매력 있는 바이어를 효과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써 단체 해외 전시회 참가 및 시장개척단 활동 시 부스임차료 및 부스장치비, 전시물품 운송료 등의 공동경비를 지원하는 사업
- **해외 민간네트워크 활용사업** : 주요 수출지역에 신뢰성과 전문능력이 있는 민간기관을 해외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인력 및 정보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중소벤처기업 중 250여개 업체를 선정하여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해외시장 조사, 협력 파트너 발굴, 계약 성사 등 컨설팅 서비스 제공
- **수출중소기업 글로벌 브랜드 육성** : 가격 및 품질경쟁력은 갖추고 있으나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수출중소기업제품을 글로벌 브랜드로 육성하여 수출의 고부가가치화를 지향하는 사업으로 매출액 300억원 또는 수출실적 50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브랜드 전문기관을 통해 컨설팅에 따라 해외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고유브랜드를 개발하고 개발된 브랜드의 해외마케팅 지원
- **수출인큐베이터 설치** : 수출대행기관을 활용한 수출한계를 극복하고 중소기업의 독자적 수출능력 배양을 위하여 미국, 중국 등 주요 교역거점과 BRICs, 중동 등 신흥시장에 수출인큐베이터를 설치, 운영하는 사업으로 현지마케팅 고문, 법률, 회계고문을 활용한 자문 제공 및 현지수출거점으로 활용 가능한 사무공간 제공, 현지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통합물류서비스 제공, 중소기업에서 출장직원의 비즈니스 편의제공을 수출인큐베이터를 통해 실시
-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 : L/C개설, 원자재 구매, 자금지원 등 수출요건을 갖추고도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인증마크가 없어 수출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대

하여 하이규격인증획득을 지원하는 제도

- **온라인 수출지원** : 중소기업 전문 무역 사이트인 고비즈 코리아를 활용하여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을 지원하여 수출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제조업 또는 지식, 정보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실시
- **글로벌전략품목 수출컨소시엄 지원사업** : 중소기업 글로벌전략품목 육성을 위해 글로벌 전략품목 생산업체로 구성된 수출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해외시장개척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 :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 수출유관기관의 우대지원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수출 유망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제도

② 지식경제부(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국가차원의 정책적 관점에서 무역투자, 산업기술 개발 및 기반구축, 국가 균형발전, 상공,에너지 및 자원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며 사업과 전문기관을 통한 각종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06년도에는 ‘희망 한국, 세계 산업 4강, 무역 8강 실현’이라는 비전하에 5대 정책과제를 실시하였는데, 그 중에는 기업경영 글로벌화 촉진을 위한 과제도 포함되었다.

수출지원 주요사업은 무역, 투자 부분에 치중되어 있고 수출보험기금관련 지원, 무역기반 조성, 외국인투자 유치, 국제 산업기술협력, 무역, 투자기관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수출유관기관

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Korea Trade and Investment Promotion Agency)

-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지원제도** : 해외지사화 지원제도는 101개 해외 KBC(Korea Business Center)가 해외시장 정보수집과 마케팅 능력이 취약한 수출기업의 해외지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며 해외시장조사, 수출거래선 발굴에서 거래성사단계에 이르기까지 원활한 수출지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 판로 개척활동을 1:1로 밀착지원하는 사업

-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제도** : 해외전시회 지원제도는 중소기업들이 해외 유명 전시회에 참가하여 구매력 있는 바이어를 효과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는 사업
- **해외시장조사 지원사업** : 해외시장조사 지원제도는 고객(개인, 업체, 단체 및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바이어 발굴, 시장동향 조사 등을 의뢰하면 KOTRA 해외KBC를 통해 조사를 대행해주는 유료 정보서비스로 지자체의 지원금을 받아 신청하는 지원사업
- **무역시절단 지원사업** : KOTRA에서 지방자치단체나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관내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세일즈단을 구성하여 파견하고, KOTRA 코리아비즈니스센터에서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상담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업체의 수출진흥을 지원하는 서비스
- **무역정보제공** : 중소기업의 상품을 홍보책자에 광고로 게재하여 해외전시회 및 무역 유관기관에 배포함으로써 해외바이어에게 문의가 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

②중소기업진흥공단(SBC : Small Business Cooperation)

- **수출인큐베이터** : 해외에 지사나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게 설립초기의 위험을 경감하고 조기정착이 가능하도록 하며, 중소기업 스스로 해외마케팅 수행능력을 배양하여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
- **해외전시회** : 세계 유명 전시회에 한국관을 구성하여 참가하거나 해외 전략시장에서 한국 단독 전시회 개최를 통해 국내기업의 해외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
- **무역시절단**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에서 지방자치단체나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역시절단을 구성하여 파견하고, KOTRA의 KBC 또는 해외민간네트워크에서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상담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업체의 수출진흥을 지원하는 제도
- **수출상담회** : 지방자치단체나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한국 상품의 구매를 희망하는 해외바이어를 유치하여 국내 업체와 수출상담의 기회를 제공, 국내 업체들에게 해외바이어와의 수출상담을 통해 수출 증대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

③한국무역협회(KITA :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 해외 바이어 유치와 회원사에게 거래알선의 기회를 제공하고 관광, 물류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제규모의 전문 전시회를 개발/육성하고 해외 전시회 참가를 위한 토달 서비스
- **KOMPASS 업체리스트** : 한국무역협회 회원사의 독자적인 해외 마케팅 지원을 위해 전세계 최대의 기업정보 서비스업체인 KOMPASS 해외 바이어 정보를 한국 무역협회 회원사에게 무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
- **무역아카데미 무역실무 교육지원** :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강화를 위해 해외 비즈니스 노하우와 세계 100여개 무역관 네트워크로부터 수집되는 정보역량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제공

④대한상공회의소(KCCI : Korea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국제협력팀을 통해 무역거래 알선, 무역관련 증명서 발급, 경제 및 통상사절단 파견과 영접, 민간경제협력 위원회 설치와 운영을 담당

⑤중소기업중앙회(KFSB : Korea Federation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중소기업중앙회는 무역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해결하며, 중소기업 관련 각종 국제 전시회의 참가, 해외투자사절단 및 시장개척단 파견 그리고 수출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외마케팅을 지원

⑥한국산업기술재단(KOTEF : Korea Industrial Technology Foundation)

기술혁신 주체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 우수 기술인력 양성, 국가 산업기술정책 첨단 산업기술 분야 정책방향 제시, 선진 산업기술정보 제공, 국제적 기술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수행

3) 금융기관

①한국수출입은행(EXIM : Export-Import Bank of Korea)

한국수출입은행은 수출입과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하여

대외 경제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수출촉진 지원, 개도국 경제 협력 증진, 통일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지원 서비스로는 컨설팅 서비스, 수출지원봉사단, 국제개발사업 상담과 해외투자 통계 및 정보를 제공

②한국무역보험공사(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 **수출신용보증제도** : 담보력이 취약한 수출기업이 원활하게 수출금융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선적 전³⁴⁾과 선적 후³⁵⁾ 신용보증 제도로 구분하여 운영
- **수탁보증제도** :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신용보증 이용편의를 위해 수출자의 거래은행에서 보증서 발급관련 실무업무를 위임하는 수탁보증업무를 전 금융기관은 물론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수출유관기관으로까지 확대, 시행하는 등 중소기업의 수출보험 이용편의성 제고 및 중소기업 지원기반을 강화한 제도
- **해외마케팅 보증제도** : 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척 관련 소요자금에 대한 보증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중소기업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중소수출기업들의 해외시장개척 활동, 수출상품 해외홍보 활동, 해외기술 및 규격인증 취득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리서치 기능** : 산업 및 수출동향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정보력 향상을 위해 국가별 상세 정보제공, 환율, 유가, 산업분석 등 수출관련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여 중소수출기업들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 **중소기업 환변동 보험료 지원** : 무역협회와 업무협조를 통해 무역협회 회원사 중 전년도 수출실적 2천만불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변동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

34)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은 외국환은행이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함에 따라 채무자가 은행에 대해 부담하게 되는 상환채무를 제조 및 원자재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원활히 수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개별보증과 회전보증의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35) 선적 후 수출신용보증은 공사가 발행한 수출신용보증서를 수출자가 외국환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수출물품을 선적한 후 선적서류 매입을 통해 수출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후 수입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수출자가 은행에 대해 부담하게 되는 상환채무를 연대보증인으로서 공사가 대지급하는 제도이다.

- **해외 미회수채권 회수대행 사업** : 수출 또는 기타 대외거래에서 발생한 수출자 등의 대외채권에 대해 수출자 등 채권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채권회수를 대행

③신용보증기금(Korea Credit Guarantee Fund)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의 금융지원을 위한 신용보증과 기업신용정보관리 서비스를 실시한다. 기관의 주요업무로 신용보증, 신용보험, SOC(Social Overhead Capital)보증, 기업 경영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무역보증제도도 실시

2. 주요국의 수출지원제도

1) 일본

(1) 정부부처 및 준정부적 공공기관

①중소기업청(SMEA : Small and Medium Enterprise Agency)

『중소기업지원혁신지원법』에 근거하여 경영혁신 지원수단의 고안과 개발,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지원을 담당하고, 지정 산업을 선정하여 그 산업의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나 다른 요인으로 타격을 받을 경우 해당 부처의 승인을 받아 지원하고 있다.

②일본무역진흥협회(JETRO : Japan External Trade Organization)

JETRO의 주요 사업은 외국기업유치지원, 일본기업의 수출지원, 일본과 외국기업간의 협력 지원, 지역별 국제화·경제활성화 지원, 해외 경제정보 및 무역·투자정보 제공, 경제파트너십 협정(EPA)에 관한 협력사업 등이다.

JETRO가 운영하는 인터넷 DB에 등록된 정보들은 폭넓은 기업네트워크 및 전략적 제휴의 기회를 제공하며, 중소기업청의 전문가들은 실무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컨설팅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일본 상표진흥 프로젝트’를 통해 시장개발 지원과 시장조사, 전문가 초빙, 디자인 및 신제품 평가,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을 실시한다.

③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Organization for Small & Medium Enterprises and Regional Innovation)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의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 창업 및 신사업 촉진 : 전문가의 파견과 사업화의 조성지원, 비즈니스 매칭 지원, 인큐베이션 지원, 펀드 출자를 통한 지원, 민간 지원기관을 통한 지원
- 경영기반의 강화 : 중소기업 대학교를 통한 인재육성 지원, 원스톱 상담 지원, J-네트 및 세미나 등에 의한 정보지원, 효과적인 시설 활성화 지원, 중심 시가지 상업 집적을 위한 지역 활성화 지원
- 경영환경 변화에의 대응 : 중소기업 재생을 위한 과제지원, 공제 서비스 관리

(2) 민간기관

①국제사회공헌센터(Action for a Better International Community)

국제사회공헌센터의 주요 업무는 지자체의 국제교류 협력, 중소기업 비즈니스 지원, 외국기업의 대일 비즈니스 지원, 재일유학생 지원, 국제행사 지원 등이 있다.

②일본상공회의소(Jap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일본상공회의소의 주요 업무는 전국 지방 상공회의소의 제휴에 기초하여 정책제언, 중소기업 진흥, 지역진흥, 국제교류, 산업진흥, 정보화 촉진, 검정시험 등이 있다.

③전국상공연합회(Central Federation of Societies of Commerce and Industry)

수출과 관련된 주요 사업으로는 외국인 연수생 기능실습제도를 실시하여 인력, 교육 훈련을 지원하고 소규모 기업 해외진출사업도 수행한다.

④해외무역개발협회(Japan Overseas Development Corporation)

주요 역할은 일본 민간기업 및 단체의 협력을 얻어 개발도상국의 경제 개발에 기여하는 것을 골자로 '사업기술 향상 지원 전문가 파견사업'과 일본 중소기업의 국제화 전개를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전문가 파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⑤해외기술자연수협회(Association for Overseas Technical Scholarship)

주요업무로는 해외 산업기술 연수자들을 받아들이는 것과 해외산업 기술 연수자의 연수 및 이와 관련된 시설의 관리·운영 등이 있다.

⑥해외직업훈련협회(Overseas Vocational Training Association)

주요사업으로는 국제화된 인재의 양성, 외국인을 위한 일본어 연수, 외국인 직업훈련 교재의 개발 및 제공, 인재양성 정보의 제공, 인재양성에 관한 국제협력이 있다.

(3) 금융기관

①국제협력은행(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국제협력은행은 일본의 수출입과 해외경제 활동의 촉진, 국제금융질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대부 등과 함께 개발도상국의 경제 및 사회 개발과 경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대부도 실시하여, 일본과 국제사회의 건전한 경제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신금중앙금고(Shinkin Central Bank)

중소기업의 해외거래 및 신용기금의 창구로서 상담·정보제공을 하며 해외거점을 연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일반적인 상담·정보제공을 무료로 실시하나 강사파견, 전문적인 컨설팅 등은 유료 서비스로 시행하고 있다. 대체로 무역 및 투자에 관한 상담을 해외 진출시와 진출 후, 무역, 해외진출 및 무역에 관한 금융의 유형으로 나누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③일본무역보험(Nippon and Export and Investment Insurance)

무역보험에 관한 정보수집과 제공, 외국기업의 신용조사, 무역보험에 관한 제반의 협력 사업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외국과의 무역과 대외거래를 위한 건전한 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수출지원 사업으로는 무역보험에 관계된 정보수집 및 제공, 외국기업 및 바이어 신용조사 사업, 국가위험도 관련 조사사업 등이 있다.

④무역보험기구(JTRO : Japan Trade and Investment Insurance Organization)

일반수출보험, 수출대금보험, 수출어음보험, 수출보증보험, 중개무역보험, 해외투자보험, 해외사업자금대부보험 등을 인수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한다. 수출지원 사업으로는 해외투자보험, 무역일반보험, 중소기업 수출대금보험, 한도액 설정형 무역보험이 있다.

2) 미국

(1) 정부기관 및 준정부적 공공기관

①상무부(DOC : Department of Commerce)

상무부 산하 무역정보센터(TIC : Trade Information Center)와 같은 기구를 통해 해외진출 관련 종합정보를 제공, 중소기업의 신규 해외시장 발굴 및 접근과 개척을

지원한다. 그 외에도 중소기업청(SBA) 및 여타 중소기업 해외진출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미국 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고 있다.

②중소기업청(SBA :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중소기업청은 전체 10개의 지방청, 지방사무소, 출장소로 구성되어 중소기업청의 지원시책과 서비스의 전달창구이자, 중소기업과 직접 연계하여 각종 정보나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중소기업지원센터(Small Business Development Center), 중소기업투자주식회사(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y)등과 연계하여 재정, 기술, 관리, 정부조달업무, 재해구제, 교육훈련 등 중소기업 전반에 걸친 지원정책을 실시한다.

③무역대표부(USTR :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무역대표부는 무역협정을 맺기 위해 외국정부와 직접적으로 협상을 하고 무역분쟁 해결과 글로벌 무역정책조직 등에 참여하여 활동을 해오고 있다. 또한 양자 및 다자간 협상 시도와 법률 분석 및 정책조정 등에 참여하고 2002년에는 중소기업사무국을 설립하여 중소기업청과 함께 중소기업 문제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였다. 중소기업 사무국에서는 무역정책 분야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차별화된 수요를 실현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관세, 법률에 관계된 문제에 대한 중소기업에 있어서 중요한 무역과 관련된 문제를 지원한다.

④미국국제개발청(USAID : United States of Agency International Development)

독립적인 연방정부기관으로서 민간지원기관, 대학, 기업인, 국제 활동기구 등과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개도국과의 경제협력 관련 사업을 실행한다. 시장개방, 농업, 인프라 개발을 통해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해 자국의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여 개도국 개발원조 및 미국산 상품과 수출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민간기관

①국제무역협회(NFTC : National Foreign Council)

국제무역협회는 1914년에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한 세계교역체계 구축을 지지하는 미국기업들의 결의에 의해 설립된 단체로서, 현재는 300여개가 넘는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워싱턴과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US스틸과 같은 유력한 기업의 대표가 회장을 역임해 오고 있다. 자유역에 위반하는 정부의 조치에 대해 미국 기업들

을 대표하여 압력을 행사한다.

②국제무역연맹(FITA : Federation of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국제무역연맹은 1984년에 미국, 멕시코, 캐나다에 걸친 지역간 국제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미국의 각 주, 주요도시, 미국과 다른 국가간 450여개 무역협회, 상공회의소로 구성되어 있다. 무역, 화폐, 국제 조세 수입, 국제법, 무역장벽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③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

미국 상공회의소는 약 3억 개사의 기업체를 대표하는 세계 최대 기업연맹으로 91개 국가에 약 100개사의 상공회의소를 비롯하여 다양한 유형의 협회, 지역 상공회의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상공회의소는 300명 이상의 국내 최고의 정책 전문가, 로비스트,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뉴욕과 브뤼셀 사무소 등을 기반으로 활발한 사업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상공회의소 회원의 96%는 100명 미만의 종업원으로 구성된 중소기업이다.

(3) 금융기관 : 수출입은행(Exim Bank)

수출입은행은 공식적인 수출신용기관으로서 국내 상품과 서비스를 국제시장으로 수출하는데 사용되는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민간부문의 대출업자들과는 경쟁하지 않으며 무역금융에서 발생하는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수출금융상품을 제공한다. 또한 민간 부문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국가위험도 및 신용보증을 통해 수출업자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운전자금보증, 수출신용보험, 대출보증 및 직접대출 등의 금융상품을 제공하며 총 거래의 85%는 국내 소기업 지원과 관련되어 있다.

3) 캐나다

(1) 정부기관 및 출연기관

①캐나다산업부(Industry Canade)

1892년 설립된 캐나다산업부는 캐나다 투자환경 개선, 혁신성과 제고, 무역확대, 공정하고 효율적인 경쟁시장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업기술과 과학기술 연구, 통신통정책을 입안, 투자와 무역의 확대, 관광산업 진흥,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②캐나다국제무역기구(ITCan : International Trade Canada)

21세기 세계시장에서의 리더로 자리 잡기위해 캐나다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및 해외시장 확대 지원을 하는 기관이다. 캐나다의 무역 및 경제정책 조정, 외국과의 무역협정 협상 및 체결에 관한 업무와 함께 전 세계 140여 국가에 지사를 설립하여 해외시장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업무 등을 수행한다. 산하에 International Trade Canada's Market Research Centre를 두고 다양한 분야의 해외시장 분석을 통해 캐나다 기업의 해외진출을 기여하고 있다.

③캐나다통상공사(CCC : Canadian Commercial Corporation)

세계 제2차 대전 중 유럽으로 일용품을 수출하던 기업을 돕던 정부단체를 재정비하여 1946년에 새롭게 발족한 기관이다. 캐나다 기업들과 해외 바이어의 연결을 주선하고 있으며 특히 타 외국정부의 조달사업에 캐나다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선적전 수출자금지원 등 여러 가지 자금지원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④수출개발공사(EDC : Export Development Canada)

캐나다 기업들의 130여개 개발도상국과의 해외거래 및 해외투자에 따른 자금지원 등을 담당한다. 자금지원의 종류에는 신용보증, 채권보증, 수출보험 및 직접적인 대출 등이 포함된다.

(2) 민간기관 : Team Canada Inc.

연방정부, 주정부등과 연계하여 글로벌 시장진출을 준비하는 캐나다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마련하였다. 캐나다 최대의 정보원으로 수출 초기기업 혹은 경험이 많은 기업들에게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수단, 정보, 기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제반의 요소를 제공해 준다.

(3) 금융기관 : 캐나다기업개발은행(Canada Business Development Bank)

대출, 후순위 금융, 벤처자본제공과 전국 85개소 지사를 통해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을 제공한다.

4) 영국

(1) 정부기관 및 출연기관

①무역산업부(DTI : Department Trade and Industry)

무역산업부는 영국 경제 및 생산활동 분석을 통한 전략추진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고객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실시하여 서비스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관련 서비스 및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내부 인력의 활용만이 아니라 외부기업, 지원단체, 무역기관, 학계 등의 다양한 배경을 지닌 인력을 추가적으로 활용하여 서비스 이용자의 수요에 맞추도록 노력하고 있다. 영국 산업 및 무역정책의 핵심부서로서 광범위한 활동을 담당한다.

②중소기업지원청(SBS : Small Business Service)

무역산업부 산하의 기관으로서 창업 및 성장단계의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기업가 문화형성과 창업초기의 사업자들의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높은 수준의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소수인종, 여성기업가 혹은 영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 있는 기업들을 특별 지원한다. 중소기업서비스의 주요 전략은 기업문화 구축, 역동적인 창업시장 조성, 소기업 성장역량 증진, 중소기업 금융서비스 지원, 취약단체들에 대한 기업화지원, 규정 및 정책 개발, 다양한 정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③무역투자청(UKTI : United Kingdom of Trade and Investment)

무역투자청은 영국에서 기업 투자를 실행하는 것을 지원하는 정부기관으로 매년 첨단 신생 기업들의 산업의 리더로 성장하는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웹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사업가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민간기관

①영국경제인연합회(CBI : Confederation of British Industry's)

주로 영국의 주요산업, 경기동향에 관한 정보 및 영국정부 및 각 정당의 주요 경제 정책에 대한 견해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전국 13개 지역위원회가 마련되어 있는데 각 지역위원회별로 해당 지역내 기업에게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다.

②영국상공회의소(BCC : British Chamber of Commerce)

주요활동으로는 경기동향, 경제정책에 대한 상공회의소 입장, 상의가 주관하는 주요 컨퍼런스 행사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3) 금융기관 : 수출신용보증국(ECGD : Export Credits Guarantee Department)

영국내 공식적인 신용보증기관으로 1991년 ‘수출 및 투자 보증법’에 근거하여 설립하였다. 수출업자, 은행, 구매업자, 프로젝트 후원자들과 공동으로 작업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본재 및 프로젝트 기반 상품 및 서비스가 해외에서 성공적으로 투자 사업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수출에 대해서도 지원하는데 ‘신고객서비스팀’이 수출금융 및 보험과 관련해서 일정조건하에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부분의 기업을 지원한다.

5) 독일

(1) 정부기관 및 준정부공공기관

①연방경제부(BMWi : Bundesfinanzministerium)

연방경제부는 중소기업의 성장과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으로 자영업자의 전문화를 위한 창업 캠페인, 신규상담 촉진 및 집중, 홍보 프로그램을 위한 행정적 부담 경감, 전문가를 위한 연금계획 조항의 안정성 확보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보다 많은 중소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사업우호적인 환경조성, ERP특별자금의 촉진과 유지, 다양한 범위의 중소기업을 위한 2중 자금 확대 등의 여러 가지 많은 금융개혁을 실시하고 있다.

②독일무역공사(BGA : Bundesverband des Deutschen Gross-und Aussenhandels e.V)

독일무역공사의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 국제무역에 대한 서비스제공 : 해외로 상품을 수출하기 위해 제조업자와 잠재 고객 사이의 중간자 역할을 맡아 상품, 구매방법, 외국인투자 사업의 현대기술에 대한 설명과 같은 정보를 제공
- 마케팅 : 장기적인 사업관계를 목표로 고객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논의와 같은 서비스 제공, 상호 만족할만한 협력을 위해 수용 가능한 개별적 해결안을 제시
- 자금지원 : 투자상품에서 장기적인 자금 제공, 제조업자들은 기술위험을 예측하는 반면 수출업자들은 재정적인 위험에 직면할 수 있어 수출업자의 자금 노하우 및 신용에 대한 문제 해결
- 기타 지원 : 수출업자들이 고객에 대한 사후 서비스 제공과 주문을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

(2) 민간기관

①독일연방산업협회(AUMA : Association of the German Trade Fair Industry)
국가 및 국제수준에서 국회, 부처, 당국 혹은 기타 기관들의 이익을 대변하여 독일의 방문자, 참가자 및 상품범위, 데이터에 대한 정보와 인터넷, 출판물과 같은 수단을 활용하여 해외사업 등과 같은 개별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무역박람회 마케팅을 실시하고 기타 무역박람회에 관련된 비용과 혜택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다. AUMA는 대학과 기술전문대를 지원하고 무역박람회와 관련된 보다 개선된 훈련을 위한 지원을 실시한다.

독일사업자의 중앙협회, 전시교역협회, 박람회 및 산업시찰, 독일무역 박람회 및 전시회 조직자들과 외국인 교역박람회 참석, 무역박람회 산업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의 협회를 조성하고 있다.

②연방무역진흥처(BFAI : German Office for Foreign Trade)

독일기업을 대상으로 외국시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경제데이터 및 트렌드 분석, 외국인 경제학 및 조세법, 세금절차 및 관세, 민·관 재무 프로젝트에 대한 외국기업의 참여 유도, 독일 기업과 해외 기업으로부터 사업기회, 정보 및 네트워킹 이벤트 조직, 외국인 교역 포털사이트 iXPOS운영과 같은 분야에서 독일 사업파트너와 사업관계를 구축하는 외국인 회사를 지원한다.

(3) 금융기관 : 독일부흥금융기관은행그룹(Kfw Bankengruppe)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 소비금융 및 가정 현대화, 환경 및 기후 보호, 수출과 프로젝트 파이낸스 혹은 개발도상국들의 프로모션을 지원한다.

- 중소기업과 창업을 지원 : 독일부흥금융기관은행그룹은 독일 중소기업 부분을 지원하며, 사업개시 혹은 자영업자 전문가들에게 전통적인 촉진형 자금 및 혁신 자금 지원을 실시
- 국제화 자금 지원 : 다른 국가에 지역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독일부흥금융기관은행그룹은 유럽의 파트너 은행에게 중소기업 대상의 글로벌 대출을 제공하여 중장기 투자자금을 확대
- 교육 :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지원을 하고 학생 및 전문가들을 위한 고급 교육과정 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우대조건하에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훈련과 학습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우며 지식기반형 산업구조로 전환을 유도
- 수출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 : 독일 수출업자에게 대규모 자금을 제공하고 독일 및 유럽의 관심이 되는 프로젝트를 지원

6) 중국

(1) 정부기관 및 출연기관

①상무부

상무부는 국내 교역 발전계획 수립 및 유통구조 개선, 수출입 상품의 규정, 기술, 역내교역과 관련된 정책, 양자간 혹은 다자간 경제협력 정책, 해외 교역파트너와의 교역 및 경제현안에 대한 협상, 해외투자자와 관련된 방향 제시, 중국의 외국인투자 발전 분석 및 정보제공, 관련 정책 수립 및 계획에의 반영, 외국인 경제협력에 대한 정책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②중소기업사

중소기업사는 중소기업의 발전과 관련된 이슈들에 대한 연구 및 다양한 지배구조의 기업간 공정한 경쟁과 공동의 발전을 증진하고, 중소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연구·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국제협력을 도모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서비스체계를 개선한다. 중소기업과 비국유경제의 발전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③중소기업대외합작센터

중소기업서비스를 위한 국가개혁발전위원회 직속 사업기구로서 중소기업을 위한 전방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업무로는 중소기업의 요구를 반영하여 정부의 중소기업 관련 정책 및 법규제정에 반영하며, 대외경제 기술합작 부문 지원, 국내 중소기업의 경영상담 및 상품전시회 조직, 중소기업가 및 기술전문인력 배양, 지식 및 기술전수, 정보 및 자문 서비스 제공, 경영활동 자문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2) 민간기관

①중소기업국제정보망

중소기업국제정보망은 중소기업 발전의 지침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특히 웹 서비스를 통해 관련된 정보를 수집·전달하고 있다. 중국국제정보망의 목적은 중소기업과 민간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는 것이며 중국 중소기업 정보제공서비스의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업을 위한 높은 수준의 정보, 정부기관에서 시행하는 행정, 관련정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교역 및 e-business 등

의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②중국무역촉진위원회(CCPIT : China Council for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Trade)

중국무역촉진위원회의 목표는 해외무역 및 외국인투자를 증진시키고 해외선진기술을 국내에 도입하여 중외합작 및 기술협력을 이뤄내는 것이다.

(3) 금융기관 : 중국수출입은행

수출입은행은 대외교역 및 경제를 지원하는 기관이자 중요한 금융기능을 담당하여 전기기기 및 기계장비, 첨단제품의 수출, 해외 건설계약 착수, 해외 투자프로젝트와 관련된 정책자금 제공 등을 담당한다. 주요사업으로는 수출신용장 개설, 해외 건설공사계약 및 해외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 중국정부융자 제공, 국제신용보증, 외국 정부 및 금융기관에 대한 융자 제공, 국내외 자본시장에서의 펀드 운영, 국제 은행간 대출 및 외국환 거래가 있다.

7) 대만

(1) 정부기관 및 출연기관

①중소기업처

경제부 산하의 중소기업처는 전체 중소기업 시책을 종합·조정하면서 금융지원, 경영관리, 정보화관리, 품질향상과 상호합작의 5가지 지원시책을 담당하고 있다.

②국가무역국

국가무역국의 주요 정책활동은 시장정보의 수집·제공기능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시장개척(해외시장 포함)과 관련된 지원, WTO가입과 기타 국셈역기구회의에 참여, 주요 교역파트너와의 FTA체결, 다자간 혹은 양자간 협력, 국제무역전시회장 설치에 의한 국내 수출업자 지원 등이다.

(2) 민간기관

①대만대외무역개발위원회(TAITRA : Taiwan External Trade Development Council)

대만대외무역개발위원회는 민간협회 뿐만 아니라 산업, 정부기관의 후원으로 대만 사업가 및 제조업자들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에서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시장연구 및 정보서비스, 시장개발, 전시회 및 컨벤션 서비스, 디자인 발전, 무역지원, 웹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②대만상공회의소(TCOC : Taiwan Chamber of Commerce)

대만상공회의소는 사업공동체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사업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대 정부 정책의견을 제안하고, 다른 국가들과의 국제적인 경제협력을 추구한다. 세부 활동으로는 기업가들로부터 의견을 얻어 정부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안하며 정부에 의해 허가를 받은 강의와 홍보를 하고 수출지원을 위한 원산지증명 발급, 공공복지 활동, 전시회 개최, 정기적인 전자신문 발행 및 상공회의소 웹사이트 구축 등을 수행하고 있다.

(3) 금융기관 : 수출입은행(EXIM : Export-Import Bank of the Republic of China)

수출입은행은 초기 수출신용보험, 대출과 기타 다양한 금융상품을 제공하며 대출업무, 보증업무, 수출보험, 안전수출보험과 같은 서비스 제공을 담당한다.

3. 주요국 수출지원제도의 시사점

주요국의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대부분의 국가들이 디지털경제로의 이행과정에서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심화됨에 따라 창업 및 사업초기 단계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둘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보호나 육성차원보다 시장경제의 원칙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있다. 미국, 독일, 영국과 같은 선진국의 경우 기본적으로 기업 활동에 유리한 경영환경을 조성하거나 개별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간접지원 정책에 초점을 맞추었다. 예를 들면 경쟁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구조조정, 구조고도화, 경영능력을 향상시키는 게 목적인 정책이 있고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측면에서 규제완화, 불합리한 관행의 개선, 인허가 절차 및 용자절차를 간소화시키는 등의 정책이 있다.

셋째, 중소기업의 지원행정체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또는 민간기관 등이 상호 연계하여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넷째, 세계화의 심화에 따라 많은 국가들은 중소기업의 경영 글로벌화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추세이다. 각국 정부는 중소기업의 영세성이 경영글로벌화를 저해하는 요인임을 인식하고 수출보험, 신용보증 등 위험분산을 위한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 지원담당 조직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외전시회 및 무역박람회 참가, 해외마케팅, 외국어 지원 서비스 등의 지원을 확대하는 추세이다.

다섯째, 주요 선진국들은 중소기업 간의 정보 확산, 인력교류, 해외공동마케팅 등 무형자산의 공유를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클러스터(cluster)를 육성하고 있다.

제4절 수출보험제도 검토

1. 수출보험제도의 의의 및 기능³⁶⁾

무역은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국내거래보다 훨씬 복잡한 환경에서 이루어지며 수많은 위험에 노출된다. 특히, 수출대금 결제과정에서의 위험은 수출자의 파산이나 계약파기, 수출대금의 회수 불능, 지급지연 또는 수출환경과 관련하여 수입국의 전쟁이나 내란, 소요, 수입제한이나 환율급변과 같은 계약당사자가 제어할 수 없는 사고에 따르는 손실은 통상 보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 속에서 수출을 하는 수출자의보호를 위해서 기업 및 정부 차원에서의 보호 장치 도입이 필요한데 이를 수출보험이라 한다.³⁷⁾

수출보험은 WTO체제 하에서도 수출 진흥을 위해 수출보험을 인정하고 있으며,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신용위험과 비상위험으로부터 수출업자를 보호하고 수출업자도 무역거래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내고 안정적으로 수출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 장치이다.

수출보험은 1890년대에 영국의 민간보험업자들이 신용보험사의 범위를 국내거래에서 대외거래로 확대하고, 비슷한 시기에 독일 민간은행들이 수출환어음을 할인·매입하는 데에서 유래하였다.³⁸⁾

정부가 관여하는 수출진흥정책으로서 수출보험제도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각국의 외환 및 무역관리 강화로 수출거래에서 수출자가 통제할 수 없는 정치적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영국을 필두로 독일, 이탈리아, 미국 및 프랑스 등의 선진국에서부터

36) 정창근, “한국 수출중소기업의 수출보험 활용 및 성과에 관한 실증 연구 : 단기수출보험과 수출신용보증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년, pp.13~17.

37) 심의섭 외, 『수출보험의 이해 : 수출보험 개관』, 세창출판사. 2009년, pp.1~15.

38) 심의섭 외, 『수출보험의 이해 : 수출보험 개관』, 세창출판사. 2009년, pp.4~5.

시행되고 발전되어 왔다. 또한 무역거래에서 국제거래가 증가하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기업들은 유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금결제를 지연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고, 이에 따른 리스크의 증가로 은행들의 신용장 개설비용이 증가하면서 대체상품인 수출신용보험의 이용이 증가, 수출신용보험시장은 급속히 발전하였다.

한국의 수출보험제도는 1968년 12월 31일 『수출보험법』을 제정한 이후 지금까지 수출진흥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신시장 개척에 대한 지원으로 수출시장을 확대하였다.

수출업자는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성 있는 외상거래나 신규 수입업자의 적극적인 발굴을 통한 새로운 시장개척 및 시장다변화를 도모할 수 있다. 금융기관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수출업체에 대해서도 수출보험증권이나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무역금융 지원확대 및 위험도가 높은 수출거래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³⁹⁾

수출보험의 역할 및 기능은 수출거래상의 불안제거, 금융 공급확대와 금융시스템의 건전성 향상, 수출진흥정책수단, 시장 지향적 무역관리 및 산업정책수단, 수출관련 정보제공, 효과적인 경제협력수단 등을 들 수 있다.

세계적으로 OECD 가입국 및 개도국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출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모두 58개국에서 66개의 기관이 자국 수출기업의 대외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수출보험제도를 통한 수출촉진, 고용창출 등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⁴⁰⁾

< 수출보험제도의 운영형태 >

| 운영형태 | 국가 | 국가수 (중복) | 기관수 |
|------|---|-------------|-----|
| 정부부처 | 영국, 사이프러스, 러시아 | 3 | 3 |
| 정부기관 |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중국, 대만, 헝가리, 홍콩 등 | 45 | 47 |
| 민간대행 |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 | 13 | 16 |
| 총 계 | - | 58(순계) | 66 |

자료 : <http://www.kcic.or.kr>

39) 윤상철, “수출신용보험의 제도적 개선과 신성장동력에 관한 연구”, 『국제금융위험관리』 제10권 제1호, 한국무역보험학회, 2009년 3월, pp.50~51.

40) 윤상철, “수출신용보험의 제도적 개선과 신성장동력에 관한 연구”, 『국제금융위험관리』 제10권 제1호, 한국무역보험학회, 2009년 3월, p.51.

각 국가별로 시장특성에 따라 정부부처, 정부기관 및 민간기관으로 나누어지며 대부분 정부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⁴¹⁾ 민간기업이 수출보험제도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최종적으로는 국가가 그 책임을 진다.⁴²⁾

OECD의 34개 회원국 중 29개 회원국은 모두 공적수출신용제도를 공적수출신용의 가장 중요한 지원수단으로 운영하고 있다. 운영형태는 국가별 필요에 따라 직접대출제도 및 이차보전제도가 보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수출신용보험과 직접 대출을 지원하는 공적수출신용기관의 운영형태는 수출보험기관만 운영하는 경우 그리고 통합기관으로 운영하는 경우 등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는 수출보험과 직접대출기관을 병립하여 운영하는 형태를 갖추고 있다.

< OECD 국가별 공적수출신용기관 운영형태 >

| 구 분 | 국 가 | 국가수 |
|---------------------------|--|------|
| 수출보험기관만 운영 (직접대출기관 부재) |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그리스, 스페인, 뉴질랜드, 덴마크, 포르투갈, 벨기에, 스위스,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폴란드, 핀란드, 룩셈부르크 | 16개국 |
| 수출보험기관 및 직접대출기관 병립 | 독일, 일본, 한국, 노르웨이, 스웨덴, 체코, 헝가리 | 7개국 |
| 수출보험·직접대출 통합기관 운영 | 미국, 멕시코, 캐나다, 터키, 호주, 슬로바키아 | 6개국 |
| 합계 | - | 29개국 |

자료 : OECD Yellow Book II, 이승영, 『수출보험의 이해 : 주요국의 수출보험제도』, 세창출판사, 2009년, p.183. 재인용.

2. 주요국의 수출보험제도

1) 우리나라의 수출보험제도

1968년 12월 31일 수출보험법이 제정·공포된 후 8차례의 법개정을 거쳐 1992년 7월 7일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설립되어 수출보험의 독립전담기관 체제가 확립되었다. 그 후 3차례의 수출보험법 개정작업이 이루어졌으며 2009년 수출보험 지연실적 165조원을 달성하였고, 2010년 7월 7일 한국수출보험공사는 한국무역보험공사로 재출범하게 되었다.⁴³⁾

41) 이승영, 『수출보험의 이해 : 주요국의 수출보험제도』, 세창출판사, 2009년, p.140.

42) 송채현 외 3인, 『무역보험론』, 삼영사, 2009년, p.433.

43) <http://www.ksure.co.kr>

2010년말 현재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수출보험종목은 19개로 크게 단기성 보험, 중장기성보험, 환변동보험, 기타보험, 수출신용보증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 수출보험 운영종목 >

| 구 분 | 내 용 | |
|----------|--------------------|--|
| 단기성 보험 | 단기수출보험 |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2년 이내인 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손실을 보상 |
| | 농수산물수출보험 | 농수산물 수출계약 후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수출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또는 국내 가격 변동으로 수출이행시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 |
| | 문화수출보험 | 수출이 계획된 문화상품(영화, 드라마, 게임, 공연 등)의 제작과 관련한 투자 또는 용자에 대한 손실이나 수출(또는 매출)실적 부진에 따른 손실 보상 |
| | 해외마케팅보험 | 기업이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였으나 이에 상응하는 수출증가 등의 효과를 얻지 못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 |
| | 부품·소재 신뢰성보험 | 국산 부품·소재를 사용하는 기업에게 제품의 신뢰성과 관련된 재산적 피해를 담보 |
| 중장기성 보험 | 중장기수출보험 | 결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입게되는 손실을 보상 |
| | 수출보증보험 | 금융기관이 해외공사계약 또는 수출계약과 관련하여 수입자에게 보증서(Bond)를 발급 후, 보증채무 이행시에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 |
| | 해외공사보험 | 해외건설 공사 등의 기성고방식 또는 현물수출방식 수출에서 수출대금의 미회수 또는 투입장비의 권리상실 등으로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 |
| | 해외사업금융보험 | 국내외금융기관이 수출증진, 외화획득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해외사업에 자금을 대출하고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의 손실을 보상 |
| | 서비스종합보험 | 국내 서비스 사업자가 서비스를 의뢰한 해외수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입국 또는 수입자 책임으로 서비스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의 손실을 보상 |
| | 해외투자보험 | 주식취득 등 해외투자 후 원리금, 배당금 등을 회수할 수 없게 될 경우 이를 보상 |
| | 이자율변동보험 | 금융기관의 조달 금지(변동금지)와 수출자금 제공금지(고정금리) 간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이익은 환수) |
| 환변동 보험 등 | 수출기반보험 | 금융기관이 국제외항선사 또는 국제외항선사의 해외현지법인(SPC포함)에게 상환기간 2년 초과 선박 구매자금을 대출하고 대출원리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 |
| | 환변동보험 원자재가격변동보험 | 수출업체에 일정환율을 보장해 준 후 수출대금 입금 또는 결제시점 환율과 비교하여 환차손 발생시 보상하고 환차익발생시 환수 수출기업이 원자재가격변동위험으로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고 이익을 환수 |
| 기타보험 | 탄소종합보험 | 교토의정서에서 정하고 있는 탄소 배출권 획득사업을 위한 투자, 금융, 보증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종합적으로 담보하는 보험 |
| | 녹색산업종합보험 | 지원가능한 특약항목을 『녹색산업종합보험』 형태로 제정하고 녹색산업에 해당되는 경우 기존 이용 보험약관에 수출기업이 선택한 특약을 추가하여 우대하는 제도 |
| | 해외자원 개발펀드보험 |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수출보험기금과 별도로 투자위험보증계정 운영) |
| 수출신용 보증 | 선적전보증 선적후보증 | 수출입자가 수출입계약과 관련하여 외국환은행, 수출유관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환어음 매각에 따른 금융기관앞 수출금융채무를 공사가 연대보증 |

자료 : <http://www.ksure.or.kr>

이처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는 단순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뿐만 아니라 수출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원자재 구매, 제조부터 수출 후 판매대금을 회수할 때까지 수출 과정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제공 및 수입지원 등 무역 관련 종합금융지원의 역할도 하고 있다.

(1) 단기수출보험제도의 개요 및 특성

가. 단기수출보험 개요

단기수출보험은 1994년 11월 시행이 폐지된 일반수출보험을 계승한 보험종목이라 할 수 있다. 이 보험종목은 1994년 11월 보험제도 개편시 일반수출보험과 수출어음보험이 안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고 신설한 보험종목이다.

단기수출보험은 결제기간 2년 이내의 모든 수출거래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담보 대상 거래를 일반적으로 일반수출거래, 위탁가공수출거래, 중계무역거래, 재판매거래의 4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취급하고 있다.

< 단기수출보험 가입대상 거래 >

| 구 분 | 내 용 |
|--------|--|
| 일반수출 | 국내에서 외국으로의 수출을 말하며, 국내에서 자체 생산하거나 국내 제조업체로부터 구매한 물품을 수출하는 방식 |
| 위탁가공무역 |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현지법인이 생산·가공한 물품 또는 제3국 기업에 위탁하여 동 국에서 가공물품을 제3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선적하는 거래 |
| 중계무역 | 제3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구매하여 제3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선적하는 방식 |
| 재판매 | 수출자가 해외지사(현지법인 포함)에 물품을 수출하고 동 해외지사가 당해 물품을 현지 또는 제3국에 재판매하는 거래 |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수출중소기업 관련 지원제도』, 2009년 3월, p.4.

나. 지원내용

단기수출보험은 수출자가 수출거래로부터 발생하는 대금미회수위험을 담보한다. 건전한 수출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적인 목적으로 수출기업이 보다 안심하고 수출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며 특히 대량의 수출거래를 지속적으로 하는 수출기업에 있어서 대금미회수위험에 대한 관리장치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 개별보험과 포괄보험의 장단점 >

| 구분 | | 개별보험 | 포괄보험 |
|----|-----|----------------------------|-------------------|
| 장점 | 수출자 | 고위험거래에 대해서만 선택적 보험부보 신청 가능 | 고위험거래에 대한 보험부보 용이 |
| | 공사 | 고위험거래에 대한 인수거절 가능 | 위험분산 용이 |
| 단점 | 수출자 | 고위험거래 부보 곤란 | 저위험거래 부보 의무 |
| | 공사 | 위험분산 곤란 | 고위험거래 인수 의무 |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수출중소기업 관련 지원제도』, 2009년 3월, p.5.

단기수출보험의 운영은 개별보험 및 포괄보험 방식이다. 개별보험은 수출자와 특정 수입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위험을 평가하여 수출보험에 부보하는 방식이며, 포괄보험은 사전에 보험계약자(수출업체)와 보험자(한국무역보험공사)가 포괄보험 특약을 체결함으로써 특정상품 또는 결제조건 등 미리 대상 수출거래의 범위를 정하여 의무적으로 수추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보험자도 이를 자동적으로 인수하는 방식이다.

다. 단기수출보험의 유형

단기수출보험의 유형은 아래의 표와 같이 단기수출보험(일반), 전자무역, 구매자신용, 포페이팅, EFF(Export Financing Facility)로 구분된다.

< 단기수출보험 >

| 구분 | 내용 |
|-------|--|
| 일반 |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수출거래를 대상으로 하며 물품을 수출한 후에 수입국 또는 수입자의 사정에 의해 수출대금을 적기에 회수하지 못하여 수출기업에게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신용보험제도 |
| 전자무역 | 공사가 인정한 전자무역사이트(정보통신망을 통해 무역거래 알선을 수행하는 사이트)를 통해 체결된 결제기간 1년 이내의 일반 및 위탁가공 수출계약의 대금회수불능에 따라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
| 구매자신용 | 국내외의 금융기관 등이 중장기수출계약에 의한 수출대금의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외국인(외국인의 정부, 공공단체 및 외국법인을 포함)에게 공여하는 수출대금 금융계약을 체결한 후 대출원리금을 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
| 포페이팅 | 금융기관이 포페이팅(Usance L/C조건)의 수출채권을 금융기관이 수출자에게 비소구조건으로 매입하는 방식의 수출금융) 수출금융 취급 후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만기에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
| EFF | 일정규모 이상의 매출액을 보유한 수출기업이 우량수입자 앞 수출채권을 비소구조건으로 은행에 매각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공사가 매입은행에 수출채권의 대금미회수 위험을 담보하는 제도 |

자료 : <http://www.ksure.or.kr>

(4)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단기수출보험의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등은 아래의 표와 같다.

< 단기수출보험의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

| 구 분 | 내 용 |
|--------|--|
| 보험가액 | 수출대금 |
| 부 보 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 중소기업 100%, 대기업 95% •중계무역 : 95% 이내 •국별인수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 보험금액 | 보험가액 × 부보율 |
| 보험금지급액 | [(①손실액-②면책대상손실)×95%(중소기업 : 97.5%)]-③다른 보험계약 및 금융계약 등에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게 될 것이 확실한 금액 |

자료 : 송채현 외 3인, 『무역보험론』, 삼영사, 2009년, p.436.

단기수출보험의 보험료는 보험금액에 수입자 신용등급(신용장거래인 경우 신용장 개설은행 소재 국가등급), 결제조건 및 결제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단기수출보험은 수출자보험으로서 약관의 면책사항에 해당하거나 수출계약이행과정에서 귀책이 있는 경우 보상받을 수 없다. 약관은 수출자가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 수출자는 동 약관의 내용을 숙지하여 수출보험에 가입하고도 보상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수출신용보증제도의 개요 및 특성

가. 수출신용보증제도 개요

수출신용보증제도는 수출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한국의 자본시장 개발은 가속화된 반면 수출업체의 경쟁력은 떨어지고 있는 공사설립 당시의 국제무역환경 속에서 수출지원을 위해 수출보험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도입된 제도이다.

수출신용보증은 수출계약과 관련하여 외국환은행이 중소기업자인 수출자에게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출자의 상환채무에 대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그 지급을 연대보증하는 것이므로 외국환은행은 안심하고 수출금융을 취급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수출자도 별도의 담보제공을 하지 않는 제도이다.⁴⁴⁾

수출신용보증제도 도입초기에는 수출어음보험과 연계하여 운영하였으나 단기수출보험이 도입된 후에는 단기수출보험과 연계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또한 농수산물수출거래에 대하여도 수출신용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1996년부터는 농·수·임산물 수출거래에 대하여는 농수산물 수출보험과 연계하여 수출신용보증에 부보하도록 하였다.

초기에 선적후 위험만을 담보하였던 수출신용보증제도는 1994년 11월에 선적전 신용보증제도를 도입하여 수출중소기업이 수출물품의 제조 및 원자재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제도는 현재 중소기업 전용보증제도로서 중소기업이 가장 선호하는 수출보험제도로 자리잡았다.

나. 수출신용보증(선적 전) 지원내용

수출신용보증(선적 전)은 수출기업이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조달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때 공사가 연대보증하는 것으로 수출기업이 자체 담보 제공없이 수출이행 자금대출이 가능하다.⁴⁵⁾ 주요 보증대상은 아래의 표와 같다.

○ 수출신용보증(선적 전) 보증대상

- ① 무역금융 및 관련 지급보증, 완제품 내국신용장(Local L/C) 개설
- ② 중진공 수출지원자금/무역협회 무역기금/기업은행 해외마케팅자금
- ③ 수출입은행 수출자금대출의 제작금융 및 포괄수출금융
- ④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장 개설(내국수입유산스 신용장 개설 포함)
- ⑤ 기타 공사가 인정하는 자금 대출(단,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거래는 이용 불가)

자료 : <http://www.ksure.or.kr>

다. 수출신용보증(선적 후) 지원내용

수출기업이 선적 후 금융기관에 선적서류 등을 NEGO(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 무역보험공사가 연대보증하는 제도이다. 주 대상거래는 수출대금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수출거래(L/C, D/A, D/P, T/T 등)이다. 수출신용보증의 보증대상업체는 신용상의 문제가 없는 수출기업이어야 한다.

2) 미국의 수출보험제도

44) 최준호 회 2인, 『국제무역보험론』, 도서출판 두남, 2006년, p.350.

45) 중소기업중앙회, 『수출중소기업 관련 지원제도』, 2009년 3월, p.3.

미국의 수출보험 지원형태는 한국과 일본의 수출보험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출보증보험 종목과 수출신용보험 종목 및 해외사업 자금대부 종목과는 다른 편이다. 미국에서는 별도로 보증제도와 대출제도를 통해 금융기관이 수출을 지원하는 형태로 직접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수출지원 형태에 있어서 한국이나 일본과는 매우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미국의 경제특성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는데 미국은 한국이나 일본과 같이 공산품 수출국이 아니고 항공기와 같은 첨단제품의 대형프로젝트 수출과 서비스 수출이 대부분이므로 미국의 수출상대국에 대한 수출위험이 비교적 적다. 따라서 미국은 수출보험제도를 통한 간접지원보다는 보증제도와 대출제도를 통한 직접지원을 더 많이 하고 있다. 미국의 보증제도는 수출상품의 제조와 마케팅 활동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의 공급을 촉진하여 수출확대를 도모하는 지원제도로 운전자본 보증제도와 구매자신용보증의 두 종목이 있다. 그리고 미국의 대출제도는 미국산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입하는 외국의 수입자에게 직접금융을 제공함으로써 수출확대를 도모하는 수출지원 수단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⁴⁶⁾

< 공적수출신용기관 및 유관기관 현황 >

| 구 분 | 수출보험·보증 | 수출금융 | 이차보전 |
|----------|-----------|---------|------|
| 공적수출신용기관 | US EXIM | US EXIM | 없음 |
| 유관기관 | CCC, OPIC | PEFCO | 없음 |

자료 : 한국무역보험공사, 『2010 세계 공적수출신용기관 편람』, 2010년, p.224.

한편 미국 공적수출신용업무의 역사적 기원은 1934년 독립정부기관(Independent Government Agency)인 워싱턴수출입은행 설립의 역사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1945년 수출입은행법 개정으로 법령에 의해 현행과 유사한 공적수출신용업무 운용에 관한 법적 권한이 부여되었으며, 1968년 미국수출입은행(US EXIM BANK)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미국수출입은행은 100% 연방정부 소유의 독립기관이며 미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민간상업은행의 기능을 보완하고 민간부문과의 경쟁을 제한하는 등 정부 단일계정으로 수출보험을 지원하고 있다.

46) 이수일, “한·미·일 수출보험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통상정보연구』 제6권 제2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4년, pp.65~84.

< US EXIM BANK의 수출보험 및 직접대출 지원현황 >

(단위 : 백만US\$)

| 기간 | 구분 | 2006 | 2007 | 2008 | 2009 |
|-------------|-----------------|----------|----------|----------|----------|
| Long Term | Loans | 56.5 | N/A | 356.0 | 3,025.5 |
| | Guarantees | 6,603.5 | 7,234.0 | 8,101.5 | 9,628.4 |
| | 소계 | 6,660.0 | 7,234.0 | 8,457.5 | 12,653.9 |
| Medium Term | Guarantees | 387.6 | 504.2 | 697.0 | 315.3 |
| | Insurance | 641.4 | 301.8 | 228.0 | 237.3 |
| | 소계 | 1,029.0 | 806.0 | 925.0 | 552.6 |
| Short Term | Working Capital | 1,173.8 | 1,255.3 | 1,380.9 | 1,531.0 |
| | Insurance | 3,287.7 | 3,274.1 | 3,635.5 | 6,257.8 |
| | 소계 | 4,461.5 | 4,529.4 | 5,016.4 | 7,806.8 |
| 총계 | | 12,150.5 | 12,569.4 | 14,398.9 | 21,013.3 |

자료 : US EXIM BANK Annual Report 2009, p.6.

3) 유럽의 수출보험제도

(1) 유럽 수출보험제도의 특징

가. 민간보험사 인수위험과 정부지원 제한

유럽에서는 유럽단일시장 내 수출보조금과 관련한 각국의 상호견제가 심화됨에 따라 수출신용보험과 관련 OECD 및 WTO와는 별도로 유럽 자체의 규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EU는 수출신용보험의 공정경쟁을 목적으로 공적수출신용기관의 기능은 축소하는 한편, 민간부문의 기능을 확대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즉, EU는 공적 수출신용기관에 대한 정부지원이 그 재정적, 경제적 혜택만큼 민간보험사에 불리하게 작용함으로써 민간부문의 경쟁을 왜곡한다는 인식하에 결제기간 2년 이하의 신용위험 및 비상위험을 담보하는 거래로서 시장의 민간보험사가 감당할 수 있는 거래조건을 'Marketable Risk'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정부지원을 금지하기로 1999년 9월 합의한 것이다.⁴⁷⁾

47) 한국무역보험공사, 『2010 세계 공적수출신용기관 편람』, 2010년, pp.29~30.

< EU Marketable Risk 관련 현행규정 >

| 구분 | 주요내용 |
|------|---|
| 적용대상 | •적용기관 : EU회원국의 수출신용보험 운영기관 |
| | •대상수출 : EU회원국 및 OECD국가 수출(한국, 멕시코 제외) |
| | •담보위험 : 결제기간 2년 이하의 신용위험 및 비상위험 |
| 적용기간 | •2006년 1월부터 2010년 EU위원회의 신규정 제정 및 시행전까지 |
| 제한내용 | •손실에 대한 정부보증 금지 |
| | •민간투자자 수준을 초과하는 재정지원 금지 |
| | •자회사 또는 독립계정 운영을 통해 재정적 독립 |
| | •적립금 의무 면제 및 세금 면제 금지 |
| 예외인정 | •민간보다 양호한 재보험 조건 제공 금지 |
| | •연간 수출실적 2백만 유로 이하로서 해당 국가에서 민간보험사의 수출보험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적정 절차를 거쳐 제한적인 조건으로 승인된 경우 |

자료 : 한국무역보험공사, 『2010 세계 공적수출신용기관 편람』, 2010년, p.30.

EU내 각 공적수출신용기관들은 이러한 제한조치에 대해 Marketable Risk를 인수하기 위한 별도의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Marketable Risk 영업 관련 별도의 자체계정을 운용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 독일, 포르투갈 등 민간회사 주도로 수출신용보험을 운영해 온 국가에서는 별다른 조치 없이 정부계정의 수탁운동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말까지에 한해 일부 국가의 공적수출신용기관의 EU의 Marketable Risk 관련 지원을 허용한 바 있으며, 이와 같은 예외조치는 2011년말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 EU국가별 단기수출보험 운영현황 >

| 운영형태 | 국 가 |
|----------|-------------------------------------|
| 계정분리 | 덴마크, 룩셈부르크, 스페인, 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 등 |
| 자 회사 | 노르웨이, 벨기에,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체코 등 |
| 정부계정민간위탁 | 네덜란드, 독일, 포르투갈, 프랑스 등 |

자료 : EU집행위원회 홈페이지.

나. 공적수출보험기관의 사업성향 변화

유럽의 공적수출보험기관들은 Marketable Risk 제한조치에 대응하여 중장기거래

및 Non-Marketable Risk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Marketable Risk 거래 중 예외적으로 공적기관이 지원할 수 있는 거래범위를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Marketable Risk거래를 위하여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별도의 자체계정으로 운영함으로써 제한범위 내에서 최대의 지원효과를 추구하고 있다.

초기 공적수출신용보험기관의 운영은 자국 물품에 대한 수출진흥이 주된 목적이었으나 기업의 글로벌화 및 해외조달의 급증으로 지원대상이 자국제조에서 자국기업 제조의 수요자중심 지원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또한 민간보험사와의 마찰을 피하는 한편, 자국산업 육성, 국내고용창출, 미래성장 원동력 보호차원에서 중소기업 전용 지원제도를 도입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공적기관의 역할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 공적수출신용보험기관의 주요 중소기업 전용지원제도 >

| 구 분 | 국 가 | 제 도 명 |
|----------|-----|---|
| EFIC | 호 주 | EFIC Headway Aioi Insurance(운전자금 수탁보증제도) |
| EDC | 캐나다 | Insolvency Excess Loans Insurance for Automotive Suppliers Policy(파산초과손실보험) |
| US-EXIM | 미 국 | Ex-Im-Online |
| EKN | 스웨덴 |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제도 |
| NEXI | 일 본 |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제도 |
| COFACE | 프랑스 | Coface Credit Rating(중소기업 신용평가제도) |
| FINNVERA | 핀란드 |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제도 |

자료 : 이승영, 『수출보험의 이해 : 주요국의 수출보험제도』, 세창출판사, 2009년, p.170.

(2) 영국

영국은 세계 공적수출신용제도의 최초 도입국으로 알려져 있다. 1919년 신용위험 및 비상위험에 대한 수출보험지원을 통해 제1차 세계대전으로 붕괴된 영국의 수출 진흥 및 수출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상무부내 수출신용국(Export Credits Department)을 설치한 것이 동 제도의 시작이다.

< 영국의 공적수출신용기관 및 유관기관 현황 >

| 구 분 | 수출보험·보증 | 수출금융 | 이차보전 |
|----------|---------|------|------|
| 공적수출신용기관 | ECGD | 없음 | ECGD |
| 유관기관 | 없음 | 없음 | 없음 |

자료 : 한국무역보험공사, 『2010 세계 공적수출신용기관 편람』, 2010년, p.218.

수출신용국은 1926년 수출신용보증국(ECGD : Export Credit Guarantee Department)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1930년 상무부로부터 분리 독립되었다. ECGD는 1991년 『수출투자보증법(Export and Investment Guarantee Act 1991)』dl 제정됨에 따라 이 법률에 의거하여 영국 정부부처의 형태로 운영되었다. ECGD는 영국정부의 독립부서이기는 하지만 영국통상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앞으로 운영사항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

수출보험 운영 관련 주요 사항은 재무부의 특별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다. 또한 수출보증자문회의(Export Guarantees Advisory Council : EGAC)로부터 ECGD설립취지에 적합하게 규정이 도입되어 있는지의 여부 및 적절한 규정 적용 등과 관련하여 자문을 받고 있다.

영국의 공적수출신용에 활용되는 주요 재원은 보험료 수입이다. ECGD는 매년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아 운용되는 중앙정부기금(Central Government Fund)을 통해 잉여금의 환수 및 결손금의 보전이 이루어진다.

< 영국의 주요 공적수출신용제도 >

| 제 도 | 주 요 내 용 |
|------------------------------------|--|
| Buyer Credit Facility | 자본재를 수입하는 해외 구매자 앞 시중은행이 구매대금을 신용공여하고, ECGD는 은행 앞 지급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에 100만 유로 이상의 수출계약 - 신용기간 최소 2년 이상 - 선수금 15% 이상 |
| Supplier Credit Financing Facility | 수입자가 발행한 환어음 또는 약속어음을 수출자가 은행에 매도할 때, ECGD가 수출자를 대신하여 은행에 지급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에 2.5만 유로 이상의 수출계약 - 신용기간 최소 2년 이상 최대 5년 이하 - 선수금 15% 이상 |
| Project Financing Facility | 영국 수출자가 개입된 해외의 대형프로젝트 사업 등에 은행이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ECGD가 보증 |
| Export Insurance Policy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재 수출거래를 대상으로 하며 수입자 신용위험 및 비상위험 담보 • 선적전 발생비용과 선적후 수출신용위험 부분을 커버하며, 부보율은 95% |
| Bond Insurance Policy | 수출자가 부당한 보증채무 이행청구나 비상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커버하는 보험제도 |
| Overseas Investment Insurance | 개발도상국 등에 이루어진 해외투자활동과 관련된 비상위험을 커버하는 보험제도 |
| Fixed-Rate Export Finance(FREF) | 수출자 또는 해외수입자 앞 상업은행의 신용공여시 고정금리로 공여하도록 ECGD에서 상업베이스 변동금리와 고정금리의 차이만큼 은행 앞으로 보전하는 이차보전제도 |

자료 : 이승영, 『수출보험의 이해 : 주요국의 수출보험제도』, 세창출판사, 2009년, p.170.

4) 아시아 주요국의 수출보험제도

(1) 일본의 수출보험제도

일본의 무역보험제도는 1950년 4월 제정된 『수출신용보험법』에 의해 수출보험제도로 창설된 이래 내외의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정비·개정되어 왔으나, 1986년 수출보험심의회로부터 큰 폭의 무역수지흑자, 개발도상국의 채무누적 문제의 심각성 등 그 당시의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수출보험제도를 확충·발전시켜야 된다는 제언이 있었다.

이에 일본 정부는 1987년 4월 수출보험법을 개정하여 새롭게 ‘전불수입보험’ 및 ‘중개무역보험’을 창설함과 동시에 해외투자보험을 대폭적으로 확충하여 법률의 명칭을 『수출보험법』에서 『무역보험법』으로 개칭하고 정부의 직접사업으로 통상산업성(Ministry for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 MITI)에 의해 운영되어 왔다. 일본의 수출보험은 경제협력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면서 일본의 장기적 해외시장 확대전략을 뒷받침하고 있다.

< 일본의 공적수출신용기관 및 유관기관 현황 >

| 구 분 | 수출보험·보증 | 수출금융 | 이차보전 |
|----------|---------|-----------|------|
| 공적수출신용기관 | NEXI | JFC(JBIC) | 없음 |
| 유관기관 | 없음 | 없음 | 없음 |

자료 : 한국무역보험공사, 『2010 세계 공적수출신용기관 편람』, 2010년, p.131.

현행 무역보험의 종류는 무역보험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1992년 10월 대폭적인 개편에 의해 보통수출보험, 수출대금보험, 외환변동보험, 수출어음보험, 수출보증보험, 전불수입보험, 중개무역보험, 해외투자보험 등 8종목 53개 약관체계가 10개의 기본약관체계로 간소화되었다. 이러한 개편으로 보험자 및 피보험자의 업무경감, 사무 처리의 신속성 및 보험운영의 적정화를 기할 수 있게 되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서비스가 획기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일본의 공적수출신용 업무는 일본수출투자보험공사(NEXI : Nippon Export and Investment Insurance)가 수출보험 및 보증업무를 그리고 일본국제협력은행(JBIC : 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이 수출금융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일본의 주요 공적수출신용보험제도 >

| 제 도 | 주 요 내 용 |
|---------------|---|
| 수출신용보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 및 중개무역용 보험제도 : 일본 수출자 또는 중개무역업자의 수출불능 또는 선적 후 대금미회수 위험담보 개별보험(수출 및 중개무역 개별계약별 인수)과 포괄보험(한 회사의 전체적인 수출 및 중개무역 규모에 대한 인수) 두 가지 형태 모두 운영 지적재산권 수출보험(Insurance for export license) : 2003년 10월 도입된 제도로 특허권, 지적재산권 등을 해외에 공급하고 라이선스 비용을 지급받지 못함에 따른 위험 담보 |
| 구매자신용보험 | 시중은행의 수입자에 대한 직접대출 미회수위험 담보 |
| 제조업전용 무역보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제조업체를 위함 무역보험 선적불능 또는 대금미회수 위험 담보 수입자별로 한도액을 미리 설정한 후 동 한도내에서 보험금 지급 |
| 중소기업전용 수출신용보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5년 4월 중소기업지원책으로 마련 중소기업을 위해 청약절차 간소화 및 신속한 보험금 지급이 특징으로 대금미회수위험을 담보 NEXI와 계약을 체결한 은행의 경우 동 보험증권을 대출용 담보로 사용할 수도 있음 |
| 해외사업자금 대부보험 | 일본 기업 또는 은행이 외국정부 또는 해외기업(비지배법인)의 프로젝트 등에 대한 사업자금대부 후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으로 인해 동 자금을 회수할 수 없거나 보증채무 이행시 손실을 담보 |
| 수출어음보험 | 선적 후 화환어음 부도 등으로 인한 외국환은행의 손실을 담보함으로써 은행의 매입위험 경감 |
| 수출보증보험 | 금융기관이 발급한 Bond에 대한 발주자의 Unfair Calling으로 인한 손실 담보 |
| 해외투자보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투자기업의 전쟁, 수용, 송금제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투자자의 손실 담보 Insurance for investment : 자회사, 합작투자 설립관련 투자보험 Insurance for rights and acquired profit : 채굴권, 부동산 취득 관련 보험 자원에너지 보험 : 2007년 4월 1일자 출시 |
| 선급수입보험 | 해외 수출자에게 선지급금을 지급한 일본 수입상이 물건을 수취하지 못하고 선지급금도 환급받지 못하는 데 따른 손실담보 |
| 지구환경보험 | 온실효과 가스배출절감을 위한 설비 및 기술 관련 무역이나 해외투융자를 위해 기후 안정화에 공헌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담보(2009. 1. 1일자 출시) |

자료 : 한국무역보험공사, 『2010 세계 공적수출신용기관 편람』, 2010년, pp.135~136.

(2) 중국의 수출보험제도

중국의 대외무역은 철저한 국가관리제로 되어 있다. 중국의 대외무역관리수단은 입법, 행정 및 경제적 방법이 이용된다.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 채택하고 있는 대외무역관리 제도로는 수출입관리제도, 수출입상품검사와 수출입화물통관 및 관세제도가 있다. 중국의 대외무역관리를 위한 기본사항은 1994년 7월부터 시행되어 왔던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등에 포괄적으로 규정해 놓고 세부사항은 별도의 관리규정 및 세칙 등을 통해 관리감독하고 있다.

중국의 수출보험제도는 한국에 비해 그 종류가 적은 편이다. 중국 수출보험제도의 특징은 수출신용보험에 법적제도가 완비되지 못했으며, 보험의 선택범위가 적다. 또한 피해보상 보험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손해배상 비율이 적다.⁴⁸⁾

중국의 공적수출신용제도는 중국수출신용공사(SINOSURE)와 중국수출입은행(China Exim Bank)이 담당하고 있다. SINOSURE는 수출보험과 보증업무를 그리고 중국수출입은행은 중국의 수출금융을 담당하고 있다.

SINOSURE는 정부재정예산에서 출연한 수출신용위험기금으로부터 40억 위한을 자본금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중국의 주요 공적수출신용제도는 아래의 표와 같다.

< 중국의 공적수출신용보험제도 >

| 구분 | 제 도 | 주 요 내 용 |
|----------------------|---------------------------------|--|
| 단기 수출 신용 보험 | Comprehensive Cover Insurance | 2년 이내의 모든 수출신용거래 및 L/C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커버해주는 제도 |
| | Whole Turnover Insurance | 2년 이내 전체 수출신용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커버해주는 제도 |
| | L/C Insurance | 2년 이내 L/C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커버해주는 제도 |
| | Specific Buyer Insurance | 하나 또는 몇몇의 수입자에게 신용거래로 수출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을 커버해주는 제도로 기계, 전자, 제품, 설비 등의 수출에 적합 |
| | Specific Contract Insurance | 보험계약자의 개별적/특정 수출신용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커버 |
| | Contract Frustration Insurance | 수입자의 계약파기로 인한 선적전/후 손실 커버 |
| 국내신용 보험 | Domestic Trade Credit Insurance | 국내 신용거래에서 발생하는 신용위험 커버 |
| 중장기 수출보험 | Buyer Credit Insurance | 중장기수출보험 구매자 신용보험 |
| | Supplier's Credit Insurance | 중장기수출보험 공급자 신용보험 |
| | Refinancing Insurance | 리파이낸싱 거래에 대한 위험 커버 |
| 투자보험 | Overseas Investment Insurance | 해외투자에 대해서 비상위험 커버 |
| | Inbound Investment Insurance | 중국에 투자하는 해외투자자들의 비상위험 커버 |
| Bond 보증 | Financial Guarante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출은행앞 직접 담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은행대출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대출은행 앞으로 보상하는 제도 ●담보범위가 수출자의 상환위험에 한하여 있으므로 용자담보로 하며, 수출자의 위약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담보 |
| | Non-Financial Guarantee | 수출자의 계약의무 이행을 수익자 앞으로 보증하는 제도로 수출자의 용자수요 및 상환위험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비용자담보로 함. 입찰보증, 이행보증, 선급금보증, 품질보수보증, 세관면세보증, 보증금 보증, 임대보증 등 |

자료 : 한국무역보험공사, 『2010 세계 공적수출신용기관 편람』, 2010년, p.63.

48) 김미정, “한-중 수출보험제도의 비교 고찰”, 한국무역보험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08년 9월, pp.12~13.

(3) 홍콩의 수출보험제도

홍콩은 홍콩수출신용보험공사(HKECIC : Hong Kong Export Credit Insurance Corporation)가 수출보험 및 보증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HKECIC는 홍콩수출신용보험공사법에 의거 보유기금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기금은 보험인수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할 수 있는 거액보험금 지급 위험에 대비한 비상기금, 금융자산투자 손실 및 운영비용 급증에 대비한 비보험기금,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을 반영하기 위한 정상가격유지기금(Fair Value Reserve) 등으로 구분된다.

< 홍콩의 주요 공적수출신용보험제도 >

| 구분 | 제 도 | 주 요 내 용 |
|-------------------------------------|-----------------------------|---|
| Export Credit Insurance | Comprehensive Cover Policy | 결제기간 180일 이내의 수출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수출신용보험 |
| | Tailor Made Policy | 다양한 산업 및 수출자의 특성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출신용보험 |
| | Medium and Long Term Policy | 중장기 수출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수출신용보험 |
| Credit Management Service | | 수입자 신용평가 및 신용정보 제공 서비스 |
| Advice on Solving Payment Problems | | 채권회수 관련 서비스 |
|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Policy | | 중소기업용 보험으로 최대 90%까지 커버 |
| Cover on Export of Service | | 호텔, 항공, 건설, 여행 및 광고 등의 서비스 수출지원용 보험으로 최대 90%까지 커버 |

자료 : 한국무역보험공사, 『2010 세계 공적수출신용기관 편람』, 2010년, p.104.

제5장 원산지증명제도 활성화 방안

원산지란 제품이 생산된 나라 또는 국적을 의미하며 주로 원재료의 공급국가와 중요한 공정 수행국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FTA체결국가에 원산지기준에 의거하여 제품의 원산지가 역내국일 때에만 특혜관세의 혜택이 있고 역외국일 때에는 특혜관세를 제공받을 수 없다.

원산지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의 원산지결정기준을 관세법에서는 주로 “특혜원산지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을 두고 대외무역법에서는 주로 “비특혜원산지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을 규정하는 이원적 체제로 되어 있다.

특혜원산지규정은 어느 국가와의 무역촉진을 위하여 관세특혜를 부여하는 경우 적용하는 제도로써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제도, WTO 및 UN의 개발도상국간 관세양허제도,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을 위한 양허관세제도 등 주로 관세법령상의 원산지규정을 말하며 이는 일반특혜관세제도와 관세양허제도로 구분된다.

특혜원산지규정 가운데 원산지증명 확인을 위한 원산지증명서는 FTA체결국간 교역제품의 원산지를 확인함으로써 최종소비자를 보호하고, 교역기업간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FTA발효국가와는 FTA원산지규정에 의거하여 시행하고 있다.

원산지규정은 수출의 경우 특혜관세를 부여받고자 할 때와 수입의 경우 모든 물품에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47개 세관과 65개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고 있다.

협정 체결국간 교역 시 수출입 화물에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은 상대국으로부터 협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줌으로써 신뢰성을 확보하고 통관과정의 지연 및 복잡성을 해소할 수 있는데, 수출국의 경우에 통관과정 이전에 제품의 원산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교역제품 자체의 신뢰성을 제고하여 원산지 확인절차를 간소화하여 수출자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

그리고 수입국의 경우에 원산지가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양허 혜택을 부여하고 수입함으로써, 저가상품이 난립할 수 있는 우회수출을 방지하고 내수산업을 보호하여 자국의 안정적 국민경제 활동에 이바지할 수 있다.⁴⁹⁾

49) 최준호, “FTA 원산지증명서 운용 효율화를 위한 발급기관 선정의 개선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0권1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8년 3월, pp.156~157

특히, FTA 확산에 따른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FTA를 활용한 지속적 수출증대가 필요하다. 특히, FTA활용을 위해서는 협정별 원산지증명절차를 충족하기 위한 원산지관리와 원산지증빙서류의 원활한 유통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들이 원산지증명 및 원산지관리와 관련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며⁵⁰⁾ 자금 및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이러한 어려움이 더욱 심각한 수준임에 따라 원산지증명 서류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제1절 원산지(포괄)확인서 확인(공인인증)제도 도입

원산지확인서의 발급이 강제화 되어 있지 않고 발급사실에 대한 신고의무도 없어, 정확한 발급기업의 수나 유통실태에 대한 조사는 불가능하나⁵¹⁾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판단해 볼 때 발급된 확인서의 신뢰성에 대한 의심으로 수출자가 확인서 발급기업에 추가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원산지확인서 발급기업의 경우 제조원가 및 생산비법 등에 대한 유출을 우려하는 경우가 많아 원산지확인서 발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대다수의 원산지확인서 발급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전문역량이 부족하고 원산지관리체계 또한 구축되어 있지 않아 발급된 원산지확인서 오류로 최종 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가 잘못 발급될 가능성 또한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한 있는 기관이 원산지확인서 발급기업의 기업비밀을 보호하면서, 발급된 원산지확인서 내용에 대한 검토를 통해 오류를 점검하고 완비된 원산지확인서가 최종 수출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FTA활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의 도입·운영이 필요하다.

1. 원산지(포괄)확인서 확인(공인인증)제도 운영체계 개념

50) 대한상공회의소가 6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90.6%의 기업이 원산지증명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어려움의 발생이유는 ①원산지기준 및 증명절차의 복잡성(58.4%), ②원산지증명과 관리시 거래업체의 협조부족(22.5%), ③원산지업무 담당인력 부족(16.9%) 등으로 조사됨(2012.05.16. 파이낸셜 뉴스 기사 참조)

51) 관세청에 따르면 현재 원산지확인서 발급기업의 수는 약 9,444개로 추정된다.
 $111,126(\text{'09년 중소기업수}) \times 0.34(\text{FTA체결국과 교역비중}) \times 0.5(\text{평균 FTA활용률}) \times 0.5(\text{협력업체 원산지관리비율}) = 9,444\text{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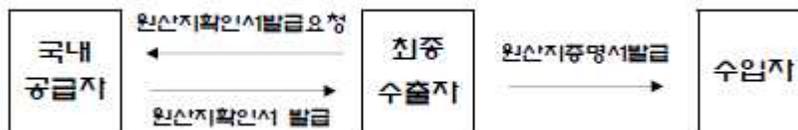
1) 현행 원산지증명서 발급과정

현행 원산지증명서 발급과정은 최종 수출자가 국내공급자에게 원산지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면 국내공급자는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여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수출자는 이를 근거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수입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수입자가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행 원산지증명제도에서 발견되는 문제는 크게 원산지확인서 발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과 잘못된 원산지증명서로 인해 수입자가 특혜관세 취소 등의 손실이 발생하게 될 경우 거래관계가 지속되지 못하게 되거나 수입자의 금전적 손실을 수출자가 보상해 주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중 원산지확인서 발급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는 국내공급자가 부품정보·가격정보 등 경영상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염려 때문에 최종 수출자의 원산지확인서 발급 요청에 대해 확인서 발급을 꺼린다는데 그 원인이 있다.⁵²⁾

아울러 원산지증명서의 오류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은 국내공급자가 제공한 원산지확인서의 내용이 잘못 되었을 경우 수출자는 잘못된 정보를 기초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밖에 없어 수입자가 특혜관세 적용 취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⁵³⁾



52) 원산지확인서가 발급되었다 하더라도 수출업체가 원산지증명서 작성 전 원산지확인서의 정확성을 점검하기 위해 원산지확인서 제공기업에 동 확인서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경우 원산지확인서 발급기업은 자사의 경영상의 비밀을 제공할 수밖에 없어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53) 이 경우 수입자는 수출자에게 특혜관세 취소분에 대한 금전적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거래관계를 단절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수출자가 손해배상을 하게 되면 거래관계 단절 위험을 최소화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확인(공인인증)제도 도입 후 원산지증명서 발급과정

현행 원산지증명서 발급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산지확인서 발급기업인 국내공급자의 경영상 비밀 노출 우려와 수출자의 원산지확인서 내용에 대한 신뢰를 높여 줄 수 있는 방법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내공급자의 경영상 비밀이 수출자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하면서 원산지확인서 내용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제3의 기관이 국내공급자의 요청에 따라 수출자에게 제공될 예정인 원산지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해 주거나, 수출자의 요청에 따라 국내공급자에게 제공받은 원산지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해 주는 제도적 장치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오류로 인해 수입자가 특혜관세 취소 등의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낮아지게 되어 FTA를 활용한 수출을 늘릴 수 있는 주요한 경쟁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원산지확인서 확인(공인인증)을 위한 공인인증기관의 동 분야에 대한 업무범위는 FTA 관세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3에 의거해 발급된 원산지(포괄)확인서 내용에 대한 공인 인증(certification)⁵⁴⁾업무로 원산지확인서 발급주체인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공급)자 또는 동 원산지확인서를 근거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최종수출자의 요청에 따라 원산지확인서의 내용 등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함으로써 수출기업이 입을 수 있는 피해예방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54) 평가대상이 그에 적용되는 평가기준에 만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자가 평가를 직접 수행하거나 제3자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입증하는 행위.



2. 원산지(포괄)확인서 공인인증기관 설립 방안

1) 공인인증제도 관련 법제 검토

공증(公證) 행위 및 공증인⁵⁵⁾의 지정과 관련한 근거법률은 『공증인법』이며, 동 법 제2조에 서 정하고 있는 공증인의 직무는 ①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 증서(公正證書)의 작성, ②사서증서(私署證書) 또는 전자문서 등(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 은 제외한다)에 대한 인증, ③이 법과 그 밖의 법령에서 공증인이 취급하도록 정한 사무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동 법의 규정에 따른 공증인의 책무는 각종 증서가 법률적 효력을 갖도록 하는 것으로 원산지확인서의 내용에 대한 확인만을 수행하는 원산지확인서 공인인증제도에는 적용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공인인증기관의 지정과 업무영역에 관한 근거법률은 『전자서명법』으로 공인인증업 무의 수행을 위한 공인인증기관의 지정은 『전자서명법 제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지정기 준은 『전자서명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동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업무는 공인인증서의 발급과 관련 된 사항으로, 원산지확인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만을 수행하는 원산지확인서 공인 인증제도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동 법의 공인인증기관 지정절차 등을 원산지확인서 공인

55) 공증인법 제1조의2 제1호 공증인이란 제2조에서 정하는 공증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11조에 따라 임명을 받은 사람(이하 “임명공증인”이라 한다)과 제 15조의2에 따라 공증인가를 받은 자(이하 “인가공증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인증제도에 적용할 필요는 없다.

결론적으로 원산지확인서 공인인증기관의 설립은 행정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특정업무에 대한 공인인증 위탁사업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2) 공인인증제도 관련 정부기관 운영사례 검토

각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증제도는 인증, 형식승인, 검정, 형식검정, 형식등록 등 인증대상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와 인증업무 위탁기관 설립의 근거는 아래의 표와 같다.

< 부처별 인증업무 위탁기관 설립 근거 >

| 부 처 명 | 관 련 법 령 | 인 증 위 탁 |
|-------|---------------------------------|-------------|
| 지식경제부 |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 ⁵⁶⁾ | 계량기 형식승인 |
| | 전기사업법 제35조 ⁵⁷⁾ ~제46조 | 전력계통 운영 |
| 해양경찰청 | 수상레저안전법 제14조 ⁵⁸⁾ | 면허시험업무 대행 |
| 관 세 청 | 관세법 제233조의2 |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
| | 관세법 제255조의 2 | AEO인증 심사 |

- 56)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형식승인기관의 지정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계량기의 형식승인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계량기의 형식승인을 하는 기관(이하 "형식승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요원, 시험설비 등을 갖추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의 기준·방법·절차 등 형식승인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의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형식승인기관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⑤ 형식승인기관은 계량기의 형식승인에 관한 국내외 시험기관과 상호 인정 또는 다자간 인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 57) 전기사업법 제35조(설립) ①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한국전력거래소를 설립한다.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전력거래소의 주된 사무소는 정관으로 정한다.

위의 사례들을 검토해 볼 때 원산지확인서 공인인증 업무의 위탁을 위해서는 현행 관세법 및 관세법시행령에 관련 내용을 신설하고, 원산지확인서의 공인인증 또는 제3자 확인의 근거규정을 관세법 또는 FTA관세특례법에 도입함으로써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원산지확인서 공인인증제도 도입방안

인증제도는 법적 근거 유무에 따라 법정인증제도와 민간인증제도로 구분되며, 법정인증제도는 다시 강제성 유무에 따라 강제인증과 임의인증으로 구분되는데, 원산지확인서 공인인증제도의 조기 정착과 인증 자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세법 등 관련 법에 법적 근거를 둔 법정인증제도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법령에서 원산지확인서에 대한 공인인증을 강제하게 될 경우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강제성이 없는 임의인증제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원산지확인서 공인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동 업무가 원산지증명과 연계된 공공적 성격임을 감안하여 자격을 갖춘 법제기관으로 설립될 필요가 있다. 특히, FTA활용을 위한 원산지관리 분야 지원을 위해서는 ①FTA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연구역량, ②FTA활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컨설팅 역량, ③원산지관리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역량, ④기업 친화적 서비스역량 등을 두루 겸비한 기관이 설립·운영되어야 한다.

4) 원산지확인서 공인인증제도 활성화 방안

(1) 산업별로 특화된 전문 인력에 의한 인증업무 수행

산업별 전문 인력이 인증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인증심사가 엄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인증제도의 대외 신뢰도 제고가 필요하다.

(2) 인증 취득비용 최소화

확인서 발급·유통이 사인(私人)간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적정액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나, 동 제도 자체가 원산지관리의 엄정성을 확보하여 FTA허

④ 한국전력거래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58) 수상레저안전법 제14조(면허시험 업무의 대행) ① 해양경찰청장은 면허시험 실시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브국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공공적 성격이 강하므로 최소한의 비용⁵⁹⁾만을 부담할 수 있도록 운영자금은 정부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할 것이다.

(3) 인증서에 공인효력 부여

인증 자체에 공인 효력(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공인인증을 획득한 원산지확인서 제공시 확인서 발급자에게 최종 수출자가 추가 증빙자료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강제화함으로써 확인서 발급자의 기업비밀 유출 우려를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3. 원산지(포괄)확인서 공인인증기관 설립의 이점

1) FTA정착단계 조기 진입 가능

원산지확인서 공인인증기관이 설립될 경우 FTA집행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①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해 필요한 원산지확인서 유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 ②불명확한 원산지관리 시스템으로 인해 기업들이 가장 염려하는 원산지검증으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점, ③전문성이 요구되는 원산지관리 전문가 부족문제 해결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의 문제 해소에 기여하게 됨으로써 FTA 정착단계에 조기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2) 행정력 경감 및 경제적 이익 발생 가능

원산지확인서 공인인증기관이 설립·운영될 경우 우리 기업의 원산지관리상 오류의 발생가능성을 낮추는 역할을 하여 원산지규정 위반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한국의 FTA원산지관리체계에 대한 신뢰도를 상승시켜 수출의 증대와 추가적인 FTA협상의 무기로 작용할 수 있다.

아울러 급증하고 있는 원산지검증 요청⁶⁰⁾을 FTA원산지관리체계에 대한 신뢰도 상승으로 경감시킬 수 있고, 사전적 원산지관리를 통해 원산지검증 수행 시 소요되는 행정비용 및 행정력 낭비를 해소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우리나라 관세당국이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회

59) 품목당 3만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원산지사전심사제도와 같이 상징적 비용만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이용 활성화 도모

60) 2011년도 한-EU FTA 발효 이후 원산지검증요청이 급증하고 있고 금년의 경우에도 한-미 FTA 발효 이후 체약국으로부터의 검증요청이 쇄도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기업의 원산지관리체계에 대한 불신도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

신하는 간접검증의 경우⁶¹⁾ 사전에 수집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조사기간 단축에 따른 행정력 및 비용의 절감효과가 더욱 크게 발생할 수 있다.

< 원산지검증 요청 및 FTA관세특혜 추정 현황 >

| 구분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5월 |
|----------------|------|------|------|------|------|---------|
| 수출검증요청(업체수) | 6 | 7 | 7 | 15 | 93 | 101 |
| 국제검증요청(업체수) | 12 | 26 | 43 | 45 | 44 | 11 |
| FTA특혜추정(C/O건수) | | | 607 | 188 | 472 | 136 |

또한 원산지증명에 관한 사전적 관리를 통해 오류의 발생 가능성이 사전에 차단됨으로써 원산지위반에 따른 향후 거래의 단절이나 수입자 손실에 대한 보상책임을 방지하는 효과도 발생하게 된다.

제2절 원산지증명서 위험 제3자 보증제도 도입

1. 원산지증명서 위험 제3자 보증제도의 개념

1) 원산지증명서 위험의 범위

본 보고서에서 다루는 원산지증명서 위험은 국내 최종수출자에 의해 발행된 원산지증명서에 국한된 것으로 원산지증명서의 오류 등으로 인해 계약상대국 수입자가 특혜관세 취소 등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손해배상 또는 거래관계 단절 등의 위험을 의미한다.

2) 원산지증명서 위험에 대한 제3자 보증의 보증범위

국내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에 의해 발생한 수입자의 손실에 대한 보상은

61) < 협정별 간접검증 회신기간 >

| 구 분 | 한-아세안 | 한-인도 | 한-페루 | 한-EFTA | 한-EU |
|-----------|-------|------|------|--------|------|
| 검증결과 회신기간 | 2개월 | 3개월 | 150일 | 10개월 | 10개월 |

특혜관세 취소 상당액에 대한 것으로 그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대별될 수 있다.

첫째, 특혜관세 취소로 인한 손실에 대해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한 수출자를 대상으로 요구하는 손해배상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출자의 피해를 막기 위함이다.

둘째, 수출자의 과실로 인해 수입자가 피해를 입게 될 경우 수입자가 당해 수출자와의 거래관계를 끊을 수 있는 가능성을 금전적 손실에 대한 보상을 통해 최소화하는 것이다.

셋째, 수출시 선제적으로 수입자에게 수출자 자신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로 인해 수입자가 특혜관세 취소 등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상해 줄 것임을 약속하는 보증증권을 제공하게 되어 보다 차별화된 수출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자는 것이다.

2. 원산지증명서 위험에 대한 제3자 보증제도 운영방안

1) 보증주체

보증시장의 특성은 크게 ①높은 진입장벽, ②공공재적 성격, ③공급자주도 시장, ④불완전 경쟁시장, ⑤생산 제약성의 5가지를 들 수 있다.

첫 번째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이유는 보증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대규모의 자본과 조직, 높은 공신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실물과 금융을 연결시키는 매개산업으로 실물경제와 금융경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둘째, 보증이 공공재적 성격인 이유는 보증은 기업들의 신용을 보완하여 금융 또는 실물거래를 연결하는 공공재적 역할을 수행하며 경제 및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이기 때문이다.

셋째, 보증이 공급자 주도시장인 이유는 보증의 대체제로서 담보, 신용 등이 있으나 대체재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주로 채권자 또는 권리자의 요구에 의해 상품이 결정되고 수요자가 공급자를 선택하기 보다는 공급자가 수요자를 선택하는 시장(seller's market)이기 때문이다.

넷째, 보증이 불완전 경쟁시장인 이유는 보증상품간 대체성·교환성이 없어 불완전 경쟁시장을 형성하기 때문이며, 보증기관은 취급하는 상품의 종류와 보증 수요자에 따라 분리된 시장에서 고유의 차별적 지위를 보유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보증이 생산 제약성이 있는 이유는 보증은 공급자의 일방적인 생산·마케팅 활동에 의존하여 수요가 창출되거나 확장되기 어렵고 피보증인의 대출·계약 등에 수반하여 보증의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이다.⁶²⁾

따라서 원산지증명서 위험에 대한 보증은 기본적으로 교역과 관련된 것으로 관련 영역에서 오랜 기간 보증업무를 수행해 온 경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신규기관의 설립보다는 한국무역보험공사 또는 수출보험공사 등 정부 산하의 공적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적 안정성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신용보증기금법, 보험업법 등 개별법에 따라 공공기금, 보증보험, 공제조합 등이 각기 영역별 특성화된 시장을 유지하면서 54개의 보증기관이 보증시장에 참여하고 있다.⁶³⁾

한편, 보증기관을 전업과 비전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는 보증업무만을 영위하는 기관이며, 후자는 금융업무를 주요업무로 수행하면서 보증업무를 부수적으로 취급하는 기관이다. 전업 보증기관은 그 성격에 따라 ①공공기금, ②보증보험, ③기타로 구분되며, 비전업 보증기관은 ①공공기금, ②공제조합, ③금융기관으로 분류된다. 공공기금은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중소기업, 수출기업, 주택임차인, 농림수산업자 등을 대상으로 보증을 공급하고 있다.

< 국내 보증기관 현황 >

| 구분 | | 보 증 제 도 |
|-------------|------|--------------------------------------|
| 전업 (22) | 공공기금 | 한국, 일본, 독일, 대만, 스위스, 벨기에 |
| | 보증보험 | 독일, 이탈리아, 헝가리 |
| | 기 타 | 미국, 캐나다, 영국 |
| 비전업 (32) | 공공기금 |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장학재단, 한국정책금융공사 |
| | 공제조합 | 업종별 공제조합(8) |
| | 금융기관 | 은행(18), 종금사(2) |

자료 : 김필준, “우리나라 청구보증제도의 활용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년 10월, p.97. <표 4-2> 재인용.

62) 김필준, “우리나라 청구보증제도의 활용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년 10월, pp.95~96.

63) 김필준, “우리나라 청구보증제도의 활용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년 10월, pp.96~98.

< 국내 보증기관 개요 >

| 보증기관 | 근거법 | 설립일 | 보증상품 |
|--------------|--------------------------|--------------------|--|
| 신용보증기금 | 신용보증기금법 | 76.06 | 대출, 지급보증의보증, 사채, 납세, 어음, 제2금융, 시설대여, 이행, 상거래담보, 무역어음인수담보 |
| 기술보증기금 | 기술신용보증기금법 | 89.04 | 대출, 회사채, 지급보증의보증, 사채, 비은행대출, 납세, 어음, 상거래담보, 이행 |
| 지역신용보증재단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96.03외 | 대출(사업자, 개인), 시설대여, 어음, 이행 등 |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00.08 | 대출(개인) |
| 한국주택금융공사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04.03 | 대출(사업자, 개인, 주택연금) |
| 한국장학재단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09.05 | 대출(학자금) |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촉진법 | 95.05 | 대출, 채권 |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 72.03 | 대출 |
| 한국무역보험공사 | 무역보험법 | 92.07 | 수출신용(선적전, 선적후) |
| 한국정책금융공사 | 한국정책금융공사법 | 09.10 | 대출 |
| 건설공제조합 | 건설산업기본법 | 63.11 | 입찰, 계약, 차액, 하자보수, 선급금, 인허가, 대출, 리스, 부지매입 등 |
| 전문건설공제조합 | 건설산업기본법 | 88.05 | 입찰, 계약, 하자보수, 용자, 선급금지급, 리스, 대출 등 |
| 설비건설공제조합 | 건설산업기본법 | 96.07 | 입찰, 계약, 하자보수, 용자, 선급금지급, 인허가, 리스 등 |
| 대한주택보증(주) | 주택건설촉진법 | 92.04 | 주택분양, 주택임대, 주택착공, 의무하자보수, 대출, 시공 등 |
| 전기공사공제조합 | 전기공사공제조합법 | 83.10 | 입찰, 계약, 차액, 하자보수, 인허가, 대출, 지급보증 등 |
| 정보통신공제조합 | 전기통신공사법 | 88.04 | 입찰, 계약, 하자보수, 손해배상, 지급보증 |
| 자본제공제조합 | 공업발전법 | 86.10 | 입찰, 계약, 하자, 지급 |
|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 98.01 | 채무, 이행 등 |
| 엔지니어링공제조합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 90.04 | 지급보증, 이행 등 |
| 서울보증보험 | 보험업법 | 69.02 (98.11합병) | 신원, 이행, 납세, 인허가, 리스, 할부판매, 사채, 어음, 소액대출, 신용보험 등 |
| 은행 | 은행법 | 97.02외 | 지급보증, 사채 |
| 증권회사 | 증권거래법 | 53.09외 | 사채 |
| 종합금융회사 |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 76.04외 | 사채, 리스 |

자료 : 김필준, “우리나라 청구보증제도의 활용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2) 보증기금 총당

원산지증명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기금은 FTA를 활용하여 수출하는 기업이 증대되고 있고, 교역량 또한 급증하여 상당한 규모의 배상금액을 총당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최초 보증기금을 총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 : 보증제도 운영을 위한 재원조성⁶⁴⁾

모든 보증제도의 운영에는 지속적인 보증기관 존립을 위해 재원의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재원 조성의 형태로는 ①정부, 금융기관 및 기업의 출자나 출연, ②연화 차권(soft loan)을 통한 보조금 지원, 출자 또는 정부의 저리자금 대출 등 간접적인 지원, ③정부의 예산배정을 통한 보증제도 재원의 마련, ④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재보증이나 재보험 등에 의한 손실보전 등이 있다.

이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형태의 재원조성방식은 보증제도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정부, 금융기관, 기업 및 기업단체의 출연이나 출자를 받는 것이다. 보증제도의 이해당사자 간의 재원 배분 문제는 각 나라마다 처한 금융환경이나 정부의 보증제도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 기업들의 보증제도에 대한 신뢰 수준 등에 따라 결정된다. 공공보증제도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정부 또는 금융기관의 출연이나 출자를 받아 재원을 조성하고 있다. 보증재원 조성의 전부를 정부의 출연이나 출자에 의존하는 경우에는 보증재원 조성의 원천이 다양하지 않아 정부의 부담이 가중되어 결국에는 보증제도의 존속 가능성을 위협받게 될 수 있다. 게다가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의 정부의존도가 지나쳐 자칫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도 있다. 이러한 국가들로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등의 유럽 국가들과 중남미 국가들이 있다.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은 정부(또는 지방정부)와 금융기관이 보증재원 조성을 분담하고 있다. 정부 출연을 받으면서 법률상으로 금융기관의 정기적인 출연을 명시한 한국의 보증제도는 모범적인 사례로 널리 알려져 있다. 특정 범주의 대출 잔액에 대해 매년 일정비율을 보증기관에 출연하는 사례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며 권장할 만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보증제도의 이해당사자의 출연이나 출자 외에도 정부의 저리 또는 무이자 정책자금을 대출받아 보증재원을 조성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일본 전역에 산재해 있는 52개 지역별보증협회는 정부에서 설치한 중소기업금융공고로부

64) 황윤섭·곽성철, “글로벌 관점에서 본 신용보증제도의 국제 비교”, 국제지역연구 제10권 제2호, 2006년 6월, pp.159~161.

터 재보증(신용보험) 지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은행대출에 대한 시중금리의 50%밖에 되지 않는 저리의 정책자금을 지원받는다. 독일의 보증은행제도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유럽부흥은행에서 저리의 대출을 제공받고 있다. 이러한 저리대출은 투자수익을 위한 기초적 재산이자 대위변제자금 부족시 긴급한 운영자금으로도 이용되는 등 그 활용가치가 높다.

보증재원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또는 정부기관 등의 재보증 또는 재보험을 통해 보증손실의 일부를 보전 받는 간접적인 지원형태로도 조성된다. 이러한 재보증 또는 재보험제도는 일본, 독일, 이태리, 스위스, 헝가리 등에서 이용되고 있다. 일본정부의 100% 출자 금융기관인 중소기업금융공고는 지방보증협회의 보증손실의 70~80%를 보상하며 독일에서는 보증은행의 손실에 대한 연방정부가 30%, 주정부가 26%의 손실을 보전하고 있다.

미국이나 영국에서와 같이 정부의 예산 배정만으로 운영되는 보증제도는 선진 공업국에서 이용할 수 있는 보증제도이다. 만일 개발도상국의 경우 이 방식이 도입된다면 금융기관들이 대위변제 지급여력에 회의를 가질 수 있다. 경제난을 겪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정부정책의 우선순위가 신용보증에서 다른 정책으로 전환됨에 따라 보증제도에 배정될 예산도 다른 부문으로 배정될 수도 있다.⁶⁵⁾

대부분의 신용보증제도는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기금을 조성하며 기금의 설립을 위해 일시적으로 대규모 출연을 받는다. 또한 신용보증의 특성상 높은 위험을 수반하므로 신용보증료 수입만으로는 신용보증제도의 관리업무비와 대위변제비용을 모두 충당하기 어렵다. 출연금은 신용보증제도의 붕괴를 피할 수 있는 대위변제 준비자금이자 투자수익의 원천이 되므로 매우 중요한 보증재원이 될 수 있다. 보증료 수입으로 보증제도의 운영비용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기금의 투자수익은 대위변제비용의 충족에 이용될 수 있는 수익기반이 된다.

보증재원의 전부를 금융기관의 출연이나 출자에 의해 조성되는 사례들도 적지 않다. 이러한 국가들로는 프랑스, 루마니아, 말레이시아 등이 있다.

<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자원조성 유형 >

| 자원조성유형 | 보 증 제 도 |
|--------|--------------------------|
| 출연/출자 | 한국, 일본, 독일, 대만, 스위스, 벨기에 |
| 재보증 | 독일, 이탈리아, 헝가리 |
| 재정용자 | 미국, 캐나다, 영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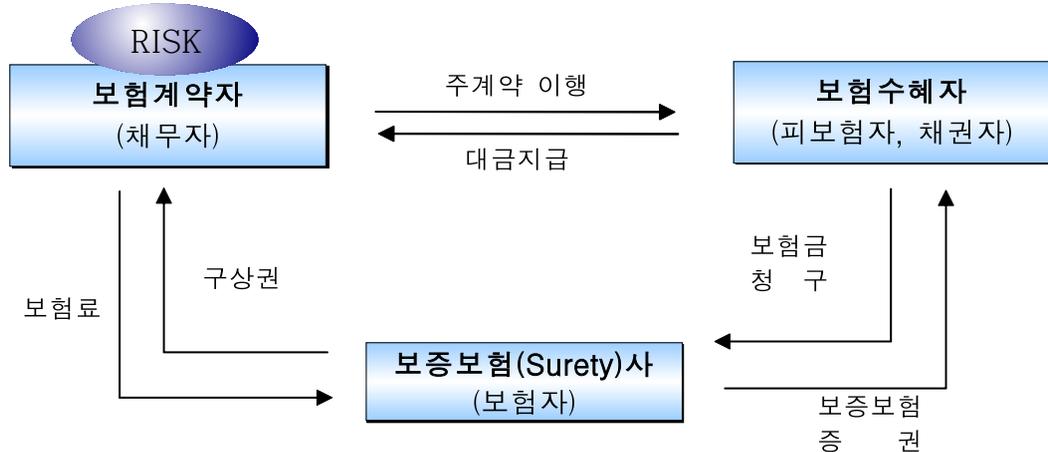
65) Marulanda De Garica, B., "National Guarantee Fund of Colombia", The Financier-Analysis of Capital and Money Market Transactions, Vol.4, No.1&2, February/May, 1997, pp.44~56.

3) 보증제도 운영

일반적으로 보증보험은 크게 신용보증보험, Surety,⁶⁶⁾ 신용보험 등으로 구분되는데, C/O에 대한 보증보험을 도입할 경우 Surety형태의 보증보험이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신용보험은 물품 매매 거래시 물품을 구입한 고객(Buyer)의 채무불이행에 대해 공급자(Supplier)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채권자(Supplier)가 채무자(Buyer)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스스로 가입하는 형태로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수혜자)가 동일인이 되는 자기를 위한 보험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반면, Surety는 계약상 채무자(보험계약자)가 해당 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자(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와 보험수혜자가 다른 구조를 가지는데, C/O보증보험 또한 수출자가 제공한 원산지증명서 오류로 인한 손해 발생시 수입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갖도록 해야 하므로 Surety형태의 보험이 도입되어야 하는 것이다.

< Surety의 기본구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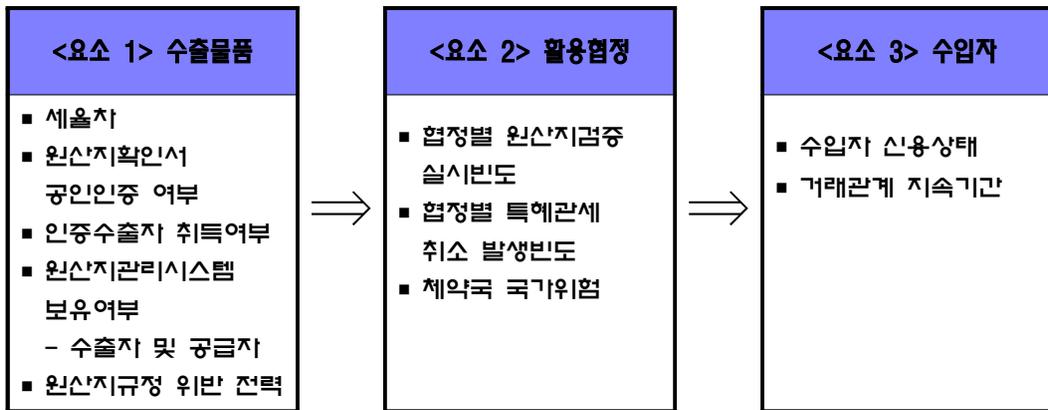
보증서의 취득은 기본적으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

66) Surety는 주로 건축물, 물품 또는 용역의 발주자가 낙찰자(또는 수주자)의 이행능력을 보장받기 위한 필요에서 유럽으로부터 시작된 보증보험제도이다. Surety는 기본적으로 보증보험사가 별도의 담보를 징구하지 않고 신용도를 심사하여 위험을 인수하는 형태로 운영되는데, Surety와 일반적인 신용보험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신용보험이 공급자(Supplier, 채권자)가 구매자(Buyer,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위한 보험, 즉 자기를 위한 보험의 형태를 지니고 있는데 반해 Surety는 타인을 위한 보험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여 FTA체약국으로 수출하는 수출자가 보증보험⁶⁷⁾을 가입하도록 하되, 개별 건당 활용하는 FTA 및 수출물품의 종류에 따라 보증금액을 달리 정하여⁶⁸⁾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운영되어야 하는 이유는 수출물품의 세율차에 따라 위험발생 시 보상금액에 차이가 있고, 이용하는 협정에 따라 체약국별 국가위험도에도 차이가 있으며 수입자의 신용위험 등 다방면에 걸쳐 손실의 발생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보증금 산정시 고려요소>



3. 유사 보증상품 검토

현재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 중인 보험상품 중 제3자에게 인증 받은 객체에 대해 보험을 담보하고 있는 상품은 ‘부품·소재 신뢰성보험’⁶⁹⁾이 유일한데, 공인인증 받은 원산지확인서를 기초로 작성된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보험을 개발할 경우도 신뢰성보험의 운영형태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아래에서는 부품·소재 신뢰성보험의 운영형태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1) 신뢰성보험의 기대효과

67) 보증보험계약은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채권자인 피보험자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 보험자가 그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정하고 채무자 그 밖의 의무자로부터 보수를 받는 계약’을 말한다. 정찬형, “보증보험의 보험성과 보증성에 관한 연구”, 금융법연구 제4권 제1호, 한국금융법학회, 2007년, p.57.
 68) 보증금액의 산정기준은 수출하는 물품의 세율차(MFN-특혜세율)에 따라 보상금액이 결정되므로 보증보험 가입금액 또한 이것을 기준으로 차등 적용하여야 함.
 69) 국산 부품·소재를 사용하는 수요기업에게 제품의 신뢰성을 보장하여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를 담보하는 손해보험

| 구 분 | 기 대 효 과 |
|----------|---|
| 수요 기업 | .국산제품 사용에 따른 위험을 제거함으로써 국산 부품.소재의 신뢰도 확보 .저렴한 국산 부품.소재의 구매에 따른 비용절감효과 .사고에 대해 신뢰성평가기관의 원인분석을 통해 동일사고 발생예방 |
| 생산 기업 | .생산제품의 배상책임에 따른 재정적 손실을 예방함으로써 경영안정성 제고 .보험가입 사실만으로도 제품의 안전성을 인정받는 등 대고객 이미지 제고 .제조물 책임에 대한 부담 감소로 기술개발 등 핵심업무에 대한 집중력 증가 .제조물책임 방어대책(PLD)을 보험사에 Outsourcing효과에 따라 PLD에 따 른 비용 절감 |

2) 신뢰성보험의 주요내용

(1) 담보위험

부품.소재업체가 제조물을 수요기업에 제조.판매함에 따라 안게 되는 위험에는 부품.소재의 결함 등으로 인한 ①보증책임, ②회수비용, ③배상책임(PL) 및 ④기업휴지위험 등이 있으며, 신뢰성보험은 부품.소재업체의 관련위험을 종합 담보

(2) 담보위험별 주요내용

| 담보위험 | 주 요 내 용 |
|-------------|---|
| 제조물 보증책임 | .부품.소재업체가 제조. 판매한 제조물이 양도된 후, 부품.소재의 결함으로 법률상 배상해야 할 손해중 수리비용 또는 대체가격 |
| 제조물 회수비용 | .부품.소재업체가 제조.판매한 부품이 회수가 불가피하게 된 경우 회수에 따른 제반비용 보상 |
| 제조물 배상책임 | .부품업체가 제조.판매한 부품이 양도된 후 그 제조물로 생긴 제3자 의 신체상해 또는 재물손해로 부품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손 해배상금액 |
| 기업휴지위험 | .부품업체가 제조.판매한 부품이 제 3자 양도된 후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제3자에 기업휴지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상실이익 |

※ 담보위험별 비교

| 위험종류 \ 담보위험 | 생산물 자체의 수리, 교환비용 | 생산물의 회수비용 | 제3자의 신체상해/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사용손실 |
|-------------|------------------|-----------|-------------------------|------|
| 생산물보증책임 | ○ | × | × | × |
| 생산물회수비용 | △ (회수에 한정) | ○ | × | × |
| 생산물배상책임 | × | × | ○ | ○ |

* 기업휴지위험은 약정복구기간(30일) 동안의 기업휴지 손해액 담보

(3) 가입대상 및 담보지역

신뢰성보험의 가입대상은 신뢰성평가 또는 인증을 받은 부품·소재 생산기업이며, 담보지역은 국내 및 해외거래 모두를 담보

(4) 보험가입방법

신뢰성보험의 가입방법은 ①가입대상품목의 연간 매출액 기준, ②가입대상품목의 연간 매출액 기준, ③가입대상품목의 특정 공급계약(또는 특정 거래처별) 기준, ④해외수출거래 기준 등의 네 가지로 구분

(5) 보험가입 주요조건

□ 담보부분의 선택

○ 기본담보중 하나 또는 둘을 담보하는 경우에만 선택담보 가능

| 구 분 | | 담 보 위 험 |
|-----|------|--------------------|
| 패키지 | 기본담보 | 제조물 보증책임, 제조물 회수비용 |
| 증권 | 선택담보 | 제조물 배상책임, 기업휴지위험 |

□ 보상한도액(Limit of Liability)

○ 보상한도액은 보험자가 보상하는 최대금액으로, 사고발생시 배상책임의 정도를 고려하여 설정하며, 발생가능한 최대의 손해배상액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각 담보부분별로 설정)

※ 보상한도와 1청구당 보상한도

- 보상한도(In the aggregate) : 보험기간 동안에 제기된 모든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보험자의 보상하는 보험금의 총액
- 1청구당 보상한도(Anyone claim) : 피해자가 제기하는 1회의 배상청구당 보험자의 보상한도액

* **1회의 배상청구** :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수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또는 사실상 같은 종류의 사고에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를 의미

□ 자기부담금(Deductible)

○ 보험금 지급시 보험자가 보상해야 할 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액수이므로 보험료 할인효과 발생

※ 1청구당 보상한도 대비 자기부담금비율에 따라 최고 25%까지 할인

□ 담보지역(Coverage Territory)

○ 사고발생시 보험으로 담보되는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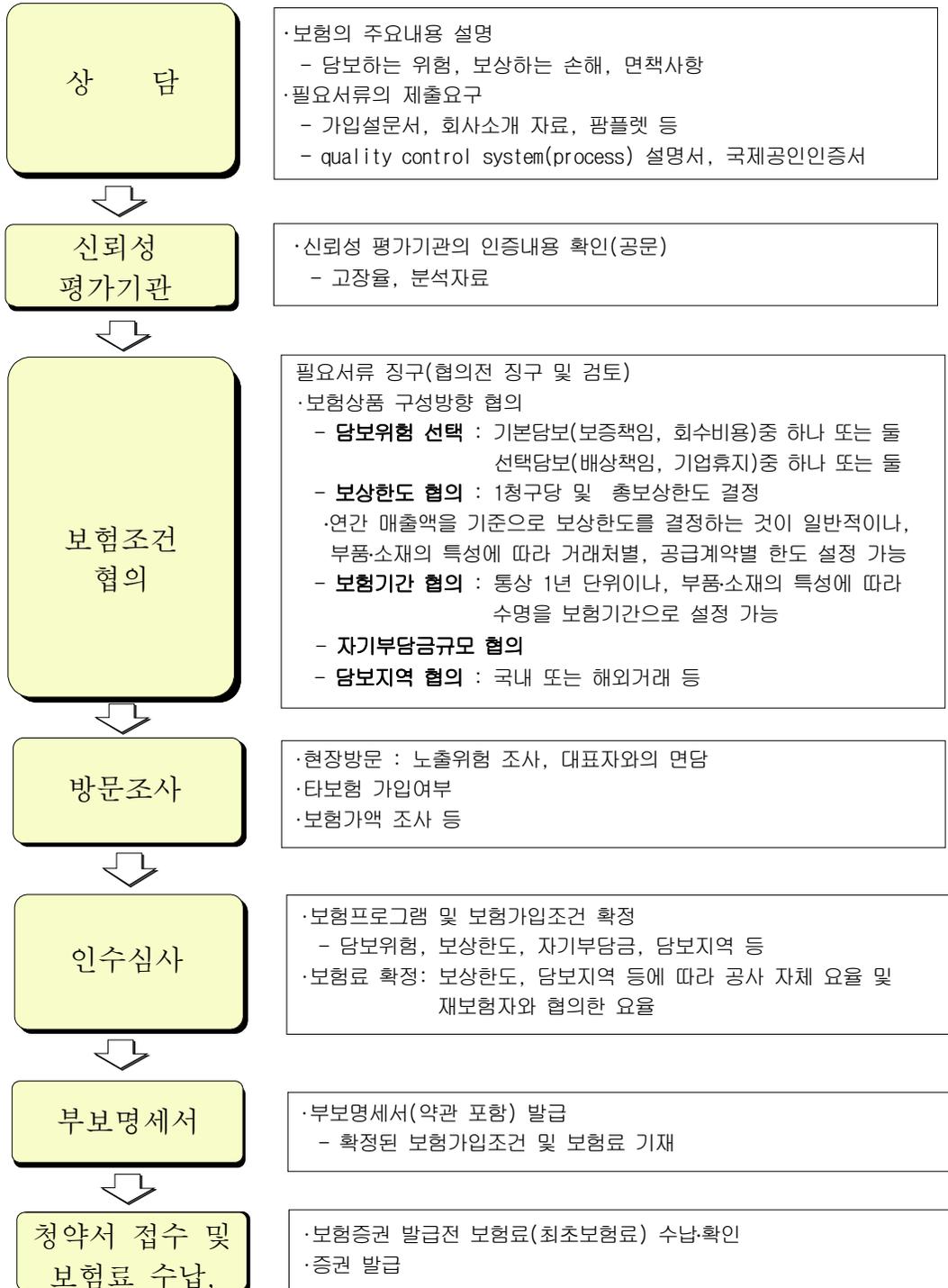
□ 소급담보적용일(Retroactive Date)

○ 보험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사고로서 보험기간중에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것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사고를 보험개시일 이전으로 소급적용하는 것

3) 민간 손보사 PL보험과의 비교

| 구 분 | 신뢰정보험 | 민간손보사 PL보험 |
|--------|--|--|
| 담보위험 | - 제조물 보증책임, 회수비용, 배상책임, 기업 후지 등 관련위험을 종합담보 - 맞춤형 담보 | - 제조물 배상책임만 담보 |
| 담보대상 | - 부품.소재의 결함 등으로 인한 피보험자의 직접손해 및 확장손해 보상 - 통상적인 결함외에 하자까지 보상 * 직접손해 : 부품.소재업체의 제조물 자체 손해 * 확장손해 : 제3자의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 등 | -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확장손해 * 결함 : 제품의 설계, 제조, 표시상 결함 및 기타 통상적으로 안전성의 결여 |
| 가입대상 | - 신뢰성인증 획득한 부품.소재기업 | - 제조업자 |
| 보험료 수준 | - 공익성을 감안, 저렴한 수준 책정 | - 안전을 및 사업이윤을 반영 |
| 담보기간 | - 1년(매년 갱신 가능) | - 좌 동 |
| 담보지역 | - 국내 및 해외 | - 좌 동 |

4) 이용방법 및 절차



4. 원산지증명서 위험에 대한 제3자 보증제도의 WTO협정상 보조금 규정 위반여부 검토

원산지증명서 위험에 대한 제3자 보증제도는 현재 WTO회원국 어디에서도 운영되고 있지 않아, 타국의 입장에서는 WTO협정상 금지하고 있는 보조금으로 인식할 여지도 있으나 원산지증명서 위험 제3자 보증의 경우 WTO협정의 보조금 요건⁷⁰⁾에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을 위배할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 ① **(정부로부터의 재정적 기여)** 최초 보증기금이 정부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하므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재정적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나, 보증(guarantee)을 희망하는 기업이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일정액의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동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기업에 대한 무상의 재정적 지원이 아닌 보험(insurance)의 성격으로 보아야 할 것임
- ② **(경제적 혜택)**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의 이동 결과 민간기업에 혜택(benefit)이 부여되는 것은 사실이나 실질적인 수혜자는 국내 수출자가 아닌 계약상대국 수입자이므로 자국내 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상 보조금으로 볼 수 없을 것임
- ③ **(특정성)** C/O 제3자 보증제도의 경우 특정산업 또는 특정기업을 국한하여 지원하려는 것이 아니라, 보증을 희망하는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제도가 운영되게 됨으로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성에 해당되지 않을 것임

70)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상 보조금으로 규정되기 위해서는 ①정부로부터의 재정적 기여(financial contribution by a government), ②경제적 혜택(benefit), ③특정성(specificity)의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 **(정부로부터의 재정적 기여)** 보조금 협정 제1조 제1항은 ①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재정적 기여를 하거나, ②1994년도 GATT 제16조가 규정하는 소득 또는 가격지지가 존재하고 이로 인해 혜택이 부여되는 경우 보조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
- **(경제적 혜택)**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의 이동 결과 민간기업에 "혜택(benefit)" 이 발생하여야만 보조금으로 간주
- **(특정성)** 정부로부터의 재정적 지원이 특정산업 또는 특정기업에게 국한된 경우 보조금으로 간주

5. 보증보험 운영상의 문제 검토⁷¹⁾

1) 보증의뢰인의 입장

보증의뢰인으로서 운영상 직면할 수 있는 주요 문제점으로는 수익자의 부당한 지급청구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 보증의뢰인이 수출중소기업인 경우 보증서를 발급받기가 어렵고 발급받는다 하더라도 발급수수료가 대기업에 비해 엄청나게 비싸다는 것, 채권자에게 여신을 제공한 은행이 보증서상 수익자가 될 때이다.

첫째, 수익자의 부당한 지급청구위험이다. 보증의뢰인은 소위 ‘先拂後爭(pay first, argue later)’⁷²⁾의 원칙에 의해 수익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⁷³⁾ 즉, 통상의 보증서는 수익자의 단순청구(simple demand)⁷⁴⁾만으로 보증은행은 보증의무를 행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수익자가 상기 원칙을 악용할 경우 보증의뢰인은 수익자의 모럴헤저드에 직면할 수 있다. 즉, 보증의뢰인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부당한 지급청구를 할 위험이 있다. 보증서 용도자체가 통상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발급되었고, 실무에서 보증의뢰인은 보증서 발급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바 일견 보증의뢰인에게 불리하게 보이는 보증서를 발급해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둘째, 우리나라에서 담보력이 취약한 수출중소기업의 보증을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이행성보증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의 경우 고객의 대부분이 대기업이고 수출중소기업에 대해서 수출보증보험을 제공하고 있는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도 수출입상의 신용도, 사업성 검토보고서 등 까다로운 보증조건을 요구⁷⁵⁾하고 있으므로 수출중소기업은 실제 원하는 만큼의

71) 김필준, “우리나라 청구보증제도의 활용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년 10월, pp.119~122.

72) Chung-Hsin Hus, “The Independence of Demand Guarantees, Performance Bonds and Standby Letters of Credit”, National Taiwan University Law Review, Vol.1 Issue 2, 2006, p.17.

73) 김상만, “국제거래에서 독립적 은행보증성에 대한 담보장치로서의 수출보증보험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39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8년, p.60.

74) 경우에 따라서는 채무불이행진술서를 제출해야하는 경우도 있다. 채무불이행진술서의 예로서는 낙찰자가 계약체결에 서명을 하지 않거나 입찰보증을 제출하지 못했다는 진술서 등이다. 채무불이행진술서는 수익자로부터의 공식적이고 일방적인 선언이며 추가입증을 요구하지 않는다.

75) 우리나라에서 보증발급을 받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수출중소기업에 있어서는 많은 제약이 있다. 수출입은행, 국내 시중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모두 보증 또는 보증보험을 제공한다. 심사기준이 까다로워 우량 수출중소기업을 제외하고는 발급을 받는 것이 쉽지 않다. 더욱이 최근에 건설공제조합과 외환은행이 업무협약을 통해 보증발급을 받을 수 있

한도를 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받는다고 하더라도 보증 수수료가 대기업에 비해 훨씬 비싼 편이다.⁷⁶⁾

예컨대, 선박인도경험이 없는 중소조선사가 신규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여 R/G를 받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일단 선박의 경우 약 80%가 선수금인 관계로 금액 자체가 거액이고, 통상 보증기관은 경험이 없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보증금 발급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채권자에게 여신을 제공한 은행이 보증서상 수익자가 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초관계의 원채권자가 보증서상 수익자로 지정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자에게 여신을 제공한 은행이 보증서에 단독 수익자 또는 원채권자에 추가하여 수익자의 지위를 취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보증은 보증의뢰인의 적절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원채권자에 대한 여신제공은행의 여신상환용담보로 그 성격이 바뀌어 질 수 있는 바, 기초관계의 원채무자인 보증의뢰인에게 있어 극히 위험하다. 이 경우 또한 보증인의 역할이 보증의뢰인의 이행위험의 담보와 거래를 위한 것에서 실제로는 수익자로서의 여신제공은행의 상환보증으로 그 역할이 변질되어질 수 있으며 가능성은 비록 높지 않으나 심지어 보증의뢰인의 적절한 이행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자의 지위에 있는 여신제공은행의 지급청구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⁷⁷⁾

보증의뢰인이 수출중소기업일 경우 상기와 같은 위험에 항상 노출될 수 있으며, 자칫 잘못하면 단 한건의 불리한 보증서 때문에 사업을 그만두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대기업은 기업내 법률팀을 별도로 두어 해당 계약서(기초계약서, 보증계약서 등)를 검토하여 그에 따른 위험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있으나, 수출중소기업은 그러한 법률적 조언을 구하기가 어려운 바, 항상 법률적 위험에 노출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는 길이 열려 대기업의 경우 최근 3년간 수출실적 등 보증발급을 위한 심의절차를 통과하는 것이 가능하나 수출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심의절차를 통과하는 것이 어려워 보증발급을 받기 힘들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76) 현재 해외건설공사의 보증을 취급하고 있는 기관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서울보증보험, 건설공제조합, 한국수출입은행 및 한국산업은행과 일반 시중은행이 있으며 외국계 은행이나 현지은행도 가능하다. 하지만 외국계 은행이나 현지은행은 거래실적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여신 취급이 거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국내은행의 경우에도 수출중소기업은 통상 재무상태와 거래실적이 양호하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보증발급에 어려움을 가진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수출중소기업은 수수료가 비싼 서울보증보험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는 수출중소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77) 오원석·송정남·윤영미, “국제무역거래에서 사용되는 독립보증계약 체결시 당사자의 유의사항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25권 제4호, 국제상학회, 2010년 12월, p.76.

2) 보증기관의 입장

보증기관이 은행일 경우 은행은 보증서 발급금액에 대해 위험가중치로 계상하여야 하고, 상환의 확실성을 전제로 대출 또는 보증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신용도가 양호한 기업에 한하여 이행성보증을 발급하는 경향이 있다. 하물며 우리나라의 공적 수출신용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우도 그런데 시중은행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은행이 보증서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보증기관, 예를 들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경우 수출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나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높은 사고율을 감안할 경우 지원상 한계가 있어 보인다. 그동안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운영경험을 볼 때, 수출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사고율이 월등히 높았다.⁷⁸⁾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원이 무역보험기금인데 동 기금의 대부분을 정부로부터 받고 있으나, 수출보조금, 정부 재원부족 문제 등으로 인해 기금확충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은행을 포함한 보증당사자의 경우 신용장은 자주 접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식은 갖고 있으나, 청구보증에 대한 전반적 지식 및 해당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리스크를 정확히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3) 수익자의 입장

보증서가 수입자를 수익자로 하여 발급하는바 수입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채무불이행 또는 자신의 손실액에 대해 입증할 필요 없이 즉시 보증서상의 최대 금액까지 손실에 대한 클레임을 제기할 권리를 가지게 되므로 오히려 보증서 발급으로 리스크를 전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리스크 측면에서 수입자로서는 보증서 발급으로 인한 문제점은 크게 없다고 할 수 있으나, 프로젝트가 진행되다가 중단될 경우 이를 맡아 추진할 시공사를 찾기 어려울 수 있으며, 설사 찾았다 하더라도 시의성이 있는 프로젝트의 경우 수익성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제3절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78) 최근 10년간(2001년~2010년) 기업규모별 평균사고율을 보면 중소기업이 0.709%로 대기업의 0.114%에 비해 6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확인서 발급기업(협력업체) 대부분은 원산지확인서 발급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FTA활용 혜택이 수출자에게만 귀착되는데 반해 FTA활용에 따른 서류 제출이나 보관 등과 같은 책임은 함께 부담하여야 된다는 사실로 인해 원산지확인서의 발급 자체를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원산지확인서가 원활히 유통되도록 하는 지원체제의 마련이 필요하다.

1. 원산지확인서 발급건수와 연계한 인센티브 제공

1) AEO 등 세관법규준수도 가점 부여

세관별 별도 관리를 통해 원산지확인서 우수 발급기업을 선정하고, 이들이 관세법 제255조의2⁷⁹⁾ 및 동법 시행령 제259조의2⁸⁰⁾ 및 제259조의3⁸¹⁾에 따라 운영하고 있

79) 관세법 제255조의2(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물품의 제조·운송·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가 시설, 서류 관리, 직원 교육 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받으려고 심사를 요청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안전관리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이하 이 조에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라 한다)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다른 국가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 대하여 상호 조건에 따라 제3항에 따른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⑤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2. 제2항에 따른 공인 심사요청을 거짓으로 한 경우

⑥ 관세청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수출입물품의 제조·운송·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받는 데에 필요한 상담·교육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80) 관세법시행령 제259조의2(수출입 안전관리 기준 등) ① 법 제255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 등 수출입에 관련된 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였을 것

2. 관세 등 영업활동과 관련한 세금을 체납하지 않는 등 재무 건전성을 갖춘 것

3. 수출입물품의 안전한 관리를 확보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 거래업체, 운송수단 및 직원교육체계 등을 갖춘 것

4. 그 밖에 세계관세기구에서 정한 수출입 안전관리에 관한 표준 등을 반영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것

는 수출입안전관리공인우수업체(AEO) 등 세관이 별도로 운영하고 기업인증 및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운영함으로써 기업의 원산지확인서 발급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2) 중소기업 지원자금 신청시 인센티브 부여

세관이 관리하는 별도 인증 등에 대한 가점부여와 아울러 세관별 별도 관리를 통해 선정된 원산지확인서 우수 발급기업의 경우 관련 부처⁸²⁾와의 협의를 거쳐 정책 지원자금 배정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원산지확인서 발급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일 것으로 판단된다.

3) 관세조사 완화

‘원산지확인서 발급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수입품 등에 대한 관세조사시 조사대상

-
- ② 관세청장은 법 제255조의2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할 때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를 교부받은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또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 교부받은 항만시설소유자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의 안전관리 기준 중 일부에 대하여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법 제255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관세청장이 안전관리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이나 단체 중에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0.3.26>
 -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 2. 안전관리 기준의 심사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전산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 ④ 제3항에 따른 심사업무의 위탁절차 및 위탁받은 기관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0.3.26>
 - ⑤ 법 제255조의2제3항에서 "통관절차상의 혜택"이란 수출입 물품에 대한 검사의 완화 또는 수출입 신고 및 납부 절차의 간소화를 말하며 그 세부내용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3.26>
- 81) 제259조의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절차 등) ① 법 제255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자체 안전관리 평가서
 - 2. 안전관리 현황 설명서
 - 3. 그 밖에 업체의 안전관리 현황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
-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25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이를 충족하는 업체에 대해 공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③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공인의 등급, 안전관리 공인심사에 관한 세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다만,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등 안전관리에 관한 다른 법령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82)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등 기술개발자금 및 시장개척자금 등 기업지원자금을 운영 중인 정부기관.

선정비율 축소, 실지심사(현지조사) 대신 서면심사로 대체, 조사과정에서의 제출서류 간소화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4) 기업지원제도 우선 활용혜택 부여

각급 정부기관이 시행하고 있는 수출마케팅 지원, 컨설팅 제공, 정부 R&D 등에 대해 '원산지확인서 발급 우수기업'이 우선 활용 가능하도록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청의 경우 수출역량강화사업 참여기업 중 성과평가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차기 사업 참여시 우선 선정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원산지확인서 발급 우수기업'에 대해서도 성과평가 우수기업⁸³⁾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기관별 컨설팅 사업 현황 >

| 구 분 | 관세청 | 중기청 | FTA닥터 | FTA활용센터 |
|---------------------|--------------------|---------------------|--------------------|-----------------------|
| 지원대상 | 수출중소기업 | 수출 500만불 이하 중소기업 | FTA원산지 애로 중소기업 | 지역센터 소재 수출중소기업 |
| 2011년 예산 (2012년) | 750백만원 (750백만원) | 12백만원 (400백만원) | 846백만원 (960백만원) | 900백만원 (1,260백만원) |
| 예산구성 | 관세청 | 중기청 | 기재부 | 기재부, 지자체, 상의, 무협 등 |
| 지원금액 | 3백만원이내 | 3백만원이내 | 1.6백만원이내 | 2백만원이내 |
| 기업부담금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 지원업체 | 734개사 | 10개사 | 820개사 | 984개사 |

자료 : 기획재정부

2. 원산지확인서 발급 우수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제공

1) 현행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 강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⁸⁴⁾과 동법 시행령 제106조의 12⁸⁵⁾에 따르면 원산

83) 내수기업이 첫 수출에 성공하거나 수출기업이 수출증가율 30% 이상을 달성할 경우 성과평가 우수기업으로 선정

84) 제106조의8(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하는 재화(이하 이 항에서 "수출재화"라 한

지확인서 발급기업에 대해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수출재화에 대한 원산지확인서 발급기업에 대해서는 연간 30만원의 범위 내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해 주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동 금액이 기업의 원산지확인서 발급을 유도하기에는 미미함으로 최소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제도에⁸⁶⁾ 준하는 정도로 인센티브 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원산지확인서의 발급과 유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2) 원산지확인서 발급 물품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

- 다)를 공급하고, 그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같은 법 제3조에 따른 과세기간을 말한다)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에 따른 원산지확인서를 그 수출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2013년 12월 31일까지 발급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확인서 발급 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액공제 대상 원산지확인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른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수출재화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 한정한다.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며, 공제세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이 법, 「부가가치세법」 및 「국세기본법」에 따라 빼거나 더할 세액(「부가가치세법」 제22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빼거나 더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그 계산한 세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산지확인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85) 제106조의12(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① 법 제106조의8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만원을 말하고, 같은 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 ② 법 제106조의8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간 30만원을 말한다.
- 86) 제32조의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법인은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을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7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빼거나 더할 세액(제22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빼거나 더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그 계산한 세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그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2012년 12월 31일까지는 1천분의 13)에 해당하는 금액
 2.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2(2012년 12월 31일까지는 1천분의 26)에 해당하는 금액

원산지확인서 유통 활성화를 위한 세제상의 또 다른 혜택으로는 원산지확인서 발급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동 방안은 대외무역법 제18조87)에 및 동 법 시행령 제31조88)의 규정에 따라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에 대해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을 경우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규정을 벤치마킹하여 도입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원산지확인서 발급물품의 경우 기본적으로 수출에 공하여 질 물품이며, 대외무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매확인서 발급 물품의 경우에도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그 기본성격 상 동일하다고 판단되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원산지확인서 발급물품이 수출에 공하여지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수출에 사용되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 징수 등의 절차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관련규정>

- 87) 제18조(구매확인서의 발급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영(零)의 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확인을 신청하면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서류(이하 "구매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구매 여부를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구매확인서의 신청·발급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88) 제31조(구매확인서의 신청·발급 등)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구매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구매자·공급자에 관한 서류
2.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가격·수량 등에 관한 서류
3.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구매하려는 원료·기재가 제26조에 따른 외화획득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발급 여부를 결정한 후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구매확인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6조(구매확인서의 신청서류) ①영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서류는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가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외화획득용원료·기재 구매확인신청서(이하 "구매확인신청서"라 한다)를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전자무역문서로 작성하여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첨부한 것으로 본다.

②영 제31조제1항제3호에 규정한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 1.수출신용장
- 2.수출계약서(품목·수량·가격 등에 합의하여 서명한 수출계약 입증서류)
- 3.외화매입(예치)증명서(외화획득 이행 관련 대금임이 관계 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4.내국신용장
- 5.구매확인서
- 6.수출신고필증(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한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 7.영 제26조 각 호에 따른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하기 위한 경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37조(구매확인서의 발급신청 등) ① 영 제31조에 따라 국내에서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려는 자 또는 구매한 자는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구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구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구매확인신청서를「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전자무역문서로 작성하여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제출(구매한 자는 구매확인신청서에 세금계산서 번호, 작성일자, 공급가액 등을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9조의2에서 정한 기한 내에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으려고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하여야 하고, 제36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동법 제1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③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별지 제13-1호 서식에 의한 외화획득용원료·기재구매확인서를 전자무역문서로 발급하고 신청한 자에게 발급사실을 알릴 때 승인번호, 개설 및 통지일자, 발신기관 전자서명 등 최소한의 사항만 알릴 수 있다.

④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신청하여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2차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제조·가공·유통(완제품의 유통을 포함한다)과정이 여러 단계인 경우에는 각 단계별로 순차로 발급할 수 있다.

⑤구매확인서를 발급한 후 신청 첨부서류의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내용 변경 등으로 이미 발급받은 구매확인서와 내용이 상이하여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⑥ 영 제31조제2항에 규정한 "외화획득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이란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구매확인서 발급 신청인으로부터 제3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38조 (발급신청 대행)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가 전산설비를 갖추지 못하였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전자문서를 작성하지 못하는 때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39조(외화획득의 이행기간) ①외화획득 이행의무자는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신고수리일,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공급일, 수입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해당 원료로 제조된 물품등(이하 "원료등"이라 한다)의 구매일 또는 양수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한 날까지 외화획득의 이행을 하여야 한다.

1. 외화획득 행위의 경우에는 2년
2. 국내공급(양도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1년
3. 외화획득 물품의 선적기일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일까지의 기간
4. 수출이 완료된 기계류(HS 84류부터 90류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품목)의 하자 및 유지보수용 원료등인 경우에는 10년

②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외화획득의 이행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그 기간 종료일 전에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외화획득이행기간 연장신청서 3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제3항 각 호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유서 1부

③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외화획득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생산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2. 제품생산을 위탁한 경우 그 공장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제품 생산이 지연되는

경우

3. 외화획득 이행의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음에도 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이 취소된 경우
4. 외화획득이 완료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원료등으로서 장기간 보관이 불가피한 경우
5.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외화획득 이행기간 내에 외화획득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시·도지사가 외화획득 이행기간 연장을 승인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자와 영 제91조제7항에 따라 외화획득용 원료등에 대한 영 제28조에 따른 사후 관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기관·단체(이하 "외화획득용 원료등의 사후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같은 법에 따른 방산물자(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공급하는 시제품(試製品) 및 자원 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
2.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군인복지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골프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석유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3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4.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나.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라.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마.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 바. 산림의 보호와 개발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사.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같은 호 라목 및 마목에 따른 축산업용 기자재 및 사료(이하 이 항에서 "축산업용 기자재등"이라 한다)를 부정하게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공급받은 경우에는 그 축산업용 기자재등을 공급받은 자로부터 그 축산업용 기자재등의 공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과 그 세

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추징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호 및 제1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1.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할 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전기공급이 곤란한 도서(島嶼)로서 지식경제부장관(같은 법 제98조에 따라 위임을 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이 증명하는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2.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호에서 "사업장등"이라 한다)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거나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료로 한정한다). 이 경우 위탁급식 공급가액의 증명 등 위탁급식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4의2.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청소업자"라 한다)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 4의3. 관리주체, 경비업자 또는 청소업자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4의4.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이하 이 호에서 "노인복지주택"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자, 경비업자 및 청소업자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5. 삭제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이하 이 호에서 "철도시설"이라 한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는 방식으로 국가에 공급하는 철도시설

8.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추천이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건설한 학교시설(「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학교가 제공하는 시설관리운영권 및 그 추천을 받은 자가 그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버스로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

9의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기버스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버스

10. 「관세법」 제91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물품 중 희귀병치료등을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1.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 중 목재펠릿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1호 및 제14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제15호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며, 제9호 및 제12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

고, 제13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며, 제16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한다.

1. 무연탄
2. 삭제
3.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
4.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관세법」에 따른 보세건설물품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제105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농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기자재와 제105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0. 삭제 <2011.12.31>
11.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2012년에 개최되는 여수세계박람회 관련시설의 제작·건설 및 박람회 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12.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014년에 개최되는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제11회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의 경기시설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13.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015년에 개최되는 제28회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경기시설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14.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 제2조에 따라 2012년에 개최되는 세계자연보전총회 운영에 사용하거나 같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보전총회 관련 시설의 제작·건설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15.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에 따라 2013년에 개최되는 제10회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의 경기시설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16. 포물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포물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에 따라 개최되는 포물러인 국제자동차경주대회의 경기시설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 제작이 곤란한 것

- ③ 삭제
- ④ 삭제
- 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개인택시운송업, 용달 및 개별 화물자동차운송업, 그 밖의 도로화물운송업, 이용업, 미용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법 제10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골프연습장을 말한다.

② 법 제10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의수족
- 2. 휠체어
- 3. 보청기
- 4. 점자판과 점필
- 5.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 6.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터
- 7.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 8.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소프트웨어
- 9.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 10. 보조기(팔·다리·척추 및 골반보조기만 해당한다)
- 11.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 12.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 13.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 14. 목발
- 15. 성인용 보행기
- 16. 욕창예방물품(매트리스·쿠션 및 침대만 해당한다)
- 17. 인공후두
- 18. 장애인용 기저귀

19. 텔레비전 자막수신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전파법」 제6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만 해당한다)
20.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
21.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22. 시각장애인용 전자독서 확대기
23. 시각장애인 전용 음성독서기
24. 화면해설방송수신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시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만 해당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 삭제

②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사업장을 말한다.

③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이 공급하는 어업경영 및 어작업의 대행용역을 말한다.

④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⑤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용역"이란 「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리모델링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며, 당해 리모델링을 하기 전의 주택 규모가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리모델링후 당해 주택의 규모가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리

모델링하기 전의 주택규모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한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 당해 리모델링에 사용되는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⑥ 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관리주체 또는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이하 이 항에서 "노인복지주택"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자가 각각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일반관리용역을 말한다.

가.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같은 시행령 별표 5 제1호에 따른 일반관리비(그 관리비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나.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및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가목에 따른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

2. 경비업자가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 또는 노인복지주택의 관리·운영자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3. 청소업자가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 또는 노인복지주택의 관리·운영자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용역

⑦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2. 「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체신창구업무를 위탁받은자
3. 삭제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어촌계
7.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중앙회
8. 삭제
9. 「인삼산업법」에 의한 백삼 및 태극삼의 지정검사기관
10.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11.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1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
13. 삭제
14. 「한국조폐공사법」에 의한 한국조폐공사
15.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중앙회 및 산림계
16. 삭제
17. 삭제
18. 삭제
19. 삭제
20.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
21.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
22.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23.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4. 「한국해운조합법」에 의한 한국해운조합
25. 삭제
26. 삭제
27. 「전파법」 제66조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9. 삭제
30. 삭제
31. 삭제
32. 「집행관법」에 의하여 집행관의 업무를 수행하는자
33.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34. 삭제
35. 삭제
36.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

국원자력기술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

37.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38. 삭제
39. 「항만공사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항만공사
4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부문 중 도로의 건설이나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법인과 장기적 투자자금을 제공하는 재무적 투자자가 각각 100분의 40 이상을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된 동조제7호의 사업시행자
4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42. 삭제
43. 「국세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른 국세납부대행기관
44.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4조에 따른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45.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제3조에 따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46.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업자단체인 대한건설협회
47.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48. 「도로교통법」 제120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
49.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자
50.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 제4조에 따른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조직위원회

⑧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며, 제7호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적용한다.

1.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욕탕업 및 예식장업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규정된 사업
3. 부동산임대업

4. 골프장·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5. 수상오락서비스업

6. 유원지·테마파크운영업

7. 주차장운영업 및 자동차견인업

⑨ 삭제

⑩ 삭제

⑪ 삭제

⑫법 제10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및 법 제106조제1항제1호·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예정신고·확정신고 또는 영세율등조기환급신고를 하는 때에 당해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0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납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105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월별판매액합계표

3. 법 제106조제1항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면세공급증명서

4. 삭제

⑬법 제10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학교급식공급업자는 「소득세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현황신고(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학교급식공급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할 때에 위탁급식을 공급받는 학교의 장이 확인한 위탁급식공급가액증명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⑭법 제106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관세법」 제9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중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세레자임등 고서병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및 로렌조오일등 부신이영양증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2. 혈우병으로 인한 심신장애자가 사용할 열처리된 혈액응고인자농축제

3. 근육이양증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근육모세포

4. 율슨병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5. 후천성면역결핍증으로 인한 심신장애자가 사용할 치료제

6. 장애인의 음식물섭취에 사용할 삼킴장애제거제

7. 장기이식 후 면역억제제의 합병증으로 생긴 림파구증식증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8. 니티시논 등 타이로신혈증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9. 뮤코다당증 II형(헌터증후군)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10.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및 백신(201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만 해당한다)
- ⑯법 제106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3조제3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농업용 기자재, 축산업용 기자재, 임업용 기자재 및 친환경농업용 기자재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민임을 확인받은 자가 수입하는 것과 동규정 제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용 기자재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민임을 확인받은 자가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 제48조(부가가치세의 면제등) ①영 제106조제8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 ② 삭제
 - ③ 삭제
 - ④영 제106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한 농민 또는 어민의 확인은 지역농업협동조합·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의 장이 발급하는 농·어민확인서에 의한다.

제4절 원산지확인서 발급절차 개선

1. 원산지확인서 발급 장려규정 신설

현행 법제에서는 최종수출자가 필요할 경우 원산지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발급거부 등에 대한 별칙조항이 없고 원산지확인서 발급 또한 강제성이 없어 원산지확인서가 발급되지 않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따라서 FTA관세특례법 등 현행 법령에 원산

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명문화하여 원산지확인서 발급대상 기업이 확인서 발급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⁸⁹⁾

2. 원산지확인서 전자적 유통망 구축 및 유통저해요소 차단방안 마련

원산지확인서의 전자문서 표준을 제정하여⁹⁰⁾ 개별 기업의 원산지관리시스템 간 전자적 방식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산지확인서 유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원산지확인서 발급자가 확인서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동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관세청 등 행정당국에 의한 계도가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확인서의 유통을 장려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원산지확인서 발급요청기업의 협력업체 원산지관리 지원체계 구축

원산지증명절차상 최종적인 수혜자는 계약상대 수입국의 수입자이나 원산지확인서를 공급받아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 수출하는 기업 또한 수입자가 연계 되는 FTA특혜관세가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작용을 하게 되어 수출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2차적인 수혜자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원산지확인서 발급기업의 경우 직간접적 혜택이 없는 상황에서 정확한 원산지확인서 작성·발급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전담자 채용 등을 위한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등의 사유로 원산지확인서의 발급을 꺼리는 것이 원산지확인서의 원활한 유통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2차적 FTA특혜관세 수혜자인 수출기업이 원산지확인서 발급기업에 대해 원산지관리 교육을 지원하거나 전산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등 발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 간의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89) 원산지확인서 발급을 강제화하기 위한 ‘법정의무화’ 또한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이 경우 협력업체의 부담만 가중시켜 다수의 범법기업만 양산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특히 한-미 FTA협정문 제6.15조 3항 단서규정에서 ‘어떠한 당사국도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서면 또는 전자증명을 다른 인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 발급의무를 법규로 강제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90) 원산지증명과 관련한 공공성을 고려하여 전자문서에 세관방식표준(WCO DM)을 적용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수출기업의 FTA활용을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이 필수적이나 중소기업들의 경우 원산지증명능력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FTA활용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원산지 확인과정에서 중소기업은 기업비밀을 이유로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에 소극적 태도를 고수하고, 대기업 역시 중소기업의 원산지증명 능력을 불신하는 등 원산지증명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지는데 다양한 장애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설문조사와 인터뷰 등을 통해 현행 원산지증명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해 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과 수출기업의 효과적 FTA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대.중소기업간 원산지증명 절차 및 증명내용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하였다.